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 :

## 청년 니트(NEET)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배상률 성재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9-01  
연구보고 18-R17

---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 (NEET)

---

**책임연구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 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8-59-01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 18-59-02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br>- 해외사례 조사 | 한국직업<br>능력개발원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br>연구<br>기관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김기현 선임연구위원<br>(총괄책임자)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                | 한국직업<br>능력개발원  | 채창균 선임연구위원            |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br>김민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br>송선희(한국외국어대학교) |
| 협력<br>연구<br>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성재민 연구위원              |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 핵심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OECD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청년 중 핵심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핵심정책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육도, 일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청년 니트(NEET)를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고졸 실업 상태의 니트가 대다수인 외국과는 달리 대졸 이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니트가 많으며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지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자발적 선택형, 구직 회피·휴식형 등 내부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무는 장기 니트(NEET)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19명의 청년 니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형별

욕구가 크게 다르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 접근, 유형별 맞춤형 접근, 증거 기반 접근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핵심 대상으로 청년 니트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해 청년 니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졸업 전에 취업과 학업, 훈련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미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과 내년부터 추진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니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개선해 유럽연합처럼 한국형 청년보장제로 실시하여 니트화를 방지하기 위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인 과제로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 청년 정책, 니트, 청년보장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한 후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이 연구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 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핵심정책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청년 니트(NEET)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서는 OECD에서 제시한 신규졸업자와 하향취업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음. 다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2차 연도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과 취업을 못했을 경우 청년 니트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규졸업자 대신 유사집단인 학교 졸업예정자로 핵심정책 대상을 변경하였음.

### 2. 연구추진체계

-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추진되었으며 협동연구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해외사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이 협동연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음. 성재민 박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9년간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해 청년 니트의 진입과 탈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음.

### 3.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핵심정책 대상별 청년 맞춤형 대책과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청년 니트에 대한 실태조사로 본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음. 이 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사용하였으며 청년 2,13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2차 자료 분석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 니트의 진입요인과 탈출요인을 패널분석방법론으로 분석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부처와 정책연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 이루어졌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전 청년분과)에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종 보고서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회의도 이루어졌음.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청년기본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년 니트들의 수요 파악과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심층 면접 대상은 청년 니트이며 내부 이질성을 고려해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등 4개의 유형별로 4~6명 씩 총 1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음.

## 4. 주요결과

### 1) 제1장 연구 배경

- 이 장에서는 청년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논의와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정책 대상인 청년에 대한 정의와 니트의 대상 범위에 관한 부분임.
- 먼저 청년의 연령 정의는 영국에서 10대 중심으로 대상을 정의해 정책이 이루어진데 반해 일본에서는 30대 초반을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EU나 OECD에서는 15세부터 29세를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음. 해외 사례나 선행연구들로부터 연령 정의는 각 국가별로 국내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 연령을 정의하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청년 연령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30대 니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음.
- 다음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범위 설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청년 니트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이 연구에서는 말 그대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공식교육이든 아니든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 니트를 정의하였음. 다만,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 중인 곳 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의 경우에만 니트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따르고자 함.

## 2) 제3장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실태와 특징

- 이 장에서는 청년 니트의 실태를 국제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청년 니트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에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청년 니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특징을 확인하였음.
- 이어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가 유형별로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청년 니트의 유형별 이질성은 취업 준비형 니트와 자발적 선택형 니트, 그리고 가사·돌봄·육아형 니트, 구직회피·휴식형 니트별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대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니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 유형별로 실태와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먼저 자발적 선택형은 니트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선택 이유는 꿈을 추구하는 경우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로 극명하게 갈렸음. 구직회피·휴식형은 회피와 휴식이 학생 때 이루어진 잘못된 진로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다닐 때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줌. 취업·진학준비형은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접근하되 지원은 공정하게 적용은 엄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돌봄·가사·육아형은 육아와 같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재취업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취업이 쉽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청년 니트에 대한 진입 및 탈출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대신 취업을 한 후 청년 니트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어서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의 경우 청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 중 니트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취업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비니트 비취업 유형)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성별로 볼 때 여성에 비해 남성 니트가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할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하였음.

### 3)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 실태와 문제점

- 이 장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의 청년 니트 정책들을 분석하였음. 먼저 청년 니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현행 법률에서 청년 니트를 명시적으로 다룬 법률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정의에서 확인하였음. 이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 2018 동법의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이 법률의 시행령에서 청년 니트라는 정책 대상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고용센터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청년 니트를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년 니트를 2년 이상 계속 니트 상태로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 대상자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넓게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중퇴한 경우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고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진로교육법의 경우 법률의 목적에서 학생에 한해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이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 중 청년 미래특별위에서 정당 간 합의로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청년 니트는 물론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동시에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 다른 영역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청년 니트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조정기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어서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한편, 다른 국가들은 청년 니트를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특징을 보여줌. 동시에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며 부처 간에 칸막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와 함께 외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청년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마지막으로 지자체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와는 달리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동시에 중앙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재정 투입과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만약 재정 투입이 시도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연계와 협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행안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정도가 유일한 상황임.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5. 정책제언

### 1) 청년 니트 정책 방향

- 이 절에서는 세 가지 청년 니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첫 번째로 정부나 중간조직(고용센터, 중소기업, 대학 등)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대상인 청년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 중심 접근은 정책대상의 욕구 파악에서 출발해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청년 니트는 하나의 정책 대상이지만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수요와 개인적 욕구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니트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니트,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원 등을 준비하는 공시생, 고시생들과 다른 취업 준비자들 간에 이질성도 큰 상황임. 이처럼 청년 니트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니트 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동시에 정책 대상을 포괄적인 청년 니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층으로 한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증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함. 대상 중심 정책 추진은 정책 대상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립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2)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

- 이 연구에서는 10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년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책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함께 청년 니트 비율을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전체 청년 니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임. 이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 조항이 없는 청년기본법안의 수정안도 제시하였음.
- 세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나 실업자로의 진입을 줄이기 위한 과제임. 이 과제(안)는 네 번째 과제(안)와 더불어 예방적인 접근을 다루는 과제로 볼 수 있음. 청년 니트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니트화를 예방하는 것임. 특히 학업 중단은 니트화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중등 교육 이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고등교육 단계에서 발생하는 학업 중단을 포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네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니트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이나 학업, 훈련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교육 훈련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섯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연계하고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는 부처 간에 연계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현재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중심의 연계 체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20대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섯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임.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하여 취업패 I 에서 니트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2년 이상 장기니트에서 단기니트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청년 니트는 찾아오는 서비스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 일곱 번째 정책 과제(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에서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것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청년구직수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청년 니트는 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덟 번째 정책과제(안)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임. 이것은 올해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해 추진하자는 것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청년보장제로 개편해 대상을 청년 니트 등으로 좁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홉 번째 정책과제(안)는 청년 취약계층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것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해외주요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으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청년센터 등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 과제는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중앙은 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정책 방향 설정과 평가, 피드백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맡고 지자체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연구보고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추진체계               | 5   |
| 3. 연구내용                 | 9   |
| 4. 연구방법                 | 12  |
| II. 연구 배경               | 17  |
|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 19  |
| 2. 청년 니트(NEET)에 대한 논의   | 24  |
| 3. 요약 및 시사점             | 30  |
| III.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실태와 특징 | 33  |
| 1. 청년 니트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 35  |
| 2. 청년 니트의 생활실태와 특징      | 51  |
| 3. 청년 니트 진입 및 탈출요인      | 104 |
| 4. 요약 및 시사점             | 129 |

|                                        |     |
|----------------------------------------|-----|
| <b>IV.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 실태와 문제점</b>       | 133 |
| 1.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135 |
| 2.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문제점              | 149 |
| 3. 지방자치단체 청년 니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66 |
| 4. 요약 및 시사점                            | 189 |
| <b>V. 정책제언</b>                         | 191 |
| 1. 청년 니트 정책 수립 절차                      | 193 |
| 2. 청년 니트 정책 방향                         | 200 |
| 3. 청년 니트 정책 과제                         | 202 |
| <b>참고문헌</b>                            | 221 |
| <b>부    록</b>                          | 231 |
|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br>중·고등학생용 | 233 |
|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 249 |
| 3.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질문지                | 275 |
| <b>ABSTRACT</b>                        | 277 |

## 표 목차

|            |                                                 |    |
|------------|-------------------------------------------------|----|
| 표 I - 1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 12 |
| 표 I - 2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14 |
| 표 I - 3    | 청년 니트 심층면접 결과                                   | 16 |
| 표 II - 1   | OECD 청년실천계획 주요 내용                               | 21 |
| 표 II - 2   | OECD의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                            | 22 |
| 표 II - 3   | 청년 니트 7개 유형별 분류                                 | 23 |
| 표 II - 4   | 해외 청년 니트 개념 비교                                  | 26 |
| 표 II - 5   | 이 연구와 다른 국내 청년 니트 개념 비교                         | 28 |
| 표 III - 1  | OECD 주요국 15-19세 청년 니트(NEET)<br>현황 비교(1997~2016) | 37 |
| 표 III - 2  | OECD 주요국 20-24세 청년 니트(NEET)<br>현황 비교(1997~2016) | 39 |
| 표 III - 3  |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br>현황 비교(1997~2016)   | 43 |
| 표 III - 4  | OECD 국가별 18-24세 청년들의 재학, 취업,<br>니트 상황(2016)     | 45 |
| 표 III - 5  | OECD 국가별 18-24세 청년들의 실업 및 비경활<br>니트 성별 비교(2016) | 46 |
| 표 III - 6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식별 및 유형 문항                 | 52 |
| 표 III - 7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기간 문항 수정(안)                | 54 |
| 표 III - 8  | 청년 니트 대상 신설문항(안)                                | 55 |
| 표 III - 9  |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신설문항(안)                      | 57 |
| 표 III - 10 | 청년 니트(15-29세)의 유형                               | 59 |
| 표 III - 11 | 청년 니트(15-29세)의 니트 상태 기간                         | 60 |
| 표 III - 12 | 15-29세 청년 니트의 유형에 따른 현재 미취업<br>이유 비교            | 62 |
| 표 III - 13 | 30대 니트의 유형에 따른 현재 미취업 이유 비교                     | 64 |

|          |                                                                    |     |
|----------|--------------------------------------------------------------------|-----|
| 표 III-14 | 15-29세 니트의 미취업 상태에서 고민거리 .....                                     | 66  |
| 표 III-15 | 청년(15-29세) 니트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 68  |
| 표 III-16 | 청년 니트의 채무여부 및 채무발생 이유 .....                                        | 69  |
| 표 III-17 | 청년 니트(15-29세) 고용정책 방향 및 청년수당<br>지급 찬반 의견 .....                     | 71  |
| 표 III-18 | 청년 니트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 79  |
| 표 III-19 | 교육수준별 청년 연령대별 니트 비중 .....                                          | 110 |
| 표 III-20 | 학력별 기간별 니트로의 진입 .....                                              | 111 |
| 표 III-21 | 학력별 기간별 니트로부터 탈출 .....                                             | 111 |
| 표 III-22 |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여부<br>결정요인 추정 결과 .....                    | 116 |
| 표 III-23 |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bivariate RE Probit ..                          | 119 |
| 표 III-24 |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여부<br>결정요인 추정 결과 .....                    | 120 |
| 표 III-25 |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한 bivariate RE Probit ..                          | 122 |
| 표 III-26 |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및 비니트-<br>비취업 간 bivariate RE Probit ..... | 124 |
| 표 IV- 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36 |
| 표 IV- 2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38 |
| 표 IV- 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 니트 관련<br>법률 조항 .....                         | 139 |
| 표 IV- 4  | 아동복지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41 |
| 표 IV- 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42 |
| 표 IV- 6  | 직업안정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43 |
| 표 IV- 7  | 진로교육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 144 |
| 표 IV- 8  | 청년기본법안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6) .....                                  | 145 |
| 표 IV- 9  | 청년기본법안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7) .....                                  | 146 |
| 표 IV-10  | 청년기본법안의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8) .....                                 | 148 |
| 표 IV-11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 내<br>청년사업 현황 .....                    | 150 |
| 표 IV-12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방안(2019) .....                                        | 153 |
| 표 IV-13  |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1<br>고용노동부 .....                            | 155 |
| 표 IV-14  |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2<br>산업 관련 부처 .....                         | 156 |

|         |                                                |     |
|---------|------------------------------------------------|-----|
| 표 IV-15 |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3<br>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 | 157 |
| 표 IV-16 |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4 기타 부처 ..              | 158 |
| 표 IV-17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발전 과정(2009~2013) ....            | 159 |
| 표 IV-18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발전 과정(2014~2018) ....            | 160 |
| 표 IV-19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형에 따른 연도별 참여 인원 ...                | 162 |
| 표 IV-20 | 니트(NEET) 예방을 위한 후기 청소년 자립 지원<br>(여성가족부) .....  | 163 |
| 표 IV-21 |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훈련실적 현황 .....                | 164 |
| 표 IV-22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청년 기본조례 목적 .....                | 166 |
| 표 IV-22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청년 기본조례 목적(계속) ...              | 167 |
| 표 IV-23 | 서울 및 광주의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관련<br>기본조례와 목적 .....      | 168 |
| 표 IV-24 | 청년 전담부서 설치한 8대 지방자치단체 .....                    | 168 |
| 표 IV-25 | 청년일자리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br>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       | 169 |
| 표 IV-26 | 청년일자리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br>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       | 170 |
| 표 IV-27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별<br>청년관련 공약 .....      | 171 |
| 표 V- 1  |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제활동상태 기준 비교 .....                   | 204 |
| 표 V- 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개정 사항 .....                | 206 |
| 표 V- 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안) .....            | 208 |
| 표 V- 4  | 진로교육법(제1조) 개정(안) .....                         | 209 |
| 표 V- 5  | 청년기본법안 수정(안) .....                             | 210 |
| 표 V- 6  | 청년 니트 정책 과제(안) 로드맵 .....                       | 218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Ⅰ - 1  |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                                                  | 6  |
| 그림 Ⅰ - 2  | 연구추진체계 .....                                                      | 7  |
| 그림 Ⅰ - 3  | 연구진행절차 .....                                                      | 8  |
| 그림 Ⅱ - 1  | 유럽연합(EU)의 청년 니트(NEET) 개념 .....                                    | 25 |
| 그림 Ⅱ - 2  | 유럽연합(EU)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서<br>청년 니트(NEET) 식별 과정 ..... | 27 |
| 그림 Ⅱ - 3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본 니트 포함 청년층<br>고용 현황(2017) .....                     | 29 |
| 그림 Ⅲ - 1  | 한국과 OECD 주요국 15-19세 청년 니트 규모<br>비교(2016) .....                    | 36 |
| 그림 Ⅲ - 2  | 한국과 OECD 주요국 20-24세 청년 니트 규모<br>비교(2016) .....                    | 38 |
| 그림 Ⅲ - 3  |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 규모<br>추세 비교 .....                       | 40 |
| 그림 Ⅲ - 4  |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br>남녀별 비교(2016) .....                   | 42 |
| 그림 Ⅲ - 5  | 한국과 유럽연합의 18-24세 청년 재학, 취업 니트<br>비율 비교(2016) .....                | 44 |
| 그림 Ⅲ - 6  | 한국과 유럽연합의 18-24세 청년 성별 비경활<br>비율 비교(2016) .....                   | 44 |
| 그림 Ⅲ - 7  |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수준별 청년 니트<br>비율 비교(2016, %) .....                     | 47 |
| 그림 Ⅲ - 8  | 유럽연합 청년(15-24세) 니트(NEET)<br>유형별 비율(2015, %) .....                 | 48 |
| 그림 Ⅲ - 9  | 한국 청년(15-29세) 니트(NEET)<br>유형별 비율(2016, %) .....                   | 49 |
| 그림 Ⅲ - 10 | 한국 청년(15-29세) 성별 비경활 니트(NEET)<br>유형별 비율(2017, %) .....            | 50 |

|         |                                            |     |
|---------|--------------------------------------------|-----|
| 그림 Ⅲ-11 | 연령별(15-29세, 30-39세) 청년 니트 유형 비교(%)         | 59  |
| 그림 Ⅲ-12 | 연령별(15-29세, 30-39세) 청년 니트 상태 기간<br>비교(%)   | 61  |
| 그림 Ⅲ-13 | 연령별(15-29세, 30-39세) 미취업상태에서<br>고민거리 비교(%)  | 67  |
| 그림 Ⅲ-14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선호하는 일자리<br>유형 비교(%)         | 69  |
| 그림 Ⅲ-15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채무여부 및 채무발생<br>이유 비교(%)      | 70  |
| 그림 Ⅲ-16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고용정책 방향 의견(%)                | 72  |
| 그림 Ⅲ-17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공급정책 의견(%)                 | 72  |
| 그림 Ⅲ-18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수요정책 의견(%)                 | 73  |
| 그림 Ⅲ-19 |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미취업청년 수당<br>지급 의견(%)         | 73  |
| 그림 Ⅲ-20 |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br>관련 안내 및 동의   | 75  |
| 그림 Ⅲ-21 |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기초배경 질문지               | 76  |
| 그림 Ⅲ-22 | 청년 니트 실태 질문 주제 및 인터뷰 흐름도                   | 77  |
| 그림 Ⅲ-23 | 청년 니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질문주제<br>및 인터뷰        | 78  |
| 그림 Ⅲ-24 | 청년 니트로의 진입(%)                              | 106 |
| 그림 Ⅲ-25 | 청년 니트로부터의 탈출(%)                            | 107 |
| 그림 Ⅲ-26 | 성별로 본 니트 진입                                | 108 |
| 그림 Ⅲ-27 | 성별로 본 니트 탈출                                | 108 |
| 그림 Ⅳ- 1 | 청년 구직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                       | 151 |
| 그림 Ⅳ- 2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방안                        | 154 |
| 그림 Ⅳ- 3 |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참여 인원 및<br>예산 규모 추이(2009-2016) | 161 |
| 그림 Ⅳ- 4 | 후기청소년 심리, 정서적 지원체계                         | 163 |
| 그림 Ⅳ- 5 | 노동시장정책 유형의 구분                              | 165 |
| 그림 Ⅳ- 6 | 2020 서울시 청년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 174 |
| 그림 Ⅳ- 7 | 2020 서울시 청년정책 20                           | 175 |
| 그림 Ⅳ- 8 | 광주 청년정책비전과 전략목표                            | 178 |
| 그림 Ⅳ- 9 | 광주 청년드림(dream) 홍보물                         | 180 |
| 그림 Ⅳ-10 | 대구형 청년보장제 : 대상별 지원방향                       | 183 |



|          |                                  |     |
|----------|----------------------------------|-----|
| 그림 IV-11 | 대구형 청년보장제 : 주기별 지원정책 .....       | 183 |
| 그림 IV-12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              | 186 |
| 그림 V- 1  | 청년 니트 정책과제 제안 절차 .....           | 193 |
| 그림 V- 2  | 청년 니트 선행연구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4 |
| 그림 V- 3  | 청년 니트 국제비교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5 |
| 그림 V- 4  | 청년 니트 실태조사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5 |
| 그림 V- 5  | 청년 니트 심층면접 결과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6 |
| 그림 V- 6  | 청년 니트 진입·탈출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7 |
| 그림 V- 7  | 청년 니트 관련 법률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  | 197 |
| 그림 V- 8  | 청년기본법안 법률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 198 |
| 그림 V- 9  | 중앙정부 니트 정책 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  | 199 |
| 그림 V-10  | 지자체 니트 정책 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 | 199 |
| 그림 V-11  | 청년 니트 정책의 방향(안) .....            | 201 |
| 그림 V-12  |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 .....              | 203 |
| 그림 V-13  | 청년 니트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과제(안) .....   | 206 |
| 그림 V-14  | 일본의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     | 213 |
| 그림 V-15  | 기존 청년 니트 정책사업 개선(안) .....        | 214 |
| 그림 V-16  |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안) .....            | 215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sup>1)</sup>

청년 정책은 청년 실업률이 2017년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나 학자금, 빈곤,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년 들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국제적으로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핵심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OECD에서 제시한 핵심 정책 대상은 학업도,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청년 니트(NEET)와 첫 취업을 앞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규 졸업자, 대학을 나왔으나 대졸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고졸 노동시장이나 임시, 일용직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하향취업자 등이었다(OECD, 2014a).

핵심 정책 대상에 대한 관심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청년 니트 문제에 주목해 이들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관한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Eurofound, 2012). 이어서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니트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으로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이사회는 “모든 25세 이하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견습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4)<sup>2)</sup>.

일본은 청년문제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오래전부터 정사원으로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년 프리터(freeter)나 청년 니트(NEET)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최근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의 신규 졸업자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2015년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신규취업자를 채용할 경우에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상세한 일자리정보를 제시(청년일자리 공시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청년 니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규모 추정(남재량, 2006)에서 시작해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청년 니트에 관한 연구(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2017년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수당)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 니트에 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통계청에서는 현재 니트 중 일부인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

2) 해당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ll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25 years receive a good-quality offer of employment, continued education, an apprenticeship or a traineeship within a period of four months of becoming unemployed or leaving formal education”(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4).

우리나라의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 개발 사례는 고용보조지표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실업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14년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제시해 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정책 대상으로 청년 취업준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진희, 임희정(2014)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바 있으며 후속 연구도 수행하였다(박진희, 양수경, 2016). 김기현, 한지형(2017)은 취업준비자의 범위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노동자도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하여 규모를 추정하고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핵심정책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청년 니트(NEET)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서는 OECD에서 제시한 학교 졸업예정자와 하향취업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2차 연도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OECD의 핵심정책 대상인 신규졸업자 대신 학교 졸업예정자로 변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세부적인 청년 정책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며, 2018년 청년 니트를 시작으로 매년 핵심정책 대상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핵심정책 대상으로 청년 니트(NEET)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차와 3차 년도에서는 ‘OECD 청년 행동계획 우선 지원 대상’에 니트와 함께 포함된 신규졸업자(학교 졸업예정자로 변경)와 하향취업자 그룹을 핵심정책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2차 년도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청년 니트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규 졸업자 대신 유사집단인 학교 졸업예정자로 변경하였다.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1차 연도인 2018년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정책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청년 니트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와 국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차와 3차 연도에 수행할 청년 핵심정책 대상 그룹을 선정했다. 2차와

3차 연도 연구 대상은 각각 청년 학교 졸업예정자와 청년 하향취업자 실태를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과정과 정착과정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올해는 청년 니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노동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다. 우리원의 연구진은 니트 실태조사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원에서 통합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부가조사(special module) 방식을 통해 청년 니트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연령범위의 3,133명을 대상으로 7월에서 8월에 걸쳐 개별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치화된 데이터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청년 니트 현상의 구체적인 이해 및 해석과 정책적 수요 파악을 위해서 심층면접조사를 추진하였다. 청년 니트를 네 개의 유형(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구직 회피·휴식형, 자발적선택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다섯 명 내외를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3 연구진행절차

한국노동연구원은 공동연구원 형태로 참여하며,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한 청년 니트의 진입과 탈출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당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청년 니트 지원 방안 마련에 있어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공동연구기관 형태로 참여하며, 청년 니트 정책에 대한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 니트 관련 정책의 벤치마킹이나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진행절차는 연구 설계단계와 조사단계, 그리고 정책 도출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구 설계단계는 연구 방향 및 내용을 정하고 자료수집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연구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단계였다. 조사단계는 연구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실태조사인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참여와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정책 도출단계로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방안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내용

#### 1) 핵심정책 대상별 청년 맞춤형 대책과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청년 니트 실태 및 현황과 함께 청년 니트 정책을 검토하고 진단했다. 아울러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문서들을 포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다음 연도 연구 대상을 확정하였다.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하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한 청년 니트 지원 정책들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2) 청년 니트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니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이루어지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참여하였다. 엄격한 표집방법과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추출된 청년 니트의 데이터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유형별 분류를 통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구직회피·휴식형, 자발적선택형 등 4대 유형별로 이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청년 니트의 진입요인과 탈출요인 분석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청년 니트의 진입요인과 탈출요인을 분석하여 청년 니트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이 다년간 축적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니트로 진입하게 된 주요인과 청년 니트에서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된 요인을 통계분석으로 파악하였다.

#### 4)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 도출

청년 니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세계경제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청년 니트의 생애주기별 생태학적 접근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분석, 2차 자료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차 연도인 2018년 청년 니트를 시작으로 학계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진과 함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여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효과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해외에서 입증된 정책이라도 현지화의 고민 없이 도입된다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 니트의 진입 및 탈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핀다면 국내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갖고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핵심정책 대상별 청년 맞춤형 대책과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은 청년 니트의 실태와 현황, 니트 위험요인이나 탈출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청년 정책 및 청년 니트 정책에 관한 문헌들이다.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은 보다 정교한 정책 제안을 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맡았다.

### 2)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조사문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 형태로 청년 3,133명이 조사되었다.

표 1-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비고             |
|-------|----------------------|----------------|
| 모 집 단 | 전국의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
| 표 집 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
| 표 본 수 | 3,133명               | 목표 표본수: 3,000명 |
| 표집방법  |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                |
| 조사시기  | 7월-8월(기준일은 7월 1일)    |                |

### 3)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청년 니트의 진입요인과 탈출요인을 패널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였고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석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진이 분석을 맡아 진행하였다.

### 4)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부처와 정책연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청년 정책과 청년 취약계층 대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진들과 현장 전문가를 비롯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처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과의 논의는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정책 전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정부의 3.15 청년일자리대책 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 간담회('18. 02.01)와 국무총리비서실 간담회('18.03.07) 등이 개최되었으며 1월과 10월 국무조정실 실무자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08.01.15, 10.18)를 개최하였다.

국회에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기본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책임자인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국회 청년기본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청년 연령정의, 청년 총괄조정기구, 청년 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청년미래특별위원회, 2018).

청년 고용대책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인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청년TF 위원으로 참가하여 3.15 청년고용대책 마련 시에 청년 니트를 비롯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이후 TF회의와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포럼에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진행 점검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청년고용포럼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에서는 청년 니트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부에서는 사회정책협력을 구축하여 사회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복지사회보장분과 세미나에서 청년 니트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후기청소년 니트 문제를, 세종시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 OECD가 작성하고 있는 한국 청년문제에 대한 보고서(*Investing in Youth Review: Korea*)의 집필진들(Sarah Kups Economist, Veerle Miranda Senior Economist)과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 -2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구분                      | 내용                             | 횟수(일시)                                                                        | 참석자                                                               |
|-------------------------|--------------------------------|-------------------------------------------------------------------------------|-------------------------------------------------------------------|
| 전문가 자문회의                | 청년 핵심정책대상 선정 자문                | 1회('18.01.30)                                                                 | 유성열 교수(백석대학교), 김유빈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등                                  |
| 국무조정실 정책 연구실무협의회        | 청년 종합대책 논의 및 3.15 청년 일자리 대책 평가 | 2회('18.01.15, 10.18)                                                          | 김달원 과장, 유항섭 사무관(사회 복지정책관), 김령석 과장, 김재영 사무관, 오민준 사무관(성과관리 운영과) 등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분과)회의 | 청년 일자리대책 논의                    | 10회('18.01.05, 01.19, 02.19, 02.23, 03.13, 05.10, 09.06, 10.24, 11.13, 12.11) | 전 이용섭 부위원장, 현 이목희 부위원장, 이호승 단장(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장신철 부단장, 허윤선 과장 등 |

| 구분                       | 내용                          | 횟수(일시)                                                         | 참석자                                                                                   |
|--------------------------|-----------------------------|----------------------------------------------------------------|---------------------------------------------------------------------------------------|
| 국무총리 간담회                 | 청년 정책 논의                    | 1회('18.02.01)                                                  |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 2차장, 장상윤 실장(사회복지정책관)                                                 |
| 국회 청년미래특위 공청회            | 청년기본법안 논의                   | 1회('18.02.23)                                                  | 이명수 의원(위원장), 박주민 의원,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의원(바른미래당) 등                     |
| 국무총리비서실 간담회              | 청년 종합대책 논의                  | 1회('18.03.07)                                                  | 배재정 비서실장, 주은성 사무관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 국정과제 청년 정책 점검 및 향후 방향 논의    | 1회('18.03.02)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흥식 분과위원장(포용사회), 김연명, 박준식 위원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 OECD 한국 청년 정책 보고서 자문        | 1회('18.4.20)                                                   | Sarah Kups, Veerle Miranda (Social Policy Division in OECD)                           |
| 전문가 자문회의                 | 저출산과 청년정책 관련성 및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1회('18.05.03)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 이창준 기획조정관, 류양지 과장, 최봉근 과장 등                              |
|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청년 고용포럼 | 청년 고용대책과 해외 청년 니트 시사점       | 5회('18.01.31, 06.05, 06.29, 08.24, 09.07)                      |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김덕호 국장, 송민선 과장(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                                               |
| 사회정책협력망 복지사회보장분과 세미나     | 청년 니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1회('18.08.06)                                                  | 송준호 과장, 이정애 사무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김형만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
| 여성가족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후기청소년 니트 대책 및 한국형 청년보장제 논의  | 1회('18.10.01)                                                  | 최성지 국장(청소년정책관), 박선옥 과장, 박선영 주무관 (청소년자립지원과) 등                                          |
| 세종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일자리분과 회의   | 세종 청년사업                     | 8회('18.02.27, 03.21, 04.02, 04.19, 04.24, 06.20, 07.17, 08.21) | 이춘희 세종시장, 이귀현 국장, 안유상 과장(경제산업국)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 청년 니트 최종보고서 검토 및 수정·보완 자문   | 2회('18.10.23, 10.24)                                           |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 이상준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동열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기현주 센터장(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송효원 팀장(청년유니온) |



## 5) 심층면접

청년 니트들의 수요 파악과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청년 니트이며 내부 이질성을 고려해 4개의 유형별로 4~6명 씩 총 1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 청년 니트 심층면접 결과

| 주요 요소 | 내용                             |
|-------|--------------------------------|
| 조사대상  | 청년 니트 19명(유형별로 4~6명)           |
| 선정방법  | 임의표집                           |
| 조사내용  | 청년 니트의 삶과 일, 향후 진로와 계획, 정책적 수요 |
| 조사방법  | 심층면접                           |
| 조사시기  | 9~10월                          |

청년 니트 유형은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발적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면접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발적선택형은 다섯 명, 구직회피·휴식형과 취업·진학준비형은 각각 네 명, 그리고 돌봄·가사·육아형은 여섯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6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3명, 비수도권 6명으로, 최저연령은 만 19살이며 최고연령은 38살로 본 연구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전 연령대를 고루 포함하였다.



## 제2장 연구 배경

-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 2. 청년 니트(NEET)에 대한 논의
- 3. 요약 및 시사점



###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sup>3)</sup>

청년고용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의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꼽았다(이데일리, 2018. 02.09). 2040년까지의 한국사회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전망 연구>에서는 청년실업 및 취업난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 대두와 세대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 같은 우울한 전망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청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취약계층은 비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도 포함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신규졸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청년 니트를 청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취약계층은 청년 실업자, 청년 불안정 피고용자, 청년 노동빈곤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기현, 한지형, 2016). 이들 중 청년 노동빈곤층이라 함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하향취업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증가로

3) 이 절은 배상을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제적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는 청년들을 일컫는다(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국내 청년고용 관련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 별 6가지 유형 분류 후 단계별 취업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7a).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①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② 고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③ 대졸이상 미취업자, ④ 영세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⑥ 맞춤 특기병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지원 대상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a).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 취업에 머물고 있으며, 1년이 안 되어 일을 그만두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현재 국내·외적으로 처한 청년 실업 및 고용 불안정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고 문제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년 핵심정책 대상의 선정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 해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청년실천계획(action plan for youth)을 마련하였으며(표 II-1 참조), 이듬해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 그룹으로 니트와 함께 신규졸업자와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표 II-2 참조)을 발표하였다(김문희, 2015).

OECD(2014b)가 공표한 청년 행동계획 우선지원 대상들 중 직업이 없는 상태 이면서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 니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회자본의 약화와 심리적 고립의 심화로 장기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류로서,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도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OECD(2014b)의 3개 우선 지원 그룹 중 하나인 신규진입자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통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직장이 적성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동기부여(승진, 임금 등)의 부재 등으로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으로 자신이 보유한 교육수준이나 역량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갖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경험하는 대학 졸업자<sup>\*</sup>들이 OECD(2014b)의 우선 지원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들 역시 취업자로 포함되는 그룹이지만 미스매치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자존감 하락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표 II-1 OECD 청년실천계획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청년실업 문제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수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li> <li>- 실업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li> <li>-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지 및 확대</li> <li>-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측면의 장애요인(높은 노동비용 등) 제거</li> <li>- 고용주들로 하여금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장려</li> </ul>                                                                                                                                      |
| 청년고용 전망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준비 철저(중도탈락 방지, 노동시장 적합도 높은 기술 연마 등)</li> <li>-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및 효과성 강화(일터를 통한 학습강화, 노동시장 수요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li> <li>-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지원(학교교육 완료 이전에 적절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 수준 높은 진로 지도 등)</li> <li>-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재설계(정규 및 임시근로자 간의 고용보호 형평성 제고, 취약 청년층을 위한 집중프로그램 운영 등)</li> </ul> |

<sup>\*</sup> 자료 : OECD (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p.3.  
<sup>\*</sup> 출처 : 김문희 (2015)의 'OE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 연구' p. 101에서 재인용.

앞서 3개 우선지원 대상 중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된 청년 니트는 사회적 소외의 영속화나 심화 현상, 비경제활동에 따른 사회 빈곤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의 모임이다. 이에 따라 청년 니트의 범주화와 이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유럽 및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표 II-2 OECD의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

| 대상                           | 주요 내용                                                                                                                                                                                                                                                  |
|------------------------------|--------------------------------------------------------------------------------------------------------------------------------------------------------------------------------------------------------------------------------------------------------|
| 청년 니트<br>(NE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li> <li>-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li> </ul> |
|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br>신규진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li> </ul>                                                              |
| 일자리<br>미스매치에<br>직면한<br>대학졸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을 했을 수 있음.</li> <li>-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li> </ul>     |

\* 자료 : OECD (2014b: 8), The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Irish Youth Guarantee.  
 \* 출처 : 김문길, 김미곤 외 (2015: 52), 김문희(2015: 113)에서 재인용.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 2016) 주도로 가장 최근 이뤄진 범주화 작업에 따르면, 총 7가지의 이질적 하위범주들로 청년 니트를 세분화할 수 있다(표 II-3 참조). 니트의 하위그룹들은 서로 다른 니즈와 특성을 갖고 있기에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방식 역시 만병통치약식의 접근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Mascherini, M. et al., 2017).

표 II-3 청년 니트 7개 유형별 분류

| 대상                    | 주요 내용                                   |
|-----------------------|-----------------------------------------|
| 재진입자                  | 이미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곧 니트의 범주를 벗어날 사람 |
| 단기 실업자                | 실업 기간이 12개월에 못 미치는 사람                   |
| 장기 실업자                | 실업 기간이 12개월을 넘긴 사람                      |
| 가족 부양책임으로 일할 여력이 없는 자 | 자녀, 부모 등 가족 부양책임으로 니트가 된 사람             |
| 질병/장애로 일할 여력이 없는 자    |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로 니트가 된 사람                   |
| 낙담한 노동자               |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  |
| 기타 청년 니트              | 자신이 니트가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람           |

\* 출처 : Mascherini, M et al. (2017: 8)의 내용을 재구성함.

일본의 경우,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 추세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인 이유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일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성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Genda, 2017). 특히, 신규 졸업자 취직 지원과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생활하는 자를 일컫는 프리터족에 대한 취직 지원에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주도의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은 니트를 능동적 니트(구직형)와 소극적 니트로 구분하고 소극적 니트는 취업 자체를 희망하지 않아 구직도 하지 않는 ‘비취업희망형’과 일하기를 원하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형’으로 세분화하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추세는 비취업희망형의 니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취업희망형 니트의 수가 40만 명 정도였으나 2015년 6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은 소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며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Genda, 2017).



## 2. 청년 니트(NEET)에 대한 논의<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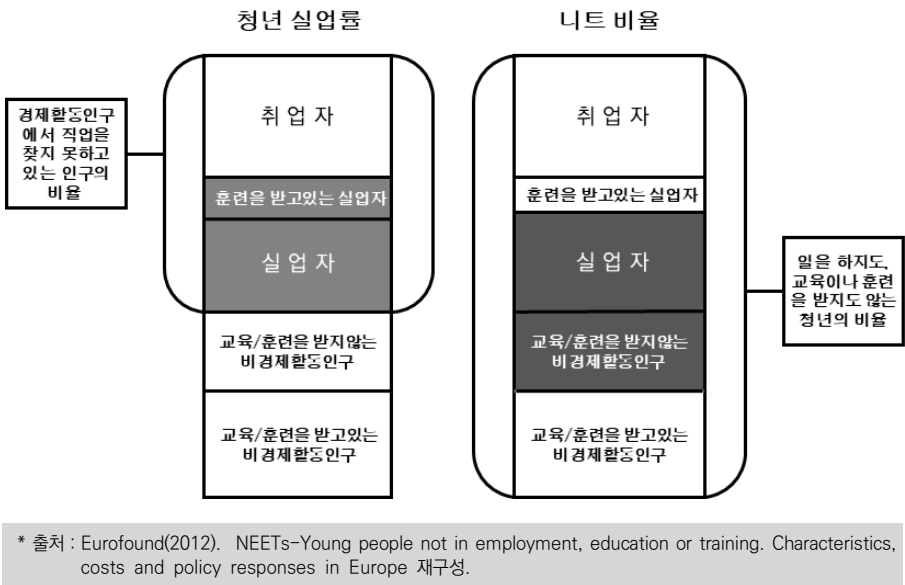
청년 니트(NEET)는 전통적으로 활용 중인 고용지표인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보완하는 보조 지표로 주목을 받아 왔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부총리 산하의 사회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1999)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니트는 10대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었다. 영국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이 집단에 주목해 왔으며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는 청소년(Status Zero)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Ree, Williamson and Instance, 1996). 영국에서의 니트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 이후 주목받아 관련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정책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니트의 대상과 범위가 10대와 취약계층에서 20대와 일반계층을 포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프리터(freeter)에 이어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터이다(김기현, 2005).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었다(厚生労働省, 2004). 일본의 노동경제백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니트는 10대만이 아니라 15세에서 34세로 연령 범위가 포괄적이다. 정책 대상도 일본의 특성에 맞게 정의하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본래 의미인 일, 학업,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자나 기혼자, 가사 노동을 주로 하는 자를 니트에서 제외하였다(김기현, 2017). 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내각부(內閣府, 2005)에서는 실업자나 미혼으로 가사를 보조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니트를 정의하고 통계 결과를 제시해 다른 입장을 보여준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후생노동성의 정의이다.

---

4)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 절의 최종보고 단계 초고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와 한국노동연구원의 6차 KLI청년고용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d, 2018e).

최근 들어 청년 니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Eurofound, 2012). 유럽연합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시행하면서 청년 니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인 관심 대상인 실업자 외에 교육도, 취업도,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젊은이로 청년 니트를 정의하였다.



**그림 II-1 유럽연합(EU)의 청년 니트(NEET) 개념**

OECD는 유럽연합의 청년 니트 정의와 동일하게 2014년부터 「한 눈에 보는 교육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OECD, 2014c, 2015, 2016a, 2017, 2018a)에서 청년 니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OECD가 청년 니트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는 2016년도 「한 눈에 보는 사회보고서(*Society at a Glance*)」에서 청년 니트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OECD, 2016b).

표 II-4 해외 청년 니트 개념 비교

| 구분    | 영국(1999)         | 일본(2004) | EU(2012) | OECD(2014) |
|-------|------------------|----------|----------|------------|
| 연령    | 16 ~ 18세         | 15 ~ 34세 | 15 ~ 29세 | 15 ~ 29세   |
| 실업자   | 포함               | 제외       | 포함       | 포함         |
| 기혼자   | 포함               | 제외       | 포함       | 포함         |
| 가사    | 포함               | 제외       | 포함       | 포함         |
| 공식교육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 공식훈련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 비공식훈련 | 제외 <sup>1)</sup> | 포함       | 포함       |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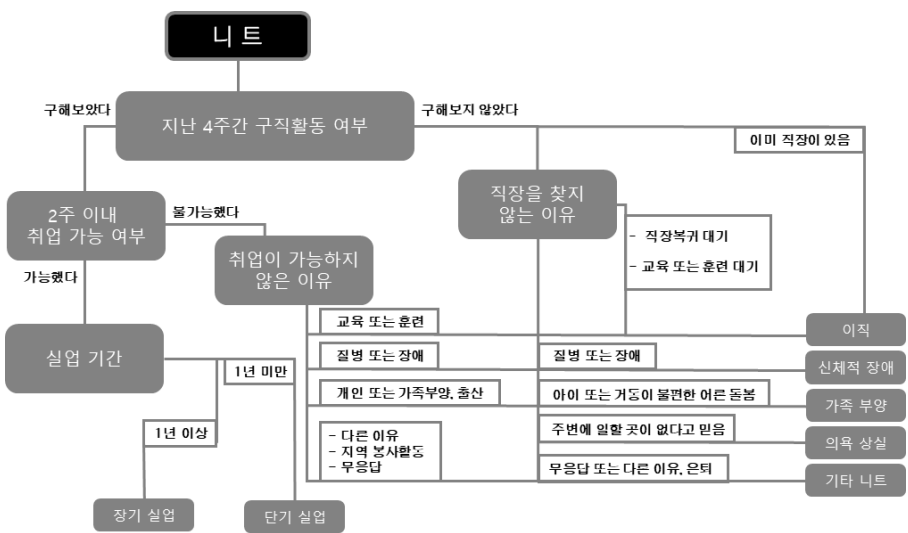
\* 출처 :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厚生労働省(2004), Eurofound(2012), OECD(2014a)의 내용을 재구성함

\* 1) 영국에서 처음 니트를 다룰 때 공식훈련 정부인정/지원훈련(Apprenticeships, National Traineeships) 외에 비공식 훈련(informal education)인 고용주 지원 훈련, 다른 민간 부문 훈련도 니트에서 제외함(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16).

영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OECD의 청년 니트 개념을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서 영국이 가장 좁게 10대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이 30대 후반을 포괄하여 가장 넓게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남재량(2006)은 주로 일본의 정의에 기초해 국내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세에서 34세로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는 자와 기혼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과 동일하게 니트를 정의하였으나 실업자를 니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로 김종욱(2017)은 남재량(2006)의 기준을 따르되 청년의 연령을 15세에서 29세로 변경하여 청년 니트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청년 니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OECD의 정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공식 훈련 참여에 관한 것이다(김기현, 2017). OECD와 EU에서는 정규교육만이 아니라 훈련의 경우에도 공식교육(formal education)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만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취업 성공패키지를 비롯한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의 학위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OECD가 채택하고

있는 UNESCO의 국제표준분류(ISCED) 중에서 고등교육은 아니지만 중등교육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UNESCO, 2011).



\* 출처 : Eurofound(2016). Exploring the Diversity of NEETs에서 재구성.

그림 II-2 유럽연합(EU)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서 청년 니트(NEET) 식별 과정

UNESCO(2011)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 과정을 기술자격 과정(technician diploma, primary professional education, préparation aux carrières administrative)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전문학사, A.A/A.S 등 미국의 준 학사 학위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1977년 제정된 기능대학법에 기초해 22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되었으나, 2005년 한국폴리텍대학(Korea Polytechnic College)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고등교육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표준교육분류 상 중등 후 비고등교육기관은 국내에는 없는 상태이다.

표 II-5 이 연구와 다른 국내 청년 니트 개념 비교

| 구분    | 이 연구<br>(2018) | 이규용 외<br>(2015) | 금재호 외<br>(2007) | 남재량<br>(2006) |
|-------|----------------|-----------------|-----------------|---------------|
| 연령    | 15 ~ 29세       | 15 ~ 29세        | 15 ~ 29세        | 15 ~ 34세      |
| 실업자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기혼자   | 포함             | 포함              | 포함              | <b>제외</b>     |
| 가사    | 포함             | 포함              | 포함              | <b>제외</b>     |
| 공식교육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공식훈련  | 포함             | 포함              | 포함              | 포함            |
| 비공식훈련 | <b>제외</b>      | <b>제외</b>       | <b>제외</b>       | <b>제외</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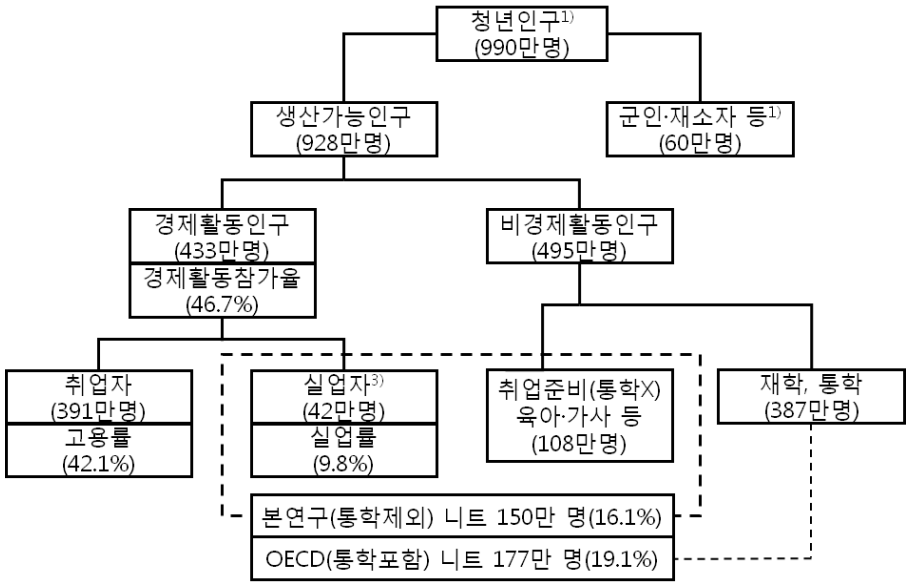
1) 영국에서 처음 니트를 다룰 때 공식훈련 정부인정/지원훈련(Apprenticeships, National Traineeships) 외에 비공식 훈련(informal education)인 고용주 지원 훈련, 다른 민간 부문 훈련도 니트에서 제외함(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16).

\* 자료: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厚生労働省(2004), Eurofound(2012), OECD(2014a).

이와 관련해 청년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OECD에 중등 후 비고등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훈련을 니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청하였지만 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에서 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b). 국내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처럼 비공식교육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로 응답)도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남재량, 2006, 금재호, 전용일 외, 2007,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현, 2008, 이규용, 금재호, 안주엽, 윤자영, 김기현, 이지은, 신선옥, 이해정, 김기홍, 2015).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들과 유사하게 15세에서 29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입시 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를 포함하여 니트를 정의하여 분석하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시에는 EU와 OECD 기준을 따랐다. 그리고 국내 청년기본법안 논의에서 30세를 포함하여 연령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30세부터 39세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실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청년 니트를 추정해 보면,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 니트는 생산가능인구의 16.1%인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업자는 42만 명으로 청년 니트 중에서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를 구직 니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청년 니트는 전체 니트 중 72.0%로 108만 명에 이른다.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6월 20일 추출.  
니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임.

\* 1) 15-29세 청년 인구나 군인, 재소자 등 인구는 고용노동부(2018)의 추정치 결과임.

그림 II-3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본 니트 포함 청년층 고용 현황(2017)

전체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니트는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기준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도 청년 니트에 포함할 경우 전체 니트는 전체 청년 중 19.1%로 177만 명에 이른다.

### 3. 요약 및 시사점<sup>5)</sup>

이 장에서는 청년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논의와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책 대상인 청년에 대한 정의와 니트의 대상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청년의 연령 정의는 영국에서 10대 중심으로 대상을 정의해 정책이 이루어진 데 반해 일본에서는 30대 초반을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EU나 OECD에서는 15세부터 29세를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청년 연령 정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연령 정의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의 청년 연령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정당 간 합의로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정의는 9세에서 24세로 19세부터 24세가 연령 정의상 중복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해외 사례나 선행연구들로부터 연령 정의는 각 국가별로 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 연령을 정의하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핵심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29세로 보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15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29세 이상 34세 이하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학교 밖에 있거나 고교 졸업 후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30대 청년들은 내부 이질성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청년 니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검토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자 한다.

---

5)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범위 설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청년 니트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부 혹은 가사를 주로 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요하고 경력 단절 문제가 쟁점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기관에 통학 중인 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직업훈련이 주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EU나 OECD처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말 그대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공식교육이든 아니든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 니트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제를 운영 중인 곳 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경우에만 니트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따르고자 한다.







## 제3장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실태와 특징

- 1. 청년 니트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 2. 청년 니트의 생활실태와 특징
- 3. 청년 니트 진입 및 탈출요인
- 4. 요약 및 시사점



## 1. 청년 니트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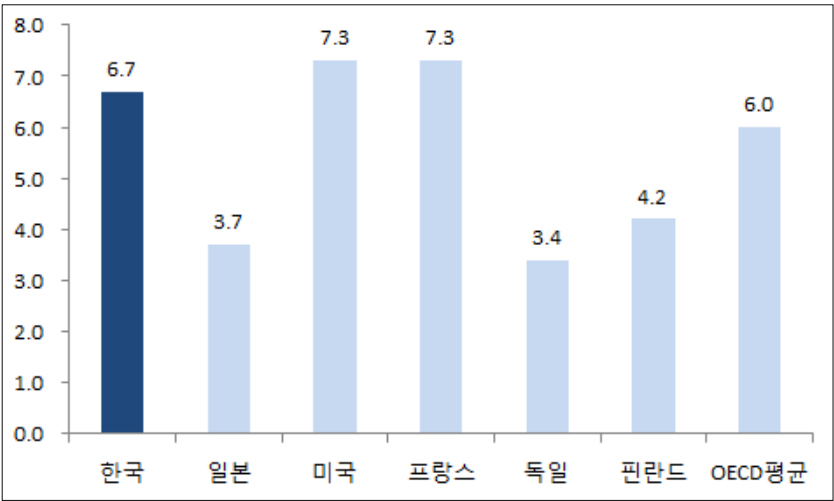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성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청년 니트는 공식교육/직업훈련 형태가 아닌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자를 제외한 경우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5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5개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라는 측면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미국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고용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교 시에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하였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선형 학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6)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 절의 중간보고 단계의 초고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청년고용포럼 2차 회의(2018년 6월 29일, 서울역 스퀘어 3층 소회의실)와 교육부 사업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정책협력망 복지 사회보장분과 세미나(2018년 8월 1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19A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a, 2018b). 이 절의 최종보고 단계 초고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와 한국노동연구원의 6차 KLI청년고용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d, 2018e).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독일은 복선형 학제와 직업교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원활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핀란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같은 선도적인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한 국가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먼저 10대 후반인 15세에서 19세의 청년 니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중은 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학생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10대 청년 니트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미국(7.3%)이나 프랑스(7.3%)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 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 (<http://data.oecd.org/>).

\* 주 : 한국은 2014년부터 OECD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추정한 결과임. 일본은 OECD에 2016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결과임.

**그림 Ⅲ-1 한국과 OECD 주요국 15-19세 청년 니트 규모 비교(2016)**

OECD 통계 자료를 통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국가와 5개국의 장기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별도의 통계수치를 OECD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시계열 통계 제시는 한국을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10대 청년 니트는 1998년 9.5%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다시 상승해 8.5%를 보여준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청년보장제와 같은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표 III-1 OECD 주요국 15-19세 청년 니트(NEET) 현황 비교(199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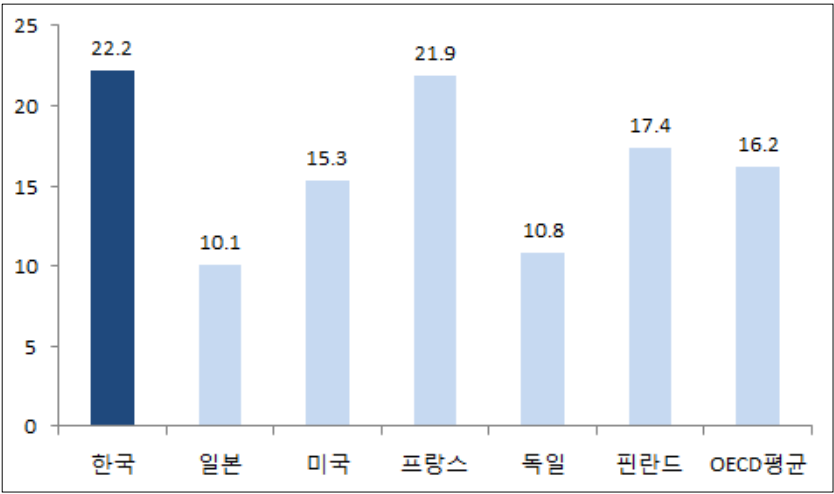
(단위 : %)

| 연도   | 일본  |     |     | 미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핀란드 |     |     | OECD 평균 |      |     |
|------|-----|-----|-----|-----|-----|-----|-----|-----|-----|-----|-----|-----|-----|-----|-----|---------|------|-----|
|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 1997 | -   | -   | -   | 6.3 | 7.8 | 7.1 | 7.1 | 6.5 | 6.8 | 4.7 | 5.3 | 5.0 | -   | -   | -   | 7.5     | 10.2 | 8.9 |
| 1998 | -   | -   | -   | 6.5 | 8.2 | 7.3 | 6.6 | 5.7 | 6.2 | -   | -   | -   | -   | -   | -   | 8.3     | 10.8 | 9.5 |
| 1999 | -   | -   | -   | 6.1 | 8.7 | 7.4 | 7.8 | 6.9 | 7.3 | 4.2 | 4.9 | 4.5 | -   | -   | -   | 7.9     | 10.2 | 9.0 |
| 2000 | -   | -   | -   | 6.8 | 7.3 | 7.0 | 7.3 | 6.7 | 7.0 | 5.2 | 6.3 | 5.7 | -   | -   | -   | 7.8     | 10.3 | 9.0 |
| 2001 | -   | -   | -   | 6.9 | 8.0 | 7.5 | 6.7 | 6.5 | 6.6 | 4.9 | 5.3 | 5.1 | -   | -   | -   | 7.6     | 9.7  | 8.6 |
| 2002 | -   | -   | -   | 6.4 | 7.5 | 6.9 | 7.2 | 6.4 | 6.8 | 4.3 | 5.1 | 4.7 | -   | -   | -   | 7.8     | 9.4  | 8.6 |
| 2003 | -   | -   | -   | 6.6 | 7.6 | 7.1 | 6.0 | 4.7 | 5.4 | 4.7 | 4.8 | 4.7 | 6.5 | 6.0 | 6.2 | 7.7     | 8.9  | 8.3 |
| 2004 | -   | -   | -   | 6.5 | 7.3 | 6.9 | 6.0 | 4.7 | 5.4 | 3.5 | 3.7 | 3.6 | 5.4 | 6.4 | 5.9 | 7.5     | 8.8  | 8.1 |
| 2005 | 4.7 | 5.0 | 4.9 | 5.9 | 6.3 | 6.1 | 6.9 | 5.8 | 6.3 | 3.8 | 5.0 | 4.4 | 5.6 | 4.9 | 5.2 | 7.3     | 8.6  | 7.9 |
| 2006 | 4.6 | 4.4 | 4.5 | 6.2 | 7.2 | 6.7 | 6.9 | 7.1 | 7.0 | 4.1 | 4.3 | 4.2 | 4.1 | 3.0 | 3.6 | 7.5     | 8.2  | 7.8 |
| 2007 | 4.2 | 4.5 | 4.3 | 6.0 | 7.2 | 6.6 | 7.0 | 5.6 | 6.3 | 4.4 | 3.8 | 4.2 | 3.0 | 4.1 | 3.5 | 7.3     | 8.1  | 7.7 |
| 2008 | 3.8 | 4.4 | 4.1 | 7.5 | 7.7 | 7.6 | 6.1 | 5.5 | 5.8 | 3.6 | 3.8 | 3.7 | 5.9 | 4.2 | 5.1 | 6.8     | 7.6  | 7.2 |
| 2009 | 4.9 | 4.9 | 4.9 | 9.1 | 8.5 | 8.8 | 7.2 | 6.4 | 6.8 | 3.6 | 3.9 | 3.8 | 6.0 | 4.3 | 5.1 | 8.5     | 8.5  | 8.5 |
| 2010 | 4.8 | 4.3 | 4.6 | 8.1 | 7.2 | 7.7 | 8.6 | 7.2 | 7.9 | 3.7 | 3.7 | 3.7 | 5.5 | 4.7 | 5.1 | 8.0     | 7.7  | 7.9 |
| 2011 | 5.1 | 4.5 | 4.8 | 7.3 | 7.0 | 7.2 | 8.1 | 6.0 | 7.1 | 3.5 | 3.5 | 3.5 | 4.6 | 5.5 | 5.1 | 7.8     | 8.1  | 8.0 |
| 2012 | 4.2 | 3.5 | 3.8 | 8.3 | 7.0 | 7.7 | 7.7 | 6.0 | 6.9 | 2.9 | 3.2 | 3.0 | 4.6 | 4.8 | 5.0 | 7.0     | 6.6  | 6.8 |
| 2013 | 4.8 | 3.3 | 4.1 | 8.7 | 8.2 | 8.4 | 8.6 | 6.9 | 7.8 | 2.6 | 3.0 | 2.8 | 5.2 | 4.4 | 4.8 | 7.1     | 6.9  | 7.0 |
| 2014 | 3.9 | 3.5 | 3.7 | 8.1 | 7.1 | 7.6 | 8.8 | 6.9 | 7.9 | 2.9 | 3.0 | 2.9 | 5.4 | 5.7 | 5.5 | 6.9     | 6.9  | 6.8 |
| 2015 | -   | -   | -   | 7.1 | 6.9 | 7.0 | 8.7 | 6.1 | 7.5 | 2.5 | 2.6 | 2.5 | 5.4 | 4.9 | 5.2 | 6.5     | 6.5  | 6.5 |
| 2016 | -   | -   | -   | 7.0 | 7.5 | 7.3 | 8.7 | 5.8 | 7.3 | 3.4 | 3.3 | 3.4 | 2.9 | 5.4 | 4.2 | 5.9     | 6.1  | 6.0 |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http://data.oecd.org/>).

이어서 5개 국가들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프랑스는 주기적으로 니트 비중이 7%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이나 독일, 핀란드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3개 국가의 정책방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OECD 평균을 성별로 보면, 10대 남성 청년 니트보다는 여성 청년 니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7년 처음 통계를 제시했을 때 남녀 간 차이는 2.7%p였으나 2016년에는 0.2%p로 줄어들었다. 실질적으로 10대 청년 니트의 감소는 여성의 니트 비율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공식통계가 없지만 김유선(2017)이 15세에서 2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시계열을 추정하 바 있는데 이 역시 남녀 간에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남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 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 (<http://data.oecd.org/>).

\* 주 : 한국은 2014년 이후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추정한 결과임. 일본은 OECD에 2016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결과임.

**그림 III-2 한국과 OECD 주요국 20-24세 청년 니트 규모 비교(2016)**

20세에서 24세 청년 니트의 결과는 10대 후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세에서 24세 청년 니트의 비중은 10대 후반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한국은 22.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16.2%)은 물론 비교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III-2 OECD 주요국 20-24세 청년 니트(NEET) 현황 비교(1997~20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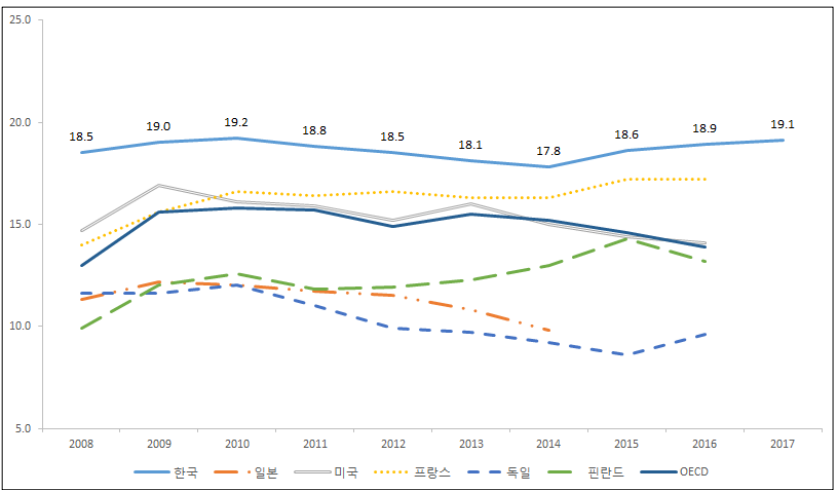
| 연도   | 일본   |      |      | 미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핀란드  |      |      | OECD 평균 |      |      |
|------|------|------|------|------|------|------|------|------|------|------|------|------|------|------|------|---------|------|------|
|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 1997 | -    | -    | -    | 10.9 | 19.1 | 15.1 | 18.5 | 25.7 | 22.1 | 15.7 | 21.3 | 18.4 | -    | -    | -    | 14.0    | 24.7 | 19.6 |
| 1998 | -    | -    | -    | 9.7  | 19.0 | 14.4 | 17.5 | 23.6 | 20.5 | -    | -    | -    | -    | -    | -    | 13.8    | 24.2 | 19.0 |
| 1999 | -    | -    | -    | 10.3 | 19.8 | 15.1 | 18.2 | 24.1 | 21.2 | 14.5 | 19.0 | 16.7 | -    | -    | -    | 13.8    | 22.6 | 18.3 |
| 2000 | -    | -    | -    | 10.5 | 18.3 | 14.4 | 14.9 | 20.2 | 17.6 | 14.6 | 19.4 | 16.9 | -    | -    | -    | 13.7    | 22.3 | 18.1 |
| 2001 | -    | -    | -    | 12.2 | 19.0 | 15.6 | 13.7 | 20.5 | 17.1 | 14.3 | 18.7 | 16.4 | -    | -    | -    | 13.4    | 20.8 | 17.2 |
| 2002 | -    | -    | -    | 12.8 | 20.7 | 16.7 | 15.0 | 20.1 | 17.6 | 14.2 | 17.6 | 15.9 | -    | -    | -    | 15.2    | 21.7 | 18.5 |
| 2003 | -    | -    | -    | 13.8 | 19.6 | 16.7 | 14.7 | 18.7 | 16.7 | 14.7 | 16.6 | 15.6 | 15.4 | 13.5 | 14.4 | 15.3    | 20.8 | 18.1 |
| 2004 | -    | -    | -    | 13.2 | 20.6 | 16.9 | 17.0 | 20.5 | 18.8 | 17.3 | 17.7 | 17.5 | 15.8 | 14.9 | 15.4 | 15.0    | 20.7 | 17.9 |
| 2005 | 10.2 | 14.5 | 12.3 | 12.3 | 18.7 | 15.5 | 16.4 | 19.1 | 17.8 | 18.4 | 19.0 | 18.7 | 12.2 | 13.9 | 13.0 | 14.6    | 19.9 | 17.3 |
| 2006 | 9.5  | 14.8 | 12.1 | 12.3 | 18.9 | 15.6 | 16.9 | 21.1 | 19.0 | 16.0 | 17.5 | 16.7 | 13.3 | 13.3 | 13.3 | 13.6    | 19.3 | 16.5 |
| 2007 | 9.2  | 15.1 | 12.1 | 13.0 | 19.5 | 16.2 | 15.5 | 20.4 | 17.9 | 13.7 | 16.8 | 15.2 | 11.9 | 14.6 | 13.3 | 13.0    | 18.6 | 15.9 |
| 2008 | 8.9  | 13.4 | 11.1 | 15.9 | 18.6 | 17.2 | 15.1 | 18.0 | 16.6 | 12.3 | 15.6 | 14.0 | 10.9 | 13.1 | 12.0 | 11.7    | 17.3 | 14.5 |
| 2009 | 10.8 | 14.5 | 12.6 | 19.3 | 20.8 | 20.1 | 20.2 | 19.7 | 20.0 | 12.8 | 14.7 | 13.7 | 17.2 | 12.9 | 15.1 | 16.8    | 19.5 | 18.2 |
| 2010 | 10.6 | 14.3 | 12.4 | 18.2 | 20.7 | 19.4 | 20.6 | 20.6 | 20.6 | 13.2 | 14.2 | 13.7 | 17.6 | 13.8 | 15.8 | 17.6    | 19.4 | 18.6 |
| 2011 | 10.3 | 13.9 | 12.1 | 16.5 | 20.5 | 18.5 | 18.0 | 22.5 | 20.3 | 11.5 | 13.7 | 12.6 | 15.9 | 12.6 | 14.3 | 16.7    | 19.7 | 18.2 |
| 2012 | 10.2 | 14.6 | 12.4 | 16.0 | 19.4 | 17.7 | 20.0 | 20.2 | 20.1 | 10.3 | 12.1 | 11.2 | 16.7 | 13.6 | 15.2 | 16.4    | 18.4 | 17.4 |
| 2013 | 9.6  | 12.6 | 11.0 | 17.8 | 19.8 | 18.8 | 19.8 | 19.0 | 19.4 | 9.2  | 11.5 | 10.3 | 18.2 | 12.8 | 15.5 | 16.7    | 19.5 | 18.1 |
| 2014 | 8.7  | 11.5 | 10.1 | 14.7 | 20.3 | 17.5 | 18.0 | 18.7 | 18.4 | 9.0  | 11.4 | 10.1 | 17.5 | 13.6 | 15.6 | 16.1    | 18.8 | 17.5 |
| 2015 | -    | -    | -    | 13.7 | 17.8 | 15.8 | 21.7 | 20.2 | 20.9 | 8.1  | 10.5 | 9.3  | 21.1 | 15.4 | 18.3 | 15.4    | 18.6 | 17.0 |
| 2016 | -    | -    | -    | 14.4 | 16.3 | 15.3 | 22.3 | 21.6 | 21.9 | 9.8  | 11.9 | 10.8 | 20.6 | 14.0 | 17.4 | 14.8    | 17.5 | 16.2 |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http://data.oecd.org/>).



비교 대상을 OECD 34개 전체 국가로 넓혀 보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터키(32.9%), 그리스(25.0%), 멕시코(24.9%) 등 3개 국가뿐이다. 이 결과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고학력화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 학생비중이 높은데도 청년 니트가 유독 많다는 점에서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OECD와 5개 국가들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10대 후반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OECD 평균이 거의 20% 가까이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꾸준히 낮아져 2008년 14.5%까지 떨어지다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 다시 낮아져 2016년에는 16.2%까지 니트 비중이 감소하였다.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indicator).  
doi: 10.1787/ 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  
(<http://data.oecd.org/>).

\* 주 : 한국의 2014년 이후 자료는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된 결과임. 일본은 OECD에 2016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결과임.

**그림 III-3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 규모 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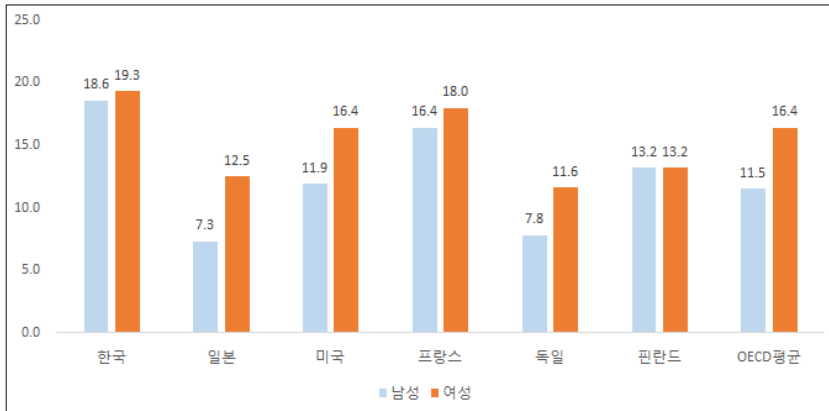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5세부터 29세 전체의 청년 니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에서는 20대 후반(25-29세)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15세에서 29세 전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5-29세 청년 니트 통계를 제공해 왔으므로 장기 추세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이후 한국의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raw data)에서 추정한 것이며 2017년까지 추세를 제시하였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니트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청년 인구 중 18.9%로 나타나 17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청년만을 제외한 결과로 비형식교육형태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할 경우 청년 니트는 156만 명으로 비중은 16.6%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청년 니트 비중은 OECD 평균은 물론 5개 비교대상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34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높은 니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터키(28.2%), 이탈리아(26.0%), 그리스(23.5%), 멕시코(21.7%), 스페인(21.7%) 등 5개 국가 정도이다.

OECD 평균은 2008년 13.0%에서 2010년 15.8%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2014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13.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2014년까지 OECD 평균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다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처럼 2014년 이후 니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정도이다.

여성의 니트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현상은 15세에서 29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뚜렷해지고 있다. OECD 평균으로 남성 니트 비중은 11.5%인데 비해 여성은 16.4%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대상인 5개 국가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여성의 니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20대 후반부터 여성의 니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만, 한국은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별 격차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 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  
(<http://data.oecd.org/>).

\* 주 : 한국의 2014년 이후 자료는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된 결과임. 일본은 OECD에 2016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2014년 결과임.

**그림 III -4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 남녀별 비교(2016)**

OECD에서는 「한 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에서 청년 니트 현황을 핵심 정책집단인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OECD, 2017). 이는 청년 니트의 속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한국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raw data)를 활용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OECD에서는 18-24세 청년들의 상태를 공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취업을 했는지, 니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한국은 재학 비중과 취업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실업 니트 비중도 낮은 대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니트는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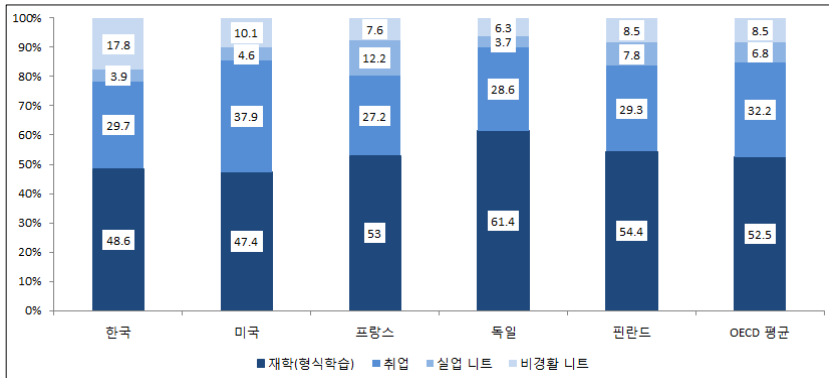
표 III-3 한국과 OECD 주요국 15-29세 청년 니트 현황 비교(1997~2016)

(단위 : %)

| 연도   | 한국   |      |      | 일본  |      |      | 미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핀란드  |      |      | OECD 평균 |      |      |
|------|------|------|------|-----|------|------|------|------|------|------|------|------|------|------|------|------|------|------|---------|------|------|
|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 1997 | -    | -    | -    | -   | -    | -    | 8.4  | 16.7 | 12.6 | 13.9 | 21.6 | 17.7 | 10.8 | 18.1 | 14.3 | -    | -    | -    | 10.8    | 22.4 | 16.7 |
| 1998 | -    | -    | -    | -   | -    | -    | 8.3  | 16.2 | 12.2 | 13.3 | 20.7 | 17.0 | -    | -    | -    | -    | -    | -    | 11.0    | 22.2 | 16.6 |
| 1999 | -    | -    | -    | -   | -    | -    | 8.2  | 16.9 | 12.6 | 13.6 | 20.7 | 17.1 | 10.1 | 16.5 | 13.2 | -    | -    | -    | 10.9    | 21.1 | 15.9 |
| 2000 | -    | -    | -    | -   | -    | -    | 8.7  | 15.8 | 12.2 | 11.5 | 18.5 | 15.0 | 10.1 | 16.7 | 13.3 | -    | -    | -    | 10.9    | 20.9 | 15.8 |
| 2001 | -    | -    | -    | -   | -    | -    | 9.7  | 17.0 | 13.3 | 10.6 | 18.4 | 14.5 | 10.2 | 16.1 | 13.1 | -    | -    | -    | 10.5    | 19.9 | 15.2 |
| 2002 | -    | -    | -    | -   | -    | -    | 9.8  | 17.3 | 13.6 | 11.9 | 17.6 | 14.7 | 10.0 | 15.3 | 12.6 | -    | -    | -    | 11.7    | 20.2 | 15.9 |
| 2003 | -    | -    | -    | -   | -    | -    | 10.9 | 17.8 | 14.3 | 11.7 | 16.5 | 14.1 | 10.8 | 15.0 | 12.9 | 10.7 | 12.6 | 11.6 | 11.9    | 19.0 | 15.4 |
| 2004 | -    | -    | -    | -   | -    | -    | 10.2 | 17.7 | 13.9 | 12.2 | 17.0 | 14.6 | 11.6 | 15.3 | 13.5 | 10.8 | 13.9 | 12.4 | 11.6    | 18.8 | 15.2 |
| 2005 | -    | -    | -    | 8.4 | 16.6 | 12.4 | 9.4  | 17.0 | 13.1 | 12.4 | 16.6 | 14.5 | 12.4 | 17.1 | 14.7 | 9.3  | 12.5 | 10.9 | 11.2    | 18.5 | 14.9 |
| 2006 | -    | -    | -    | 7.9 | 16.3 | 12.0 | 9.5  | 16.4 | 12.9 | 12.7 | 17.6 | 15.2 | 11.5 | 15.8 | 13.6 | 9.1  | 11.8 | 10.4 | 10.8    | 17.7 | 14.3 |
| 2007 | -    | -    | -    | 7.6 | 16.0 | 11.7 | 9.7  | 16.7 | 13.2 | 12.2 | 16.8 | 14.5 | 10.3 | 14.9 | 12.6 | 8.2  | 12.2 | 10.1 | 10.4    | 17.5 | 13.9 |
| 2008 | 16.7 | 20.3 | 18.5 | 7.5 | 15.3 | 11.3 | 12.3 | 17.1 | 14.7 | 11.6 | 16.4 | 14.0 | 9.1  | 14.3 | 11.6 | 8.1  | 11.7 | 9.9  | 9.5     | 16.5 | 13.0 |
| 2009 | 17.3 | 20.7 | 19.0 | 8.9 | 15.6 | 12.2 | 14.8 | 19.0 | 16.9 | 13.9 | 17.4 | 15.6 | 9.7  | 13.6 | 11.6 | 11.3 | 12.6 | 12.0 | 13.1    | 18.2 | 15.6 |
| 2010 | 17.7 | 20.8 | 19.2 | 8.8 | 15.3 | 12.0 | 14.3 | 18.0 | 16.1 | 15.2 | 18.0 | 16.6 | 10.2 | 13.8 | 12.0 | 12.4 | 12.9 | 12.6 | 13.7    | 17.8 | 15.8 |
| 2011 | 17.4 | 20.2 | 18.8 | 8.6 | 14.9 | 11.7 | 13.5 | 18.3 | 15.9 | 14.2 | 18.6 | 16.4 | 9.4  | 12.7 | 11.0 | 10.8 | 12.8 | 11.8 | 13.2    | 18.2 | 15.7 |
| 2012 | 17.4 | 19.5 | 18.5 | 8.3 | 14.9 | 11.5 | 12.8 | 17.6 | 15.2 | 15.0 | 18.1 | 16.6 | 8.0  | 11.9 | 9.9  | 11.4 | 12.5 | 11.9 | 12.8    | 17.0 | 14.9 |
| 2013 | 17.0 | 19.1 | 18.0 | 8.4 | 13.4 | 10.8 | 14.0 | 18.1 | 16.0 | 15.3 | 17.4 | 16.3 | 7.9  | 11.6 | 9.7  | 12.4 | 12.3 | 12.3 | 13.2    | 17.9 | 15.5 |
| 2014 | 17.4 | 18.2 | 17.8 | 7.3 | 12.5 | 9.8  | 12.5 | 17.6 | 15.0 | 15.1 | 17.4 | 16.3 | 7.4  | 11.0 | 9.2  | 12.8 | 13.1 | 13.0 | 12.9    | 17.4 | 15.2 |
| 2015 | 18.3 | 19.0 | 18.6 | -   | -    | -    | 12.0 | 16.8 | 14.4 | 16.3 | 18.1 | 17.2 | 6.9  | 10.4 | 8.6  | 13.6 | 15.0 | 14.3 | 12.2    | 17.2 | 14.6 |
| 2016 | 18.6 | 19.3 | 18.9 | -   | -    | -    | 11.9 | 16.4 | 14.1 | 16.4 | 18.0 | 17.2 | 7.8  | 11.6 | 9.6  | 13.2 | 13.2 | 13.2 | 11.5    | 16.4 | 13.9 |

\* 출처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indicator).  
doi: 10.1787/ 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http://data.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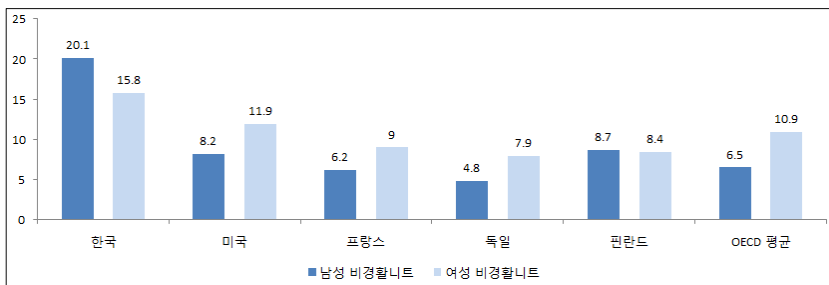
\* 주 : 한국 자료 중에서 2015년부터 2016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 추정된 결과로 굵은 글씨로 표기함.



\* 출처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한국은 김기현, 이윤주 외 (2017).

그림 III-5 한국과 유럽연합의 18-24세 청년 재학, 취업 니트 비율 비교(2016)

고학력화 사회인 한국의 재학 비중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중등후교육 형태로 공식교육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결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청년 고용대책으로 청년 실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중요해 보인다.



\* 출처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한국은 김기현, 이윤주 외 (2017).

그림 III-6 한국과 유럽연합의 18-24세 청년 성별 비경활 비율 비교(2016)

표 III-4 OECD 국가별 18-24세 청년들의 재학, 취업, 니트 상황(2016)

(단위 : %)

| 국가        | 재학(공식교육)    | 취업          | 실업 니트      | 비경험 니트      |
|-----------|-------------|-------------|------------|-------------|
| 이스라엘      | 30.9        | 51.7        | 4.0        | 13.4        |
| 콜롬비아      | 31.6        | 43.7        | 9.6        | 15.0        |
| 멕시코       | 36.1        | 40.7        | 3.8        | 19.4        |
| 터키        | 39.5        | 27.5        | 7.0        | 26.0        |
| 영국        | 42.8        | 42.7        | 6.0        | 8.5         |
| 폴란드       | 44.0        | 38.0        | 8.1        | 9.9         |
| 러시아       | 44.1        | 39.9        | 6.9        | 9.1         |
| 코스타리카     | 44.1        | 31.2        | 9.4        | 15.3        |
| 뉴질랜드      | 45.0        | 42.4        | 5.3        | 7.2         |
| 미국        | 47.4        | 37.9        | 4.6        | 10.1        |
| 캐나다       | 48.0        | 38.2        | 6.1        | 7.7         |
| 오스트리아     | 48.2        | 39.8        | 6.3        | 5.7         |
| <b>한국</b> | <b>48.6</b> | <b>29.7</b> | <b>3.9</b> | <b>17.8</b> |
| 라트비아      | 48.9        | 35.2        | 7.2        | 8.8         |
| 노르웨이      | 49.4        | 40.9        | 3.2        | 6.5         |
| 헝가리       | 50.2        | 34.3        | 5.8        | 9.7         |
| 칠레        | 50.3        | 28.6        | 6.0        | 15.1        |
| 아이슬란드     | 50.7        | 44.1        | 1.9        | 3.4         |
| OECD      | 52.5        | 32.2        | 6.8        | 8.5         |
| 호주        | 52.5        | 36.6        | 4.5        | 6.4         |
| 이탈리아      | 52.6        | 19.3        | 13.6       | 14.4        |
| 프랑스       | 53.0        | 27.2        | 12.2       | 7.6         |
| 스웨덴       | 53.1        | 36.9        | 5.0        | 5.0         |
| 아일랜드      | 53.4        | 28.4        | 9.9        | 8.3         |
| 포르투갈      | 53.6        | 28.2        | 12.0       | 6.2         |
| 에스토니아     | 53.8        | 34.3        | 4.9        | 7.0         |
| 핀란드       | 54.4        | 29.3        | 7.8        | 8.5         |
| 슬로바키아     | 54.9        | 29.8        | 9.7        | 5.6         |
| 스위스       | 55.0        | 35.6        | 4.7        | 4.7         |
| 스페인       | 58.4        | 18.4        | 15.3       | 7.9         |
| 벨기에       | 59.8        | 27.8        | 7.0        | 5.3         |
| 리투아니아     | 60.7        | 27.2        | 5.8        | 6.3         |
| 독일        | 61.4        | 28.6        | 3.7        | 6.3         |
| 그리스       | 62.3        | 14.2        | 15.4       | 8.2         |
| 네덜란드      | 64.6        | 27.6        | 2.7        | 5.1         |
| 룩셈부르크     | 66.7        | 24.5        | 5.0        | 3.8         |
| 덴마크       | 66.8        | 24.8        | 2.7        | 5.7         |
| 슬로베니아     | 71.5        | 17.9        | 6.2        | 4.5         |

\* 출처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 주 : 재학은 우리나라에 없는 중등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포함한 결과임.

표 III-5 OECD 국가별 18-24세 청년들의 실업 및 비경활 니트 성별 비교(20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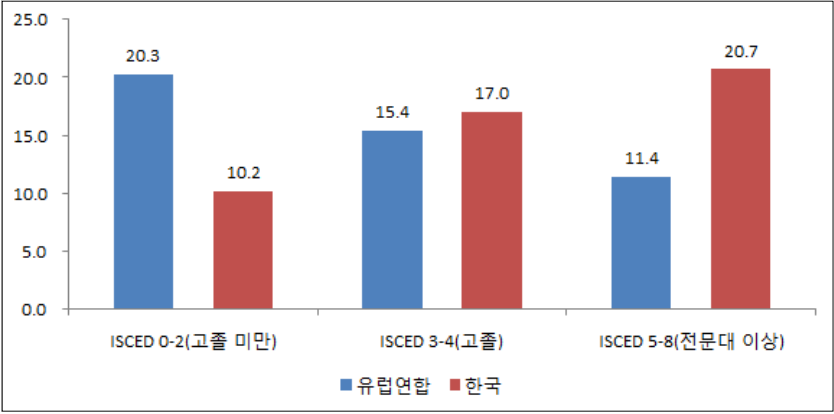
| 국가        | 남자          |            | 여자          |            |
|-----------|-------------|------------|-------------|------------|
|           | 비경활         | 실업         | 비경활         | 실업         |
| 터키        | 11.6        | 8.1        | 40.5        | 5.9        |
| 멕시코       | 4.9         | 4.6        | 33.8        | 3.0        |
| 콜롬비아      | 5.6         | 8.7        | 23.8        | 10.5       |
| 코스타리카     | 7.7         | 9.8        | 24.5        | 8.8        |
| <b>한국</b> | <b>20.1</b> | <b>3.6</b> | <b>15.8</b> | <b>4.1</b> |
| 이탈리아      | 13.6        | 15.3       | 15.3        | 11.8       |
| 칠레        | 9.5         | 6.6        | 20.6        | 5.4        |
| 그리스       | 7.5         | 15.5       | 8.8         | 15.2       |
| 스페인       | 7.1         | 16.7       | 8.8         | 14.0       |
| 폴란드       | 7.0         | 9.5        | 13.0        | 6.6        |
| 이스라엘      | 11.6        | 4.2        | 15.3        | 3.7        |
| 프랑스       | 6.2         | 14.7       | 9.0         | 9.7        |
| 포르투갈      | 6.6         | 12.0       | 5.7         | 12.1       |
| 헝가리       | 6.3         | 7.0        | 13.3        | 4.5        |
| 아일랜드      | 6.7         | 12.4       | 10.2        | 7.1        |
| 슬로바키아     | 2.7         | 11.2       | 8.7         | 8.1        |
| OECD      | 6.5         | 8.0        | 10.9        | 5.7        |
| 영국        | 5.8         | 6.9        | 11.3        | 5.1        |
| 미국        | 8.2         | 5.6        | 11.9        | 3.6        |
| 라트비아      | 8.0         | 8.5        | 9.6         | 5.8        |
| 뉴질랜드      | 4.1         | 5.9        | 10.6        | 4.8        |
| 에스토니아     | 2.9         | 6.3        | 11.4        | 3.5        |
| 핀란드       | 8.7         | 10.1       | 8.4         | 5.6        |
| 캐나다       | 7.4         | 8.0        | 8.0         | 4.1        |
| 벨기에       | 4.8         | 8.2        | 5.9         | 5.9        |
| 호주        | 4.8         | 5.3        | 8.0         | 3.7        |
| 오스트리아     | 5.4         | 7.1        | 6.1         | 5.5        |
| 리투아니아     | 6.3         | 6.9        | 6.4         | 4.6        |
| 독일        | 4.8         | 4.4        | 7.9         | 3.0        |
| 노르웨이      | 5.9         | 4.2        | 7.1         | 2.1        |
| 스웨덴       | 4.5         | 6.6        | 5.6         | 3.3        |
| 스위스       | 5.1         | 5.9        | 4.2         | 3.5        |
| 네덜란드      | 5.0         | 3.0        | 5.2         | 2.5        |
| 슬로베니아     | 4.7         | 9.1        | 4.3         | 3.2        |
| 덴마크       | 6.3         | 3.0        | 5.1         | 2.4        |
| 아이슬란드     | 2.5         | 2.5        | 4.3         | 1.2        |

\* 출처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실업자 니트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니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남성의 경우도 실업자 니트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니트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비경제활동상태의 니트는 비교대상 국가 중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OECD에서는 교육수준별로 청년 니트에 대한 자료를 통계사이트(<http://data.oecd.org/>)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발표한 Mascherini (2017)의 결과를 토대로 유럽연합과 한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교육수준별로 청년 니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고졸 이하가 15.2%, 전문대졸이 24.0%, 대학교졸이 29.8%, 대학원 이상이 12.8%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이윤주 외, 2017: 185). 이 결과는 고학력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니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 Mascherini (2017)가 발표한 2013년 유럽연합 28개 국가 평균과 한국 통계청(2016)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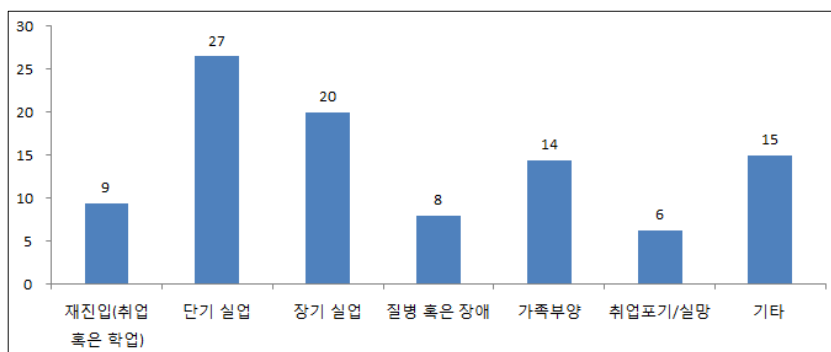
그림 Ⅲ-7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수준별 청년 니트 비율 비교(2016, %)



Mascherini(2017)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라서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교육수준별 니트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와 우리나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 이수자의 청년 니트 비중이 유럽연합은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로 저소득계층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니트 중에서도 대졸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청년 니트에는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년 니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논쟁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에서는 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유형별 분포를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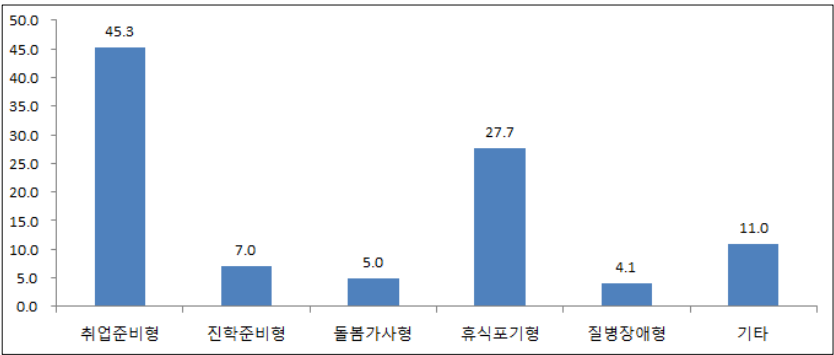
유럽연합의 Mascherini(2017)가 제시한 청년 니트 유형은 취업이나 학업을 곧 받을 예정으로 청년 니트에서 벗어날 재진입자, 실업자(12개월 이상의 장기, 미만의 단기), 가족 부양으로 취업이나 학업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장애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자리를 포기한 경우, 기타로 나누어진다.



\* 출처 : Mascherini (2017), 유럽연합 28개 국가 평균이며 2015년도 결과임.

그림 III-8 유럽연합 청년(15-24세) 니트(NEET) 유형별 비율(2015, %)

노동력 조사를 통해 2015년 유럽연합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기 실업자가 27%로 가장 높았고 장기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부양이 14%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재진입(9%), 질병 혹은 장애(8%), 취업포기/실망(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년 니트 실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 중 청년 니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다문화 가정의 청년 니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니트 비중에서 두드러진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출처 : 김기현 (2017), 한국노동패널조사 2016년 원자료.

그림 Ⅲ-9 한국 청년(15-29세) 니트(NEET) 유형별 비율(2016, %)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니트의 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기 힘들는데 김기현(2017)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6가지 청년 니트 유형별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유럽연합과 가장 큰 차이는 취업포기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다른 차이점은 돌봄가사형이나 질병장애형의 비중이 낮고 고학력화를 반영해 유럽연합에서 기타 중 하나로 분류되는 재수생 등 진학준비형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니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 대상 집단은 취업이나 학업 포기 혹은 휴식자 집단이다. 동시에 통계 자료로 포착되지 않는 기타 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집단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회 추구형(the opportunity-seekers)과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오락 혹은 문화,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발 니트형(the voluntary NEETs) 등이다(Eurofound, 2012: 24). 이는 청년들의 개인주의나 일-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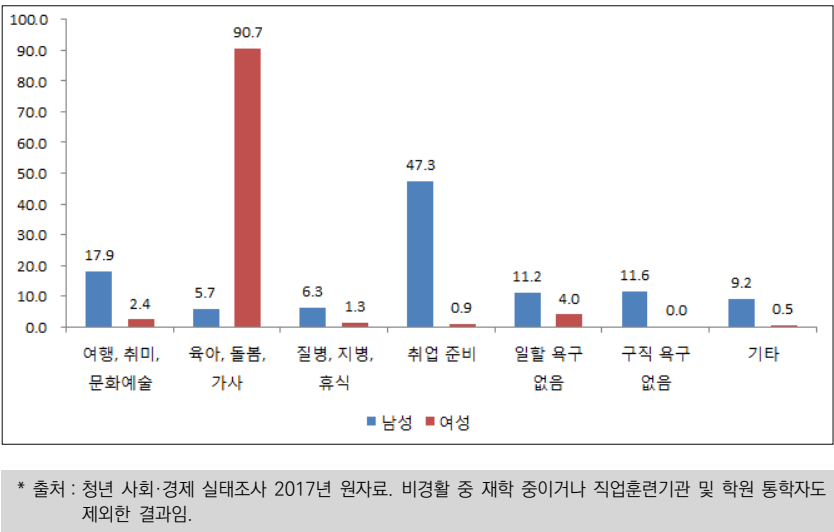


그림 III-10 한국 청년(15-29세) 성별 비경활 니트(NEET) 유형별 비율(201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는 이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유형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 준비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업자를 제외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욕 자체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집단은 주로 남성에서 발견된다. 여성 니트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아니라면 대다수는 육아, 돌봄이나 가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경향이나 일-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여행, 취미생활, 문화와 예술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7.9%로 여성(2.4%)보다 훨씬 높았다. 이 결과는 남성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2. 청년 니트의 생활실태와 특징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본 생활실태와 특징

#### (1) 청년 니트 관련 조사 내용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현재 청년 니트와 관련된 문항은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문항(문36~문38)과 청년 니트의 유형을 묻는 문항(문39~문40), 그리고 청년 니트로 보낸 기간을 묻는 문항(문41)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상태를 식별하는 문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을 응용해 만들었으며 문36은 OECD 기준으로 청년 니트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로 이 조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청년 니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문40은 청년 니트의 유형을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Eurofound, 2012). 그런데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학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OECD의 포괄적 기준으로 볼 때 청년 니트의 유형 구성은 문37을 통해 청년 실업 니트를, 문39을 통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청년 비경활 니트를, 이외에 청년 비경활 니트를 문40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구분에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은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실업자 집단(the conventionally unemployed)으로 문37로 식별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통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 중인 기회 추구 집단(the opportunity-seekers)으로 문39에 해당되는 경우와 문40 중 ④에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가사 및 돌봄, 육아나 장애 혹은 질병이 원인인 니트 집단(the unavailable)으로 문40 중 ②와 ③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능력부족이나 의욕저하, 사회부적응 등으로 니트가 된 집단(the disengaged)으로 문40 중 ⑤와 ⑥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표 III-6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식별 및 유형 문항

| 구분             | 문항                                                                                                                                                                                                                  |
|----------------|---------------------------------------------------------------------------------------------------------------------------------------------------------------------------------------------------------------------|
| 청년<br>니트<br>식별 | <p>문36)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p> <div> <p>*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p> <p>① 일을 하였음      ➡ 문44로 이동</p> <p>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4로 이동</p> <p>③ 일을 하지 않았음</p> </div> |
|                | <p>문37)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p> <p>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p> <p>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p> <p>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p>                                                      |
|                | <p>문38) 귀하는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p> <div> <p>☞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한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예      ➡ 주거영역 문55로 이동      ② 아니오</p> </div>                            |

| 구분                       | 문항                                                                                                                                                                                                                                                                             |
|--------------------------|--------------------------------------------------------------------------------------------------------------------------------------------------------------------------------------------------------------------------------------------------------------------------------|
| 청년<br>니트<br>유형<br>(2017) | <p>문39) 귀하는 지난 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p> <p><small>☞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small></p> <p>① 예 → <b>문41로 이동</b>      ② 아니오</p>                                                                                                |
|                          | <p>문40) 귀하는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p> <p>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p> <p>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p> <p>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p> <p>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p> <p>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p> <p>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p> <p>⑦ 기타(적을 것 : _____)</p> |

\* 출처 : 김기현, 이윤주 외(2017).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문화, 예술이나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니트가 된 집단(the voluntary NEETs)으로 문40 중 ①로 응답한 경우이다.

이 조사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41로 실업 니트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니트가 응답자에서 제외된 점이다. 문39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이동 문항을 기존의 문44가 아니라 문41로 변경하면 모든 유형의 응답자들의 청년 니트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I-7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기간 문항 수정(안)

| 구분                       | 문항                                                                                                                                                                                                                                                                                                                                                                                                                                                                         |       |              |                   |                              |                   |                               |                  |                                               |
|--------------------------|----------------------------------------------------------------------------------------------------------------------------------------------------------------------------------------------------------------------------------------------------------------------------------------------------------------------------------------------------------------------------------------------------------------------------------------------------------------------------|-------|--------------|-------------------|------------------------------|-------------------|-------------------------------|------------------|-----------------------------------------------|
| 청년<br>니트<br>기간<br>(2017) | <p>문38) 귀하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p> <table> <tr> <th>선택(V)</th><th>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th></tr> <tr> <td>1) 1개월 미만 (     )</td><td>(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td></tr> <tr> <td>2) 1개월 이상 (     )</td><td>(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td></tr> <tr> <td>3) 1년 이상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td></tr> </table>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 |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              |                   |                              |                   |                               |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                                                                                                                                                                                                                                                                                                                                                                                                                                               |       |              |                   |                              |                   |                               |                  |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                                                                                                                                                                                                                                                                                                                                                                                                                                              |       |              |                   |                              |                   |                               |                  |                                               |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                                                                                                                                                                                                                                                                                                                                                                                                                              |       |              |                   |                              |                   |                               |                  |                                               |
| 수정<br>문항(안)<br>(2018)    | <p>문39)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 문44)가 아닌 <b>문41)</b>로 이동</p> <p>문41) 귀하가 <b>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b>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br/>(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p> <table> <tr> <th>선택(V)</th><th>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th></tr> <tr> <td>1) 1개월 미만 (     )</td><td>(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td></tr> <tr> <td>2) 1개월 이상 (     )</td><td>(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td></tr> <tr> <td>3) 1년 이상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td></tr> </table>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 |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              |                   |                              |                   |                               |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                                                                                                                                                                                                                                                                                                                                                                                                                                               |       |              |                   |                              |                   |                               |                  |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                                                                                                                                                                                                                                                                                                                                                                                                                                              |       |              |                   |                              |                   |                               |                  |                                               |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br>(예 : 1년 6개월)                                                                                                                                                                                                                                                                                                                                                                                                                              |       |              |                   |                              |                   |                               |                  |                                               |

\* 출처 : 김기현, 이윤주 외(2017).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표 Ⅲ-8 청년 니트 대상 신설문항(안)

구분

문항

신설  
문항(안)  
(2018)

문42) 다음 항목들 중에서 귀하가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구분                                      | 응답        |
|-----------------------------------------|-----------|
| 1) 업무 경험의 부족                            | ① 예 ② 아니오 |
| 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 ① 예 ② 아니오 |
| 3) 자신감의 결여                              | ① 예 ② 아니오 |
| 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 ① 예 ② 아니오 |
| 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 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 ① 예 ② 아니오 |
| 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 ① 예 ② 아니오 |
| 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 ① 예 ② 아니오 |
| 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 ① 예 ② 아니오 |
| 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 ① 예 ② 아니오 |
| 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오 |
| 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 ① 예 ② 아니오 |
| 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 ① 예 ② 아니오 |

문43)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① 심리, 정신 건강 문제

② 신체 건강 문제

③ 가족 관계

④ 친구나 연인 관계

⑤ 타인과의 관계

⑥ 학업이나 진학문제

⑦ 취업 문제

⑧ 경제적인 어려움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⑩ 기타(적을 것 : \_\_\_\_\_)

신설 문항은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 니트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Franzosi, 2015)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사회경제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이루어진 니트의 상태에 대한 청년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사연구(社会経済生産性本部, 2007), EU(2015)의 청년보장제에 대한 각 국가별 청년니트센서스



보고서(Census on Youths NEET: Report on Finding) 중 몰타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조사표 등을 참고해 이루어졌다.

신설 문항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니트 상태에 관해 당사자에게만 질문하면 되는 문항이며, 두 번째는 니트가 아닌 청년이나 취업자처럼 다른 집단과 비교가 필요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 문항이다.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하여 문42는 이탈리아의 청년 니트 사회조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왜 청년 니트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지난주 주된 활동을 물어 청년 니트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항이다. 현재 주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취업하기를 원하는데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 가사부담 때문인지,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지역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등을 파악한다면 유형별 대응이나 정책적인 대상 설정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문43은 이탈리아의 청년 니트 사회조사에서 니트 상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보다는 정책 대상인 청년 니트들의 욕구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답변 문항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계 문제, 청년기의 두 가지 핵심과업(학업, 취업)에 대한 문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구성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 니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체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 일반 청년과의 비교가 필요한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니트 상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이전에 부정적인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항은 일본의 청년 니트 조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은둔형 외톨이,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 등을 묻고 있다.

표 III-9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신설문항(안)

| 구분                  | 문항                                                                                                                                                                                                                                                                                                                                                                                                                                                                                                                                                                                    |    |    |                     |              |                    |              |
|---------------------|---------------------------------------------------------------------------------------------------------------------------------------------------------------------------------------------------------------------------------------------------------------------------------------------------------------------------------------------------------------------------------------------------------------------------------------------------------------------------------------------------------------------------------------------------------------------------------------|----|----|---------------------|--------------|--------------------|--------------|
| 삶에서 부정적 경험 문항       | <p>문6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응답</th></tr> </thead> <tbody> <tr> <td>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 <td>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body> </table>                                                                                                                                                                                                                                                                                                                          | 구분 | 응답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② 아니오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② 아니오 |
| 구분                  | 응답                                                                                                                                                                                                                                                                                                                                                                                                                                                                                                                                                                                    |    |    |                     |              |                    |              |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 취업 경험 문항            | <p>문51) 귀하는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br/>           ① 예                  ② 아니오 ➔ 주거영역 문55로 이동</p> <p>문51)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br/>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br/>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br/>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br/>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주거영역 문55로 이동</p> <p>문52) 귀하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br/>           ① 절망감                                  ② 해방감<br/>           ③ 두려움                                  ④ 분노<br/>           ⑤ 우울감                                  ⑥ 실망감<br/>           ⑦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br/>           ⑧ 기타(적을 것 : _____)</p> |    |    |                     |              |                    |              |
| 가치관 문항              | <p>문) 귀하의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요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안정적인 직업, 미래에 대한 안정성<br/>             ③ 정직함, 공정성<br/>             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br/>             ⑦ 많은 여행과 세계에 대한 경험<br/>             ⑧ 기타 (                      )           </div> <div>             ② 자녀<br/>             ④ 생각이나 표현에 대한 자유<br/>             ⑥ 결혼           </div> </div>                                                                                                                                         |    |    |                     |              |                    |              |

현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전에 취업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문항 역시 일본의 청년 니트 조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이전의 취업 경험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경험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청년 니트 사회조사에서는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청년 니트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며 일반 청년들과의 비교를 위해 추가 문항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조사 결과<sup>7)</sup>

이 절에서는 올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의 비중만을 제시하였다. 실제 응답 수는 15-39세 3,133명 중에서 니트에 해당하는 경우는 326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인 15-29세로 니트인 경우는 123명으로 나타났으며 30-39세는 203명이었다. 청년 니트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제시한 결과는 대표성을 갖는 추정치라기보다는 응답 대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5세에서 29세 청년 니트의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준비가 67.6%로 가장 높았고 육아·돌봄/가사가 12.9%,여가/문화/예술이 8.6%, 구직포기 8.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취업준비 비중이 높았고 여성은 육아·돌봄·가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취업준비 비중은 수도권(72.2%)이 비수도권(63.0%)에 비해 높았으며 여가·문화·예술 비율 비중은 비수도권(13.3%)이 수도권(4.0%)보다 높았다. 구직포기 비중은 수도권(9.6%)이 비수도권(6.6%)보다 높았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연령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39세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 15-29세 청년과 30-39세 청년 니트의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20대 이하와 30대의 청년 니트 유형이

---

7) 이 절의 최종보고 단계 초고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와 한국노동연구원의 6차 KLI청년고용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d, 2018e).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대 이하는 취업준비가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30대는 육아·돌봄·가사가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30대에 결혼과 출산 등으로 주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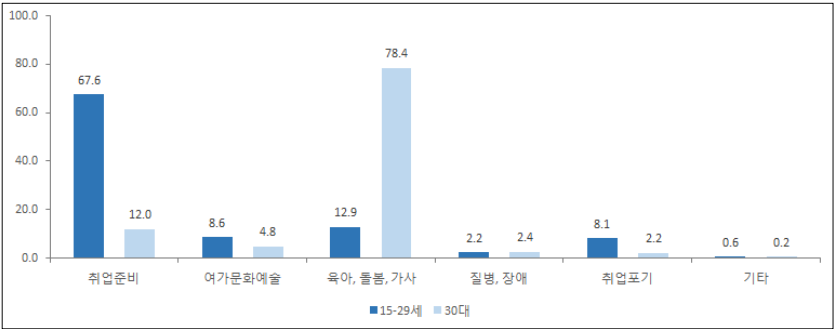
표 Ⅲ-10 청년 니트(15-29세)의 유형

(단위 : %)

| 구분    |          | 취업준비 | 여가·문화·예술 | 육아·돌봄·가사 | 질병·장애 | 구직포기 | 기타  |
|-------|----------|------|----------|----------|-------|------|-----|
| 성별    | 남성       | 81.7 | 7.4      | 0.7      | 2.3   | 6.7  | 1.2 |
|       | 여성       | 54.7 | 9.6      | 24.0     | 2.2   | 9.4  | 0.0 |
| 지역    | 수도권      | 72.2 | 4.0      | 13.2     | 1.1   | 9.6  | 0.0 |
|       | 비수도권     | 63.0 | 13.3     | 12.5     | 3.4   | 6.6  | 1.2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43.3 | 4.8      | 32.6     | 4.8   | 12.2 | 2.3 |
|       | 대학 재학 이상 | 75.7 | 9.8      | 6.3      | 1.4   | 6.8  | 0.0 |
| 주거 형태 | 동거       | 79.2 | 7.1      | 0.0      | 2.3   | 10.7 | 0.7 |
|       | 비동거/독립   | 30.7 | 13.2     | 53.9     | 2.2   | 0.0  | 0.0 |
| 전체    |          | 67.6 | 8.6      | 12.9     | 2.2   | 8.1  | 0.6 |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1 연령별(15-29세, 30-39세) 청년 니트 유형 비교(%)

이어서 청년(15-29세) 니트의 미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7.3%였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57.9%, 1년 이상이 34.8%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장기실업자로 보는데 청년 니트의 경우 장기 니트가 34.8%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년 이상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가 47.9%로 남성(18.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4%)보다는 비수도권(39.0%)에서 1년 이상 장기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미만의 절반 정도가 1년 이상 장기 니트였으며 대학 재학 이상은 28.5%가 장기 니트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비동거로 독립해 있는 청년의 장기 니트 비중이 77.9%로 매우 높았다.

표 Ⅲ-11 청년 니트(15-29세)의 니트 상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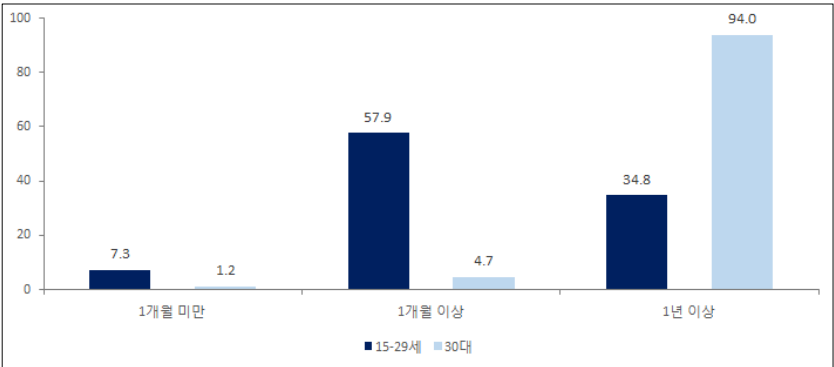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br>~ 1년 미만 | 1년 이상 |
|----------|----------|--------|-------------------|-------|
| 성별       | 남성       | 7.5    | 74.3              | 18.2  |
|          | 여성       | 7.2    | 45.0              | 47.9  |
| 지역       | 수도권      | 10.1   | 59.4              | 30.4  |
|          | 비수도권     | 4.6    | 56.4              | 39.0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2.3    | 47.8              | 49.9  |
|          | 대학 재학 이상 | 9.4    | 62.1              | 28.5  |
| 주거<br>형태 | 동거       | 7.4    | 71.8              | 20.7  |
|          | 비동거/독립   | 6.9    | 15.2              | 77.9  |
| 전체       |          | 7.3    | 57.9              | 34.8  |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0대 이하와 30대의 청년 니트의 니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57.9%로 가장 많았으나 30대는 1년 이상이 94.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30대 여성 중 주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2 연령별(15-29세, 30-39세) 청년 니트 상태 기간 비교(%)

이어서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문은 “업무 경험이나 기술자격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금전적인 이유”, “취업준비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신체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 문제”, “편견이나 차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족/친지의 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니트의 유형별로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청년 니트 유형별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니트(48.1%)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니트(43.2%) 중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기술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자신감 결여는 육아, 돌봄, 가사를 주로 하고 있는 니트(48.2%)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니트(48.1%) 중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금전적인

이유로 니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취업을 준비 중인 니트(27.3%)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니트(24.7%)의 응답률이 높았다. 취업준비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체적 어려움, 정신 건강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니트(70.2%, 48.1%, 24.7%)의 응답률이 높았다. 편견이나 차별은 취업을 포기한 니트(41.5%)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족 및 친지의 반대는 여가, 문화, 예술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니트(52.2%)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Ⅲ-12 15-29세 청년 니트의 유형에 따른 현재 미취업 이유 비교

(단위 : %)

| 구분            |            | 취업준비 | 여가·문화·예술 | 육아·돌봄·가사 | 질병/장애 | 구직포기 | 기타  | 전체   |
|---------------|------------|------|----------|----------|-------|------|-----|------|
| 업무경험 부족       | 보통/그렇지 않다  | 56.8 | 87.4     | 83.8     | 51.9  | 75.7 | 0.0 | 65.4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43.2 | 12.6     | 16.2     | 48.1  | 24.3 | 100 | 34.6 |
| 기술자격 부족       | 보통/그렇지 않다  | 50.3 | 92.5     | 73.7     | 51.9  | 52.7 | 0.0 | 58.1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49.7 | 7.5      | 26.3     | 48.1  | 47.3 | 100 | 41.9 |
| 자신감 결여        | 보통/그렇지 않다  | 63.7 | 55.9     | 51.8     | 51.9  | 85.8 | 0.0 | 62.4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36.3 | 44.1     | 48.2     | 48.1  | 14.2 | 100 | 37.6 |
| 금전적 이유        | 보통/그렇지 않다  | 72.7 | 100      | 86.9     | 75.3  | 81.7 | 0.0 | 78.1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7.3 | 0.0      | 13.1     | 24.7  | 18.3 | 100 | 21.9 |
| 취업준비에 대한 불명확성 | 보통/그렇지 않다  | 79.5 | 76.3     | 86.7     | 29.8  | 100  | 100 | 81.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0.5 | 23.7     | 13.3     | 70.2  | 0.0  | 0.0 | 19.0 |
| 신체적 어려움       | 보통/그렇지 않다  | 85.0 | 100      | 97.2     | 51.9  | 100  | 100 | 89.1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5.0 | 0.0      | 2.8      | 48.1  | 0.0  | 0.0 | 10.9 |

| 구분          |            | 취업준비 | 여가·문화·예술 | 육아·돌봄·가사 | 질병/장애 | 구직포기 | 기타  | 전체   |
|-------------|------------|------|----------|----------|-------|------|-----|------|
| 정신건강 문제     | 보통/그렇지 않다  | 91.2 | 94.9     | 92.8     | 75.3  | 100  | 100 | 92.3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8.8  | 5.1      | 7.2      | 24.7  | 0.0  | 0.0 | 7.7  |
| 편견이나 차별     | 보통/그렇지 않다  | 92.2 | 100      | 76.2     | 76.6  | 58.5 | 0.0 | 86.2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7.8  | 0.0      | 23.8     | 23.4  | 41.5 | 100 | 13.8 |
| 가족/친지 반대    | 보통/그렇지 않다  | 88.3 | 47.8     | 81.9     | 75.3  | 100  | 100 | 84.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1.7 | 52.2     | 18.1     | 24.7  | 0.0  | 0.0 | 16.0 |
| 지역에 직장 부재   | 보통/그렇지 않다  | 79.2 | 42.7     | 51.7     | 75.3  | 100  | 0.0 | 73.4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0.8 | 57.3     | 42.9     | 24.7  | 0.0  | 100 | 26.6 |
| 자유와 시간적인 이유 | 보통/그렇지 않다  | 89.6 | 57.5     | 54.6     | 75.3  | 100  | 100 | 81.7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0.4 | 42.5     | 45.4     | 24.7  | 0.0  | 0.0 | 18.3 |
| 보육이나 육아     | 보통/그렇지 않다  | 84.3 | 64.6     | 5.8      | 100   | 100  | -   | 60.9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5.7 | 35.4     | 94.2     | 0.0   | 0.0  | -   | 39.1 |
| 자녀와의 시간 필요  | 보통/그렇지 않다  | 84.7 | 43.7     | 21.6     | 100   | 100  | -   | 62.8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5.3 | 56.3     | 78.4     | 0.0   | 0.0  | -   | 37.2 |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지역의 직장 부재 문제는 여가, 문화, 예술 활동을 주로 하는 니트(57.3%)와 육아, 돌봄, 가사를 주로 하는 니트(42.9%)의 응답률이 높았다. 자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육아, 돌봄, 가사를 주로 하는 니트(45.4%)와 여가, 문화, 예술 활동을 주로 하는 니트(42.5%)의 응답률이 높았다. 보육이나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육아, 돌봄, 가사를 주로 하는 니트(94.2%, 78.4%)에서 높게 나타났다.

30대 니트의 경우 현재 미취업 이유에 대해서 20대와 마찬가지로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니트(48.8%)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20대와는 달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니트(21.6%)에서는 높지 않았다.

표 III-13 30대 니트의 유형에 따른 현재 미취업 이유 비교

(단위: %)

| 구분            |            | 취업준비 | 여가·문화·예술 | 육아·돌봄·가사 | 질병/장애 | 구직포기 | 기타  | 전체   |
|---------------|------------|------|----------|----------|-------|------|-----|------|
| 업무경험 부족       | 보통/그렇지 않다  | 51.2 | 86.9     | 70.1     | 78.4  | 80.7 | 0.0 | 69.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48.8 | 13.1     | 29.9     | 21.6  | 19.3 | 100 | 31.0 |
| 기술자격 부족       | 보통/그렇지 않다  | 40.4 | 86.9     | 61.3     | 78.4  | 50.1 | 100 | 60.4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59.6 | 13.1     | 38.7     | 21.6  | 49.9 | 0.0 | 39.6 |
| 자신감 결여        | 보통/그렇지 않다  | 66.4 | 86.9     | 57.5     | 78.4  | 33.8 | 100 | 60.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33.6 | 13.1     | 42.5     | 21.6  | 66.2 | 0.0 | 40.0 |
| 금전적 이유        | 보통/그렇지 않다  | 76.4 | 86.9     | 72.0     | 85.6  | 67.7 | 0.0 | 73.3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3.6 | 13.1     | 28.0     | 14.4  | 32.3 | 100 | 26.7 |
| 취업준비에 대한 불명확성 | 보통/그렇지 않다  | 68.1 | 86.9     | 73.9     | 100   | 50.3 | 0.0 | 73.9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31.9 | 13.1     | 26.1     | 0.0   | 49.7 | 100 | 26.1 |
| 신체적 어려움       | 보통/그렇지 않다  | 88.1 | 92.2     | 87.1     | 85.6  | 100  | 100 | 87.7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1.9 | 7.8      | 12.9     | 14.4  | 0.0  | 0.0 | 12.3 |

| 구분          |            | 취업준비 | 여가·문화·예술 | 육아·돌봄·가사 | 질병/장애 | 구직포기 | 기타  | 전체   |
|-------------|------------|------|----------|----------|-------|------|-----|------|
| 정신건강 문제     | 보통/그렇지 않다  | 85.6 | 100      | 89.0     | 92.8  | 69.6 | 0.0 | 88.6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4.4 | 0.0      | 11.0     | 7.2   | 30.4 | 100 | 11.4 |
| 편견이나 차별     | 보통/그렇지 않다  | 75.0 | 93.3     | 86.8     | 100   | 61.8 | 100 | 85.6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5.0 | 6.7      | 13.2     | 0.0   | 38.2 | 0.0 | 14.4 |
| 가족/친지 반대    | 보통/그렇지 않다  | 82.5 | 86.9     | 67.2     | 85.6  | 100  | 0.0 | 71.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17.5 | 13.1     | 32.8     | 14.4  | 0.0  | 100 | 29.0 |
| 지역에 직장 부재   | 보통/그렇지 않다  | 78.3 | 100      | 78.4     | 79.8  | 53.1 | 0.0 | 78.8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1.7 | 0.0      | 21.6     | 20.2  | 46.9 | 100 | 21.2 |
| 자유와 시간적인 이유 | 보통/그렇지 않다  | 72.6 | 86.9     | 81.0     | 100   | 50.1 | 100 | 80.2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7.4 | 13.1     | 19.0     | 0.0   | 49.9 | 0.0 | 19.8 |
| 보육이나 육아     | 보통/그렇지 않다  | 64.2 | 85.7     | 31.6     | 92.6  | 60.9 | 0.0 | 37.8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35.8 | 14.3     | 68.4     | 7.4   | 39.1 | 100 | 62.2 |
| 자녀와의 시간 필요  | 보통/그렇지 않다  | 76.2 | 85.7     | 42.5     | 100   | 60.9 | 0.0 | 48.0 |
|             | 그렇다/매우 그렇다 | 23.8 | 14.3     | 57.5     | 0.0   | 39.1 | 100 | 52.0 |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기술자력의 경우 구직 포기 상태에 있는 니트(49.9%)의 응답률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니트(59.6%) 다음으로 높았다. 자신감 결여나 금전적 이유, 취업준비에 대한 불명확성 역시 취업 포기 상태에 있는 니트(66.2%, 32.3%, 49.7%)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직장 부재 문제와 자유와 시간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이유는 취업 포기 상태에 있는 니트(46.9%, 49.9%)의 응답률이 높았다. 보육이나 육아, 자녀와의 시간에 대한 응답은 20대와 마찬가지로 육아, 돌봄, 가사를 주로 하는 니트(68.4%, 57.5%)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서 미취업 상태에서 가장 주된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청년 니트에게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취업문제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21.7%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심리, 정신 건강 문제라는 응답이 7.7%로 뒤를 이었다.

표 III-14 15-29세 니트의 미취업 상태에서 고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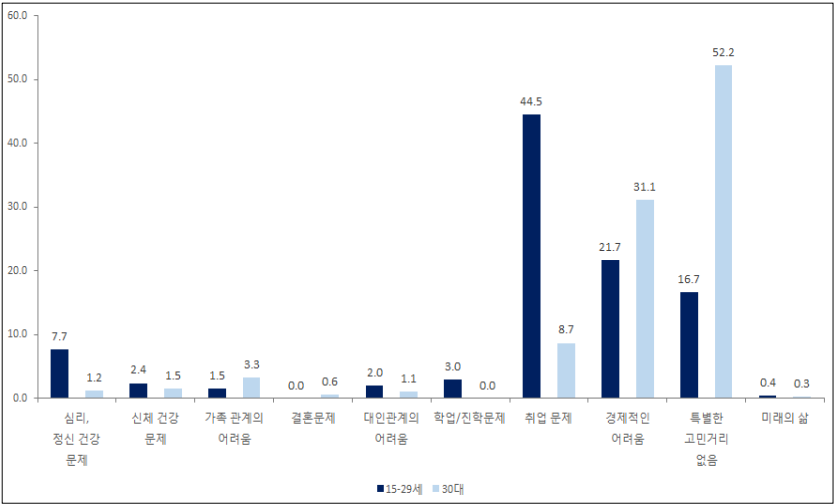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 심리, 정신 건강 문제 | 신체 건강 문제 | 가족 관계의 어려움 | 대인 관계의 어려움 | 학업/진학 문제 | 취업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자녀와 시간 부족 |
|-------|----------|--------------|----------|------------|------------|----------|-------|---------|-------------|-----------|
| 성별    | 남성       | 10.2         | 2.4      | 1.0        | 3.6        | 1.9      | 57.4  | 21.9    | 1.5         | 0.0       |
|       | 여성       | 5.7          | 2.5      | 1.9        | 0.8        | 3.9      | 34.4  | 21.5    | 28.6        | 0.7       |
| 지역    | 수도권      | 9.6          | 0.0      | 0.0        | 1.4        | 4.6      | 40.0  | 32.7    | 11.7        | 0.0       |
|       | 비수도권     | 5.9          | 4.7      | 2.9        | 2.7        | 1.5      | 48.8  | 11.4    | 21.4        | 0.8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7.5          | 4.8      | 0.0        | 4.7        | 10.2     | 22.2  | 35.0    | 15.7        | 0.0       |
|       | 대학 재학 이상 | 7.8          | 1.4      | 2.2        | 0.9        | 0.0      | 53.9  | 16.1    | 17.1        | 0.6       |
| 주거 형태 | 동거       | 10.2         | 1.8      | 0.9        | 2.7        | 4.0      | 54.5  | 15.9    | 10.1        | 0.0       |
|       | 비동거/독립   | 0.0          | 4.3      | 3.5        | 0.0        | 0.0      | 14.2  | 39.5    | 36.9        | 1.6       |
| 전체    |          | 7.7          | 2.4      | 1.5        | 2.0        | 3.0      | 44.5  | 21.7    | 16.7        | 0.4       |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문제(57.4%:34.4%)와 심리, 정신건강 문제(10.2%:5.7%)를 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남녀(21.9%:21.5%)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취업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응답(40.0%:48.8%)이 높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응답은 수도권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미만이 학업 및 진학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취업문제의 비중이, 부모와 비동거 상태에서 독립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3 연령별(15-29세, 30-39세) 미취업상태에서 고민거리 비교(%)

30대 니트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 니트들은 상대적으로 취업문제 고민 수준이 매우 높았고 심리, 정신 건강 문제와 학업 및 진학문제에 대한 고민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Ⅲ-15 청년(15-29세) 니트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

| 구분       |          | 분위기<br>좋은<br>회사 | 급여가<br>높은<br>회사 | 유명한<br>회사 | 안정적인<br>회사 | 퇴근이<br>빠른<br>회사 | 발전<br>가능성이<br>높은<br>회사 | 직무가<br>적성에<br>맞는<br>회사 | 복지<br>수준이<br>좋은<br>회사 |
|----------|----------|-----------------|-----------------|-----------|------------|-----------------|------------------------|------------------------|-----------------------|
| 성별       | 남성       | 5.7             | 19.7            | 1.9       | 30.3       | 2.2             | 14.9                   | 22.4                   | 2.9                   |
|          | 여성       | 3.9             | 15.8            | 3.6       | 42.4       | 2.8             | 9.9                    | 9.9                    | 11.8                  |
| 지역       | 수도권      | 2.0             | 16.6            | 5.4       | 43.5       | 1.3             | 13.2                   | 12.1                   | 5.8                   |
|          | 비수도권     | 7.6             | 18.7            | 0.0       | 29.5       | 3.7             | 11.4                   | 19.8                   | 9.3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3.0             | 37.4            | 0.0       | 37.4       | 0.0             | 2.5                    | 10.5                   | 9.1                   |
|          | 대학 재학 이상 | 5.3             | 11.1            | 3.7       | 36.3       | 3.4             | 15.6                   | 17.7                   | 7.0                   |
| 주거<br>형태 | 동거       | 4.8             | 17.5            | 3.6       | 41.2       | 0.0             | 9.2                    | 18.6                   | 5.2                   |
|          | 비동거/독립   | 4.6             | 18.0            | 0.0       | 22.1       | 10.6            | 22.3                   | 7.4                    | 15.0                  |
| 전체       |          | 4.7             | 17.6            | 2.8       | 36.6       | 2.5             | 12.3                   | 15.9                   | 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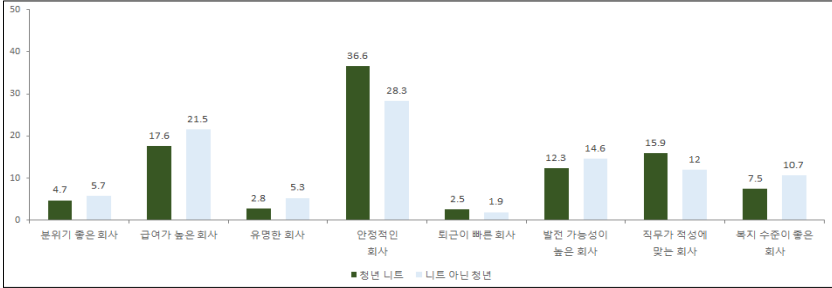
\* 출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15-29세 청년 니트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가 36.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급여가 높은 회사가 17.6%,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가 15.9%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니트가 급여가 높거나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면 여성 니트는 안정적인 회사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고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거나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로 독립생활을 하는 니트의 경우 발전가능성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모와 동거하는 니트는 안정적인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니트가 아닌 청년들과 청년 니트 간에 일자리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년 니트들이 안정적인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4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비교(%)

다음으로 청년 니트의 채무 여부를 보면, 20.9%의 청년 니트들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발생 이유로 학자금 마련이 6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거비(26.7%), 생활비(4.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채무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대학 재학 이상이 대학 재학 미만보다, 비동거 독립 가구가 부모 동거보다 채무가 많았다.

표 III-16 청년 니트의 채무여부 및 채무발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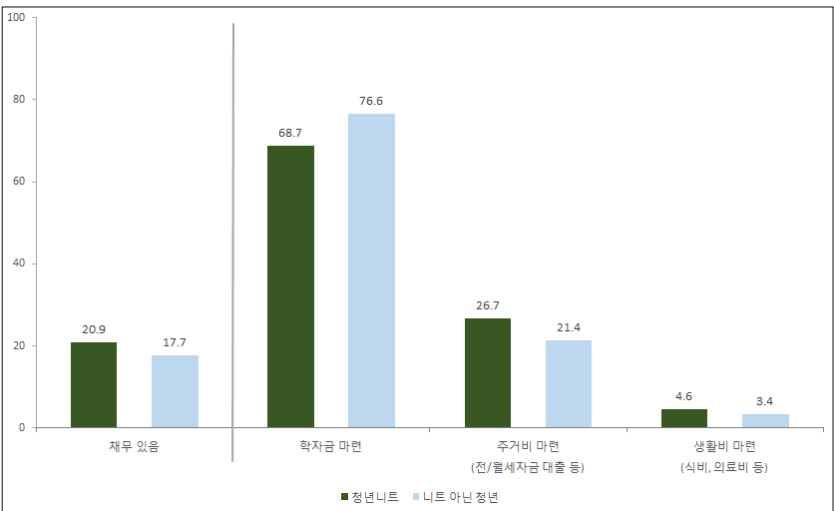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 채무여부 |      | 채무발생 이유 |                          |                          |
|----------|----------|------|------|---------|--------------------------|--------------------------|
|          |          | 있다   | 없다   | 학자금 마련  | 주거비 마련<br>(전/월세<br>대출 등) | 생활비 마련<br>(식비,<br>의료비 등) |
| 성별       | 남성       | 12.8 | 87.2 | 84.3    | 0.0                      | 15.7                     |
|          | 여성       | 28.3 | 71.7 | 62.1    | 37.9                     | 0.0                      |
| 지역       | 수도권      | 27.9 | 86.2 | 67.7    | 32.3                     | 0.0                      |
|          | 비수도권     | 13.8 | 72.1 | 70.6    | 15.2                     | 14.2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17.7 | 82.3 | 0.0     | 88.1                     | 11.9                     |
|          | 대학 재학 이상 | 22.0 | 78.0 | 87.0    | 10.4                     | 2.6                      |
| 주거<br>형태 | 동거       | 16.9 | 83.1 | 96.6    | 0.0                      | 3.4                      |
|          | 비동거/독립   | 33.7 | 66.3 | 24.1    | 69.4                     | 6.5                      |
| 전체       |          | 20.9 | 79.1 | 68.7    | 26.7                     | 4.6                      |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니트가 아닌 청년들과 청년 니트의 채무 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 청년 니트의 채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채무 발생이유에 대해 청년 니트는 주거비 부담이 니트가 아닌 청년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5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채무여부 및 채무발생 이유 비교(%)

다음으로 청년 니트에게 고용정책의 방향과 미취업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니트들은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개인과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동공급(19.4%)보다는 일자리와 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동수요(80.6%)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이,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이 노동수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도입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청년 니트들은 미취업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49.8%)이 반대하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의견이 많았고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대학 재학 미만 보다는 대학 재학 이상에서,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니트가 더 많이 찬성하였다.

니트가 아닌 청년들과 청년 니트 간의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해 보기위해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III-16 참고). 먼저 고용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수요가 중요하다는 입장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였고 청년 니트가 노동수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니트가 아닌 청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청년 니트(15-29세) 고용정책 방향 및 청년수당 지급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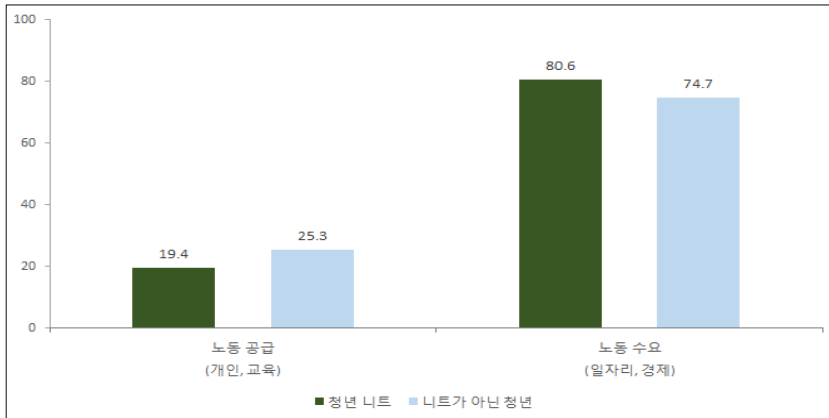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 고용정책 방향           |                    | 미취업 청년수당 지급 |      |        |
|----------|----------|-------------------|--------------------|-------------|------|--------|
|          |          | 노동 공급<br>(개인, 교육) | 노동 수요<br>(일자리, 경제)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르겠다 |
| 성별       | 남성       | 20.8              | 79.2               | 58.3        | 21.3 | 20.4   |
|          | 여성       | 18.1              | 81.9               | 41.9        | 45.6 | 12.5   |
| 지역       | 수도권      | 20.6              | 79.4               | 51.1        | 35.0 | 13.9   |
|          | 비수도권     | 18.1              | 81.9               | 48.4        | 32.9 | 18.7   |
| 교육       | 대학 재학 미만 | 31.3              | 68.7               | 26.3        | 53.6 | 20.0   |
|          | 대학 재학 이상 | 15.4              | 84.6               | 57.5        | 27.4 | 15.0   |
| 주거<br>형태 | 동거       | 19.1              | 80.9               | 50.7        | 31.2 | 18.1   |
|          | 비동거/독립   | 20.2              | 79.8               | 46.7        | 42.7 | 10.6   |
| 전체       |          | 19.4              | 80.6               | 49.8        | 34.0 | 16.3   |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 주) 본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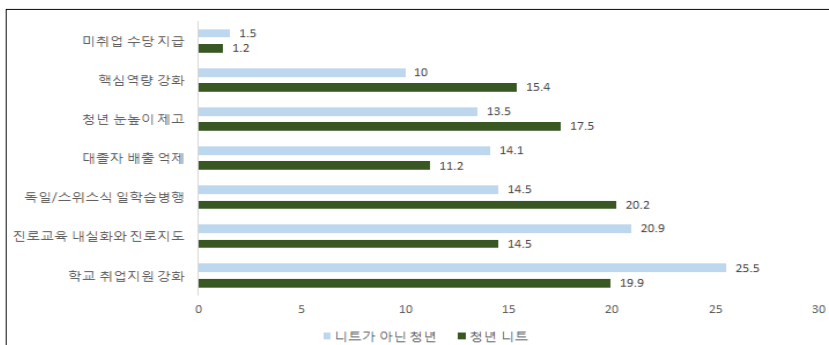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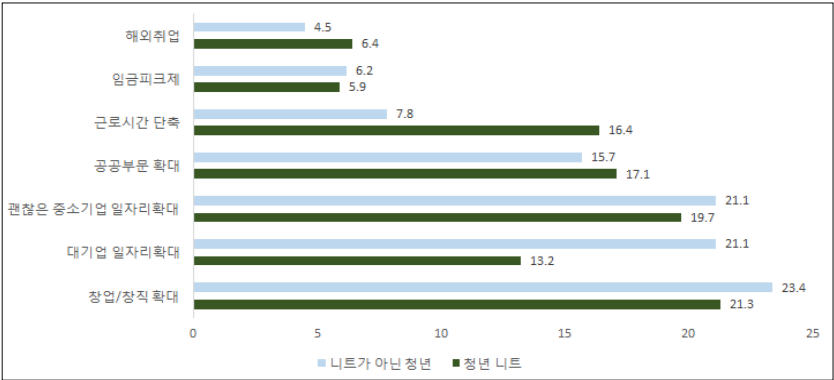
그림 III-16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고용정책 방향 의견(%)

세부적인 정책 과제별로 어떤 정책 방향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면, 청년 니트는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학습 병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서 니트가 아닌 청년들은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니트가 아닌 청년들이 높았고 청년 눈높이 제고나 핵심역량 강화는 청년 니트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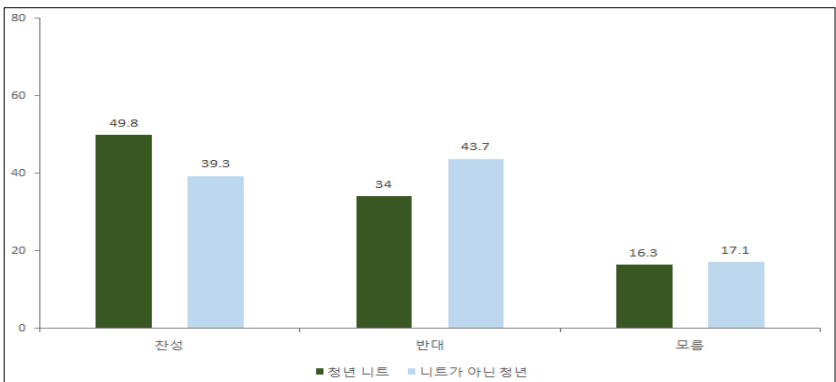
그림 III-17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공급정책 의견(%)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8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노동수요정책 의견(%)

노동수요 측면에서 청년 니트들은 창업/창직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니트가 아닌 청년들 역시 창업/창직 확대를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일자리 확대는 니트가 아닌 청년들의 응답비중이 21.1%인데 반해 청년 니트는 13.2%로 낮아 대조를 보여주었다. 청년 니트와 니트가 아닌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두 번째 노동수요정책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관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였다.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9 청년 니트와 일반 청년의 미취업청년 수당 지급 의견(%)

미취업 청년수당 지급 찬반의견에 대해서 니트가 아닌 청년들은 청년 니트보다 반대의견이 많았다. 청년 니트들은 찬성의견이 49.8%였고 반대의견이 34.0%였으나 니트가 아닌 청년들은 이와 다르게 반대가 43.7%로 높았고 찬성은 39.3%로 낮았다.

## 2) 청년 니트 심층면접조사를 통해본 생활실태와 특징<sup>8)</sup>

### (1) 심층면접조사 개요

청년 니트 대상 면접조사를 위하여 두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조사 설계와 질문지 초안을 마련하였다. 면접조사 방법에 있어 집단초점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일대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조사 방법을 연구대상과 상황에 따라 병용하였으나, 연구진은 가급적 후자를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형태의 일대일 심층면접조사 방법이 청년 니트라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조사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연구진과 피면접자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하고 피면접자의 내밀한 사적 내용들을 끌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② 집단초점면접(FGI) 조사가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단초점면접 시 그룹 내 특정인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역할을 하며 특정 방향으로 대화내용을 주도하거나 피면접자가 다른 참가자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청년 니트 유형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취업·진학준비형, 자발적선택형, 돌봄·가사·육아형, 구직회피·휴식형 등 총 네 가지 니트 유형별로 각각 4~6명의 청년들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

8) 이 절은 배상을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청년 니트라는 특성상 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일대일 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연구진이 피면접인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사한 관계로, 유형별 조사 대상자 섭외와 면접이 마무리되기까지 7월말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 과정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면접조사의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는 피면접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원의 연구실, 피면접자의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 카페 또는 회의실을 임차하여 제3자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피면접자에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설명한 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서와 피면접자의 기초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토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와 본 조사를 통해 제공하신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그림 III-20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피면접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청년 니트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두로 질의 응답하는 것보다는 피면접자 자신이 기초배경 질문지에 기재된 질문내용에



청년 니트의 유형별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본 심층면접조사의 대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니트의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② 청년 니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대질문에 각각 속하는 하위범주 관련 질문주제와 인터뷰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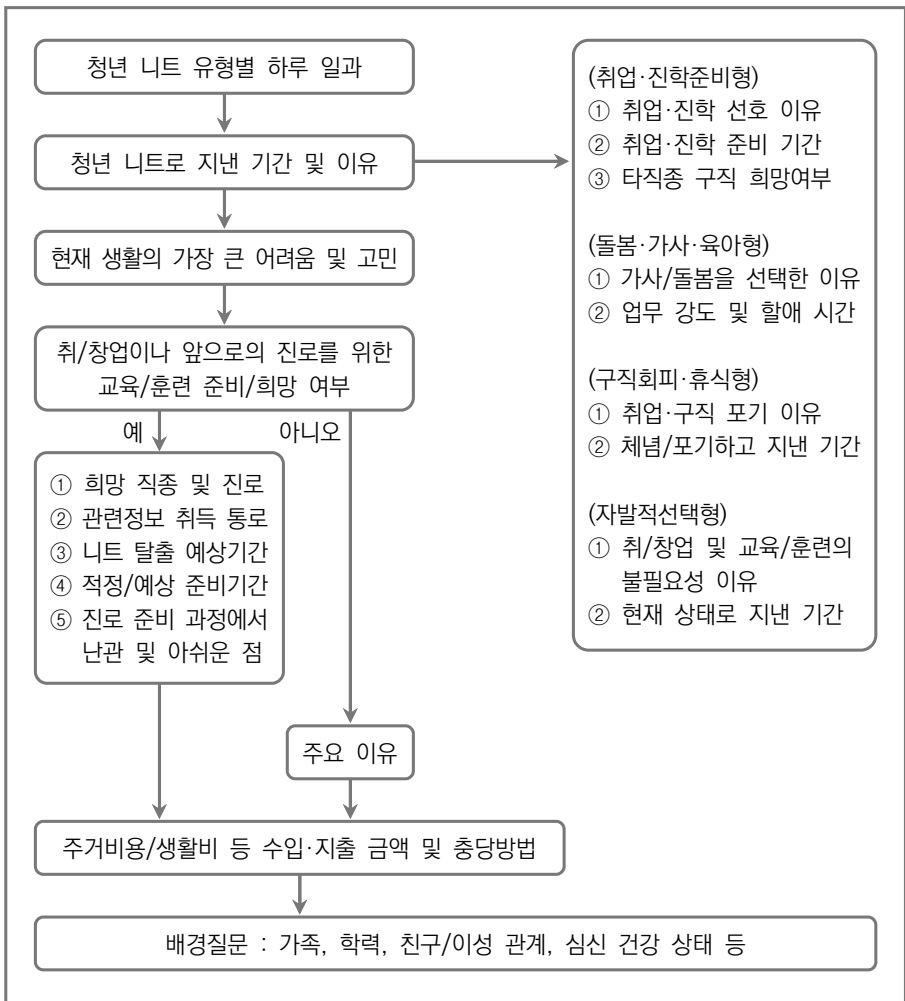


그림 Ⅲ-22 청년 니트 실태 질문 주제 및 인터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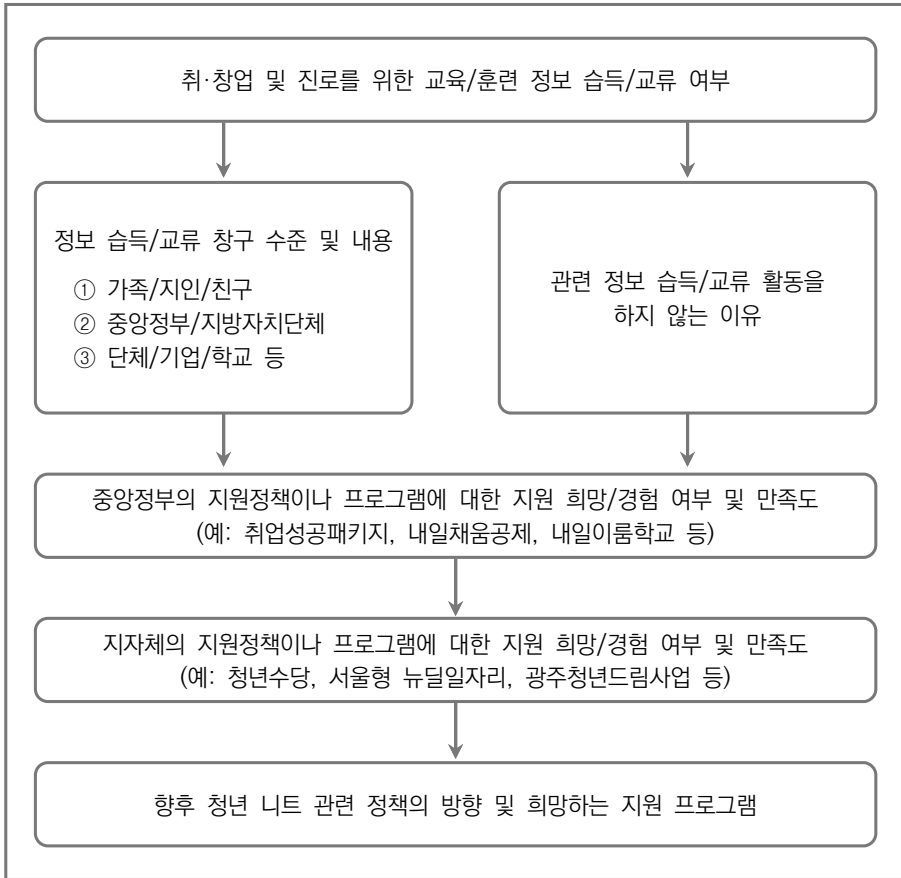


그림 Ⅲ-23 청년 니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질문주제 및 인터뷰

앞서 설명한 3,133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본 심층면접조사는, 양적연구의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치화된 데이터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청년 니트 현상의 복잡성과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청년 니트의 관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니트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 (2) 조사 결과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 니트는 총 19명으로 자발적 선택형(A유형), 구직회피·휴식형(B유형), 취업·진학준비형(C유형), 돌봄·가사·육아형(D유형)으로 나눠 각각 4~6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12차례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8건은 연구자와 피면접자의 일대일 면접조사로, 3건은 집단초점면접조사(FGI), 나머지 1건은 서면인터뷰로 진행하였다.

표 Ⅲ-18 청년 니트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니트 유형                   | 번호 | 이름  | 출생연도 | 성별 | 거주지  | 학력    |
|-------------------------|----|-----|------|----|------|-------|
| 자발적<br>선택형<br>(A 유형)    | 1  | 이** | 1984 | 남  | 비수도권 | 대학 졸업 |
|                         | 2  | 홍** | 1982 | 남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3  | 이** | 1992 | 남  | 수도권  | 대학 휴학 |
|                         | 4  | 에** | 1995 | 남  | 수도권  | 대학 중퇴 |
|                         | 5  | 이** | 1999 | 남  | 수도권  | 고교 졸업 |
| 구직<br>회피·휴식형<br>(B 유형)  | 6  | 김** | 1998 | 남  | 비수도권 | 고교 졸업 |
|                         | 7  | 이** | 1998 | 남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8  | 한** | 1999 | 남  | 수도권  | 중학 졸업 |
|                         | 9  | 곽** | 1997 | 남  | 수도권  | 고교 졸업 |
| 취업·진학<br>준비형<br>(C 유형)  | 10 | 이** | 1992 | 남  | 비수도권 | 대졸 유예 |
|                         | 11 | 손** | 1992 | 남  | 비수도권 | 대졸 유예 |
|                         | 12 | 장** | 1993 | 남  | 비수도권 | 대졸 유예 |
|                         | 13 | 김** | 1998 | 남  | 비수도권 | 고교 졸업 |
| 돌봄·가사·<br>육아형<br>(D 유형) | 14 | 정** | 1984 | 여  | 수도권  | 대학 졸업 |
|                         | 15 | 양** | 1980 | 여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16 | 허** | 1983 | 여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17 | 김** | 1982 | 여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18 | 신** | 1982 | 여  | 수도권  | 고교 졸업 |
|                         | 19 | 민** | 1988 | 여  | 수도권  | 대학 졸업 |



〈표 III-18〉은 청년 니트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6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3명, 비수도권 6명으로 이루어졌다. 피면접자들 중 최저연령은 만 19살이며 최고연령은 38살로 본 연구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전 연령대를 고루 포함하고 있다. 청년 니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발적 선택형(A유형)은 다섯 명, 구직 포기·회피형(B유형)과 취업·진학준비형(C유형)은 각각 네 명, 그리고 돌봄·가사·육아형(D유형)은 여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피면접자들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대학졸업 유예, 대학졸업 등 다양하다. 구직포기·회피형에 속하는 피면접인들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세 유형의 그룹들은 고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유예/휴학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피면접자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름은 삭제하고 성만 표기하였다. 보고서의 인터뷰 내용에는 신분노출 방지와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피면접자에게 부여한 번호로 발언자를 구분하였다.

## 가. 자발적 선택형

### A. 꿈을 좇는 사람들 vs. 일상에 지친 사람들

니트라는 명칭 하에 포함된 청년들은 단일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본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류된 청년 니트도 자발적 선택형을 포함해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며 유형에 따라 청년 니트의 특징에도 차이가 난다. 특정 유형으로 함께 분류됐더라도 이들 각각의 삶의 형태에 따라 니트 진입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자발적 선택형에 포함된 다섯 명의 피면접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1은 대기업에 입사하였으나 6년간의 일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대 조직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들어 스스로 니트가 된 사례이다. 2와 3은 어릴 적 꿈꾸던 연예인이 되기 위하여 고정적인 별이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2는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비보이 댄서로 활동하다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3은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학교 때부터 꿈꿔온 코미디언이 되려고 4년 전 과감히 휴학계를 제출하고 코미디 공채시험에 도전 중이다. 파키스탄 출신인 4는 5년 전 한국으로 이민 온 이후 어렸을 적부터 바라던 군인의 꿈을 접었다.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가끔씩 도와드리곤 한다. 마지막으로 5는 고등학교에서 식품과를 전공하고 전공을 살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했으나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후 주말에 홍대나 신촌에서 벼룩시장(flea market)이 열리는 날이면 손수 구운 쿠키를 내다 팔고 있다. 그의 꿈은 작은 디저트 공방을 차리는 것이다.

1. 그만둔 이유는 똑같은 일을 6년간 했더니 많이 지겹고 지치고 더 이상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저 스스로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 지겹기도 하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보니... 회사에 계속 있으면서 고위임원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전체 인원의 1%에 들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데 관심도 없고 일에 묻혀 살아야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살기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2. 어렸을 때부터 댄서가 꿈이었습니다. 비보이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비보이의 세계를 그린 춤 영화에 캐스팅되었어요. 영화는 쫓딱 망했지만 그 계기로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군대 다녀와서 연극 밑바닥부터 시작하다가 5년 전부터 작은 배역이지만 영화, 드라마에도 출연했어요. 비보이로 꼭 갈 생각이었다가 영화를 처음 접해보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3. 코미디언은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다가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돼 공부해서 대학입학하고 군대 다녀오고 난 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휴학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언이 꿈이어서....
4.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나 상황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파키스탄에 있을 때까지는 FBI 같은 국가정보원이나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꿈은 꿈이죠. 밤에 자면 어떤 꿈을 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5.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과정으로 일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소는) 실습과정 끝나면 바로 정규직으로 돼요. 3개월 실습과정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데 저는 2개월 실습과정만 하고 그만두었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었어요. 업무가 너무 많아 스스로 그만둔

친구도 있었고 잘린 친구도 있었고. 10명 면접 본다고 치면 10명 선발되어서 그 중에 많이 힘들어서 나가요. 절반만 남아 정규직이 되는 거 같아요. 막상 해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요. 혼자서 아침부터 빵을 100여개 해야 돼요. 실습 때도 직원들처럼 아침 7시 8시쯤 나와서 오후까지 끝나긴 하는데 저는 저녁까지 더 연습하려고 남아서 했었어요. 처음 정규직 되면 한 달 임금으로 12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는 임금문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과하게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컸던 것 같아요.

## B. 자발적선택형 청년 니트의 심리적 갈등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삶’ 또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대기업 사원, 수도권 4년제 대학생의 신분을 과감히 벗어던졌을 때, 저마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거쳤다. 우리 사회에서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주위의 반대와 편견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년 니트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귀결되는 사회적·경제적 결핍에 따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 그만둔다고 하니 만류하는 사람 반 지지하는 사람 반이라 고민이 더 컸어요. 와이프가 ‘좀 쉬라’고 이야기해줘 퇴사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3.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님은 조금 응원하는 편이시고 어머니는 걱정하는 편이에요. 그 세계가 힘들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으니까.
5. 주변에서 대학 나오는 게 제 꿈을 위해서나 사회생활에도 좋다고 권유도 하셨지만 어쨌든 공부하려고 가는 건데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대학에서 조리학과 같은데 전공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고등학교를 일반고 출신들이) 너무 못해서 내가 훨씬 대학생들보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진학)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1. 앞으로 뭐해먹고 살아야하나 하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만두신 분과도 얼마 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지쳐서 일단은 쉬고 싶은데 쉬면 불안해지고...
3. 이제 방송국 중 유일하게 공채개그맨을 뽑는 KBS도 선발인원을 계속 줄이는 추세예요. 11명 뽑는데 올해는 500명 지원했어요. 개그 바닥, 코미디 자체가 많이 죽고 예년보다 점점 지원자 수는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요즘 TV 개그프로를 보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니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동영상 클립을 보니까 점점 코미디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어린 동생들은 크리에이터로 관심을 더 갖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개그계 환경이 지금 같다면 지금 시작하는 후배에게 크리에이터나 다른 길을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지금 저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예 시작했다면 크리에이터로 시작했을 텐데 지금 이미 개그맨이 되기 위해 소비한 시간이 있으니... 같이 지원했던 OOO이랑 XXX이 이번에 KBS 개그맨이 되었어요. 저도 같이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같이 최종까지 갔었다가 저만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발표 날 합격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아깝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부터 부모님이 좀 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 C.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

자의든 타의든 청년 니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불러오거나 인생계획의 제2안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들도 여타 대한민국 청년들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꿈과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너무 많이 쉬면 늘어지니까 오래 쉬지는 않을 생각이예요. 앞으로 두세 달 내에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서너 달 쉬고 전 직장 조건보다 나은 직장을 찾지 못한다면) 1년이 넘게 그러면 현실을 고려해 다시 거기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뭐 하는 게 없으니 풀어지더라고요. 3개월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고 경제적인 마지노선은 1년 정도? 1년 넘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와 뭐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데로 맡는 역할을 한다거나 후학양성을 하면 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3.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맥시멈 4년. 여기도 보이지 않는 나이제한이 있어요. SBS나 MBC는 코미디 프로가 없어서 KBS만 사실상 남아있어요. 남자는 시험 1차 서류에 33살까지는 뽑아요. 이전에는 32까지였는데 33살까지 요즘은 맥시멈까지 뽑는 것 같아요. 여자는 29이나 30정도까지 제한이 사실상 있는 거죠.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4년 정도 보는 거죠.

#### D. 현실과의 타협과 소신의 공존

면접에 응한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현실과의 타협과 소신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청년들이 주변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쓴다거나 너무 안전한 선택만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현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1.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좌절하고 흔히 대기업에 들어오지 못해 심리적으로 좌절하는데 막상 들어오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깐 굳이 제한적인 사고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양한 직업군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후배들이 “대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냐”고 묻는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으나 학교가 너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즘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뭘 배웠는지 모를 만큼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학내 파벌도 심하고 해서 차라리 현장에서 부딪혀 배우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2. 올해 슬럼프가 와서 그만 두냐 말아야하나 하는 상태가 왔어요. 회사와 계약을 못하게 되고 캐스팅이 불발되고, 학교 대학 강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고졸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계속 어그러지니까 학교 오퍼는 오는데 학력 때문에 못하니 올해 사이버대학 이라도 같까 생각도 하던 중 올해 작품 배역이 들어와서 연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2. 올해 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어요. (배역이 들어오지 않아) 두 달 쉬는 기간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시험이랑 교육받는 기간이 딱 되더라고요. 올해 1월 2월에 배우라는 직업특성상 혹시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에....
3. 유튜브 등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든지, 돌잔치 행사 업체를 경영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맥주에 관심이 많으니 수제 맥주를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온 거라 4년제 대학을 마치려면 3년을 소비해야하는데 개그맨이 못되고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대학졸업을 하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코미디언이 결국 안 되면) 공무원이나 창업 둘 중 하나를 할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나이 들어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4. 나중에 아버지 식당 이어서 운영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파키스탄에 지난 2월에 방문하셨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사고당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 잘하면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제가 주로 일 할 거예요.

5. 마카롱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그런 디저트 카페. 군대문제도 있어서 군대 갔다 와서 돈 좀 모아서 마카롱 같은 디저트 공방을 차려서 팔고 싶어요.

면접에 응한 ‘자발적 선택형’ 피면접자들의 경제적인 소득은 전무하거나 있더라도 비정기적이며 이마저도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소액이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1. 현재 생활은 퇴직금 받은 걸로 살고 있고, 와이프도 소득이 조금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용돈도 드리고 아들 노릇을 하긴 해야 하는데 당장 벌이가 없어... 이해해주실 겁니다...
2. 지방연극 아니면 연기레슨 촬영하면서 자급자족하는 편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생활비의 절반은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3. 저는 좀 부모님이 조금 주시고 제가 주말에는 돌잔치 사회 를 보고 있어요. 한건 뒀면 3만 원 정도 받고 아이의 엄마아빠가 수고비로 팁을 조금 더 얹어주시기도 하고.
4. 아빠가 저에게 지금까지 계속 생활비 주고 밥도 주었으니 이제 제가 일을 해보려고요.
5. 예전에 빵집 알바 조금했었고 요새는 플리마켓에서 마카롱 같은 거 팔고요. 하루 플리마켓에서 일하면 수익은 그때그때 다른데 하루 알바해서 버는 돈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6만원 정도?

#### E. 자발적 선택형 그룹의 희망사항

면접에 응한 청년들 중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면접자들은 저마다의 처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정책방안과 개선점을 면접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청년들이 각종 지원정책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며, 절차의 간소화와 탄력적인 시행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창업지원 확대와 지원 대상 연령층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대학로 연극하는 사람들은 대관료가 비싸고 제작사가 지불을 많이 하게 되니 연극배우들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작사들이 대관료가 너무 비싸 제작사들도 힘들어해요.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 대관료가 훌쩍 뛰었어요. 결국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가져가고 제작사와 배우간의 갈등으로 결국 어린 배우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구조인거죠. 올해는 지원금이 많아졌다고 하나 어차피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느껴요.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꿈이긴 한데 대학로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극장을 하나 지어서 지금 기업들이 활동하는 그런 대관료보다 싸게 하여 후학양성과 대학로를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3. 우리 같은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공연장)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문화공연 같은 거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제작사나 극장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제가 솔직히 뉴스만 보고 언뜻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가 대상인지도 몰랐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제가 대상이 되나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정작 당사자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3. 같이 개그맨 준비하는 형이 자취를 해야 해서 담보대출을 엄청난 금리로 청년희망주택의 혜택을 받아서... 저는 취업이나 공부하는 경우 학비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럴 텐데 제 꿈 자체가 취업이나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쪽의 지원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2. 바리스타 학원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다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절차상 2개월 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가능한 기간에 바로 배워야 해서 사비로 배웠어요.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자격증도 두 달 만에 났고요.
3. 나이를 떠나서 누군가는 실업자가 되는 거고 해서 나이를 정해두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40대가 퇴직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꿈꾸는 사람들은 30대 훨씬 지나서도 계속 꿈을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원 대상 연령층은 더 커져야 할 것 같아요.
5. 창업지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 나. 구직회피·휴식형

### A. 구직회피·휴식형의 시작점-전공, 적성, 직업시장의 고려 없는 진로선택

이 그룹에 포함된 네 명은 모두 고졸 이하의 학력이다. 6번은 고등학교에서 아버지의 권유로 컴퓨터로봇과를 전공하고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반 년 정도 일한 후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한국 거주 5년차 조선족인 7번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자 고등학교에서 관광과를 전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중도입국청소년인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가이드의 꿈은 무너지고 전공과는 무관한 공장에 취업해 인쇄 일을 하다 한 달 만에 그만두어야 했다. 8번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요리학원을 등록하던 당시에는 자신이 요리에 관심과 재능이 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년간 학원을 다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나서 이 길이 자신이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미련 없이 포기하였다. 9번은 골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원하셨던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가출을 하였다. 잠시 세차학원에도 다녀봤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이 ‘구직회피·휴식형’ 니트로 전락한 계기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 또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이나 훈련과정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 선택했다는 점이다.

6.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나마 동물조련사가 꿈이었으나 부모님이 컴퓨터로봇과를 권유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도체 조립공장에 취업이 바로 되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6개월 다니고 그만뒀어요.
7. ○○비즈니스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공과가 항공과, 관광과, 조리과, 물류과가 있는데 저는 관광과를 선택했어요. 중국어랑 한국어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이드의 희망이 깨졌어요. 성적 면에서 그렇고요. 한국아이들과의 격차를 느꼈어요.
8.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취성패 통해서 한식요리학원 1년 다녔어요. 자격증은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한 번 떨어지고 어려워져 자격증 따진 못했어요.



딱히 적성에 맞아서 요리학원을 다녔다기보다 어릴 때 집에서 끼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요리 관련해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 8월쯤 요리 자격증 실습 시험보고 되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해볼까하는 미련도 없어요.

9. 고2까지 정규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자퇴를 했죠. 거의 8개월을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부모님을 속였는데 집에서 알고 난리가 났죠. 그 길로 가출했어요. 작년에 직업훈련기관에서 세차를 배웠는데 저랑 잘 안 맞아서...하는 일 자체가 저와 적성이 안 맞아서 오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얼마 안돼서 그만 뒀어요.

## B. 첫 직장에서의 열악했던 근무환경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경험한 첫 직장은 어린나이에 이겨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다. 직장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에 하루 10시간을 훌쩍 넘기는 근무시간이 당연시되었다.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근무시간 내내 반복된 일을 해야 하거나, 부상위험이 도사리는 육체노동으로 이들이 기억하는 첫 직장의 이미지는 매우 어두웠다.

6.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임금 220~280만원 받았어요.
7. 실습하면서 한 달에 한 140만원 받은 걸로 기억해요. 일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했고요. 토일 쉬고, 월~금 5일 일했어요. 실습이라서 낮게 준대요.
8. 출장뷔페 알바는 최저시급도 안 돼요. 최고로 받은 게 13만5천 원 정도인데 그건 일이 밤늦게 끝나서 차가 끊겨 택시비까지 받은 거고요. 원래는 하루 일당으로 8만 원 정도 받아요. 새벽부터 해서 저녁 8시에 끝나더라도 보통 12시간 넘게 일하는 거니까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예요.
9. 최근 서너 달 동안 3~4일 정도 일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그래서 많이 안 나간 것도 있고요.
6. 밤 근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너무 힘들어 그만두었어요. 일이 힘들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 의무적으로 12시간을 해야만 했어요.

6. 조립 작업이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해서 지루한 면도 있었어요. 13명 입사 동기도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형들이라 편하게 어울리기도 어려웠고요.
7. 공장 실습은 한 달 다니고 잘렸어요. 특근이 필요했거든요. 가끔씩 특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7시 반~저녁 7시 반까지 일 해야 하는데 제가 5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잘렸어요.
8. 출장뱀페에서 일이 있을 때 제게 연락을 줘요. 주로 서울지역으로 많이 가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끝나는 건 다 달라요. 점심뱀페는 5시에 나가고 저녁뱀페는 6시나 7시에 나가고요. 밤 9시쯤 끝나는 게 보통이고요.

### C. 구직회피·휴식형의 심화상태-의욕상실과 목표의식부재

‘구직회피·휴식형’의 청년니트가 ‘자발적 선택형’,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등 다른 유형의 청년 니트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의욕상실’이다. 본 조사를 통해 만나본 다른 유형의 청년 니트들은 현실세계와 관련된 목표의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인터뷰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내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오늘은 니트로 살지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현실세계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구직회피·휴식형의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현실세계와 맞설 수 있는 의지와 의욕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다음에 소개하는 8번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이들 유형의 청년 니트에게는 물질적인 지원에 앞서 체계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질문자 : 꿈이 뭐예요?

8 : 꿈이 없어요.

질문자 : 어렸을 적엔 있지 않았나요?

8 : 소방관요. 초등학교 때까지요.

질문자 : 어렸을 적 꿈을 이루고 싶지 않았나요?

8 : 중학교가면서 꿈이 없어졌어요. 사춘기가 오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질문자 : 고등학교 진학은?

8 : 예비소집까지 가긴했는데 교과서도 받고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질문자 : 후회 안 해요?

8 : 네.

질문자 : 어떻게 살지 대략적인 계획은 세우셨어요?

8 : 평범하게 알바해서 평범하게 사는 거... 사실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질문자 : 나중에 여자 친구도 사귀고 가정도 가지려면 돈도 벌고 경제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8 : 아직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걱정도 없고요.

질문자 : 나중에 경제적 자립이 필요할 텐데, 정기적인 일자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8 : 그런 쪽을 알아보려고 해도 대부분 알바가 야근이라...

질문자 : 밤에 일하는 건 왜 안 되나요?

8 : 잠이 좀 많아서. 그냥 졸리면 자야 되요.

질문자 : 사회활동에 관심이나 의욕이 별로 없어요?

8 : 네.

#### D. 구직회피·휴식형 청년 니트의 하루일상

‘구직회피·휴식형’ 청년 니트의 특징은 당장 현재상태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의식이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다른 유형의 청년 니트가 현실세계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반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운동 등에 상당한 시간을 들일만큼 이들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에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피면접자 네 명 중 세 명은 온라인 게임을, 나머지 한 명은 복싱이나 헬스 등 운동으로 하루 시간의 상당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명은 PC방에서 식사를 거르면서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의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6. 직장 그만두고 복싱이나 헬스 운동만 하고 알바나 일은 지금까지 안했어요. 아버지는 “뭐든지 해봐라. 될 때까지 해봐라. 운동만 하지 말고 뭐든지 배워보라”고 얘기하시곤 해요.
7. 평소 PC방에서 게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아요. 토요일 5시간 지금은 매일 하루 2시간.
8. 평일에 쉬거나 자거나 놀아요. 놀 때는 게임도 하고 옷 같은 거 직접 나가서 사기도하고요. 요새 관심사는 게임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해요. 빨라야 10시쯤 일어나서 게임하고 밤 10시까지 게임하고. 게임을 계속하다보면 밥을 안 먹거나 사먹거나 그러죠.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 더할 수 있으면 더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출장뷔페 알바도 안 나가려고 해요. PC방은 5,000원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니까....
9. PC방에서 게임 많이 하죠. 하루에 돈 있을 땐 하루 종일 있기도 하니까, 평균 7시간 정도 있고 최대는 12시간 이상도 있어봤죠. 밤을 세는 정도요.

#### E. ‘구직회피·휴식형’ 그룹의 희망사항

인터뷰에 응했던 ‘구직회피·휴식형’ 피면접자들은 구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지금 현재 포기했는지언정 이들 삶에서 꺾였던 꿈이나 희망마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로 인해 동물 사육사의 꿈을 잠시 마음속에 접었던 청년은 그 꿈을 다시 펼쳐보고 싶어 했다. 인터뷰에 응했던 조선족 청년은 자기보다 그다지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편안한 회사원’이 된 것만 같아 부럽기도 했던 친구를 보면서 회사원을 막연하게나마 꿈꾸게 되었다. 골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강요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청년이 그 당시 막연하게 품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대상이 동물로 변해 있을 뿐 의사의 꿈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간직하고 있었다.

6. 예전부터 사육사가 되고 싶어서 막연하게나마 대학에 수시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7. 그냥 편안한 회사원? 한국에서 태어난 제 친구는 그냥 자격증 없는데 회계증 하나만으로 회사원이 되었어요.
8. 돈은 벌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의사가 꿈이긴 한데 등록금 부담도 있고 나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컴퓨터 쪽 자격증도 있고 해서 프로그래머나 게이머 같은 것도 관심을 갖기도 해요.

이들이 현재의 니트 상태를 벗어나 각자가 막연하게 품었던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앞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살핀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위한 정보력도 부족하고 세상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들을 위한 청년지원정책에 제대로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의 상당수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현재의 니트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들 대상이 하루빨리 니트 탈출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실업급여라고 들어는 봤는데 내가 혜택 대상자인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같은 지원제도를 대상자들에게 잘 알려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7.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기술학원이요? 직업전문학원? 들어는 봤어요.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9. 재정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재정지원 받으면 대학진학이 가장 하고 싶어요. 학자금대출로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수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진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다. 취업·진학 준비형

### A. ‘준비자’들의 전략적 선택

‘취업·진학 준비형’은 ‘구직회피·휴식형’의 대척점에 서있는 청년 니트 유형이다. 어렵고 불편한 현실에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 접근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나가는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취업·진학 준비형’으로 분류된 피면접자들 중 13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4년제 대학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이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 임용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통해 인터뷰가 이루어진 비수도권 국립대학교 공과대 출신 취업준비생 3명(10~12)은 졸업을 유예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11. 학생 신분이면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때 유리하다고 해서요. 졸업유예가 학교 도서관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12. 마음의 위안이라고 해야 하나? 졸업을 하면 백수의 신분이 되어 내 자신의 위안을 삼고 싶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10. 사회가 졸업유예 상태를 아무래도 더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졸업유예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졸업예정자를 기업이 뽑으려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1. 졸업유예를 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는 사립대가 꽤 있으나 저희는 국립대이다 보니 학기를 등록 안하면 돈 안내도 됩니다.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졸업유예 안하고 바로 졸업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13. 원래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려했는데 4년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어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저 같은 경우, 다음 달에 현역입대인데 군대에 가서도 학점 은행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제대 후 사회복지분야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계획 이에요.

#### B. ‘준비자’들의 진로계획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피면접자들은 자신들의 진로계획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만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련 정보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선배와 동기들로부터 취업정보를 수시로 듣고 소통하며 취업준비를 해나가기도 한다.

13.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중학교 때까지 없다가 고등학교 때 특별위원회,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저기 봉사도 다니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부족한 면이 많고 사회복지 기관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 많고 사회복지사 분들도 불친절한 분들도 많아 제가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싶어서이고요.
13. 사회복지 분야 진로 중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 쪽으로 와야 안정적인 지위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장보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파급력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는 특정기관에서만 일을 하지만 영향력은

공무원 쪽이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복지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정책 위주로 잘못되어있는 것 보완하고 개선하고 싶다.

13. (직장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고 나의 업무가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10. 아침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함께 해요. 같은 장소에서 각자 개인공부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다시 공부하고 저녁 먹고 거의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서로 위안도 될 뿐더러 정보공유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1. 인터넷 카페 통해 정보도 얻고 온라인이든 직접 만나서든 서로 서로 정보공유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FGI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은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취업처 선호도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순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면접자 누구도 대기업에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였다. 자신들은 비수도권 국립대 출신이어서 지원해봐야 시간낭비일 뿐이란 판단이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도 있어 공기업은 경쟁률이 높더라도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처 선호도의 맨 마지막 순서인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어지간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통한다. 업무환경이나 임금 수준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턱 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그 이유다.

12. 공기업을 준비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도 공기업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너무 직업 환경이 좋지 않고 일 많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아서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하죠. 대기업은 공기업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지만... 대기업은 저희 서울권이 아닌 지방대 출신에게 더 불가능한 것 같아 거의 포기상태인거죠.
10. 일단 기술직으로 원하는 기업이 많아 어디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으나 저희도 목표치가 있고 원하는 곳이 있어 중소기업은 꺼리는 분위기에요.
11. 보통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좋은 데 가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12. 부모님 세대는 저희한테 중소기업부터 가고 절차 밟아 올라가면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하시지만 제 주변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저도 그걸 엄두가 나지 않아요. 주변에 실제 그런 선배는 몇 학년 지나 한두 분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11. 중소기업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채움공제 같은 지원정책이 있어야 그 혜택을 보자고 중소기업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상술한 인터뷰 내용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청년 실업의 아이러니한 공존의 원인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같은 갭을 메우기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연구자와 졸업유예 후 취업준비를 하는 피면접자 세 명 사이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자 :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에서 업무환경이 나빠도 임금수준이 높으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세요?

- 10 : 저는 그렇게까지 엄청 심하게 일하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 11 : 선배한테 들어봤지만 업무강도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순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들어가면 대기업이 들은 것처럼 박세지 않고 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처 선택은 지원자 개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 12 : 저는 급여보다는 저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400벌면 400만큼 쓰고 200벌면 200만큼 쓰고 사니까요. 조금 덜 벌어도 퇴근 일찍 하고 가족하고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질문자 : 각자가 생각하는 적정 초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2 : 250만원
- 11 : 300만원
- 10 : 월급보다 안정성을 고려할 것 같아요.



### C. '준비자'들의 플랜B(Plan B)

피면접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면접에 참여한 '준비자'들 모두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자신들의 계획대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계획 성취의 타임라인과 시한을 정해놓고 있었으며,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제2안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13. 저 같은 경우 사회복지 자격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못 붙으면 사회복지 기관에 들어가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기관은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모자란 편이거든요. 26살까지 공무원 시험 도전할 계획이에요. 23살에 군대 제대하고 나면 매년 한 번씩 있는 시험이니 총 네 번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네 번 안에 붙도록 열심히 해야죠.
10.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임금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취업하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원하는데 가지 못하면 집에서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고 눈치도 보여 취업할 생각입니다.
12. 저도 내년까지는 공기업 도전하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되면 공무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11. 저는 당장 제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친구들보다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FGI에 참여한 취준생 3인은 하나같이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즉, 이들의 제2안에는 창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대학원 진학은 생각해본 적 없고 공부하다 힘들면 그냥 장사나 하자는 생각을 술 먹다가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장사가 꽤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다른 쪽 생각해보는 거죠.
12. 창업도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아깝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 리스크가 커서...
10. 같은 학교 출신 선배가 ○○광역시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브런치랑 맥주 파는 식당 창업하여 성공한 데 가서 술도 마시긴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작 하려면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리스크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 D. '준비자'들의 정책관련 희망사항

피면접자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아쉬운 부분들을 토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와 진로상담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 장학금 지원 및 확대, 사회초년생인 저연령층 청년들 대상 지원의 확대, 청년지원정책 대상의 보다 명확한 선별 기준 마련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3. 청년지원정책들을 찾아보긴 했으나 저에게 맞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재정지원이나 공간이 아쉬운 부분이라. 요즘 학점은행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밖에 없어 아쉬웠어요. 스스로 인터넷 서핑해서 알아보는 수준인데 학점은행제, 공무원준비를 할 때 공신력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 대학 막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고 20대 중반부터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으니 비교적 사회초년생인 나같은 사람들처럼 24세 이하까지 보다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의 국가장학금제처럼 학점은행제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장학금제도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1. (5개월 취업준비자에게 50만원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물론 찬성이나 제대로 시행 안 될 것 같아요. ○○광역시에서 희망카드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 신청하면 달에 30만원 포인트로 줘 포인트로 인강이나 밥값 1만원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걸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선정되는 것도 불합리해요. 전부 다주는 게 아니면 골라서 주고 소득수준으로 구간 정해 서류 제출 요구하는데 “제대로 선정되는 게 맞나 기준이 뭐지?”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12. 취업 전 청년들에게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애매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거나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피면접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각종 금전적 혜택이나 지원도 좋지만 청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의 적용에 있어 일률적·일괄적 집행이 아닌 탄력적 이행과 공정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0. 단지 돈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것 보다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로시간 단축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직종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원하는 사람이 사기업으로 갈 수 있게 환경을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3천만 원 지원해서 중소기업 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업급여도 제대로 지급 안 해주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무원이 인기라니까 그걸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도 가게끔 원하게끔 환경을 바꿔줘야 해요.
1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 없어 문제라던데 그건 전반적인 환경이 안 좋아 안 가려는 거잖아요.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라. 돌봄·가사·육아형

### A. 나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피면접자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엄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민해야하는 자리이다. 14는 퇴직 당시 남편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을 다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의반타의반’ 퇴사를 했다. 스물다섯 살 부터 10년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15도 엄마의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어야했다. 육아문제로 결국 퇴사하였다. 16은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동대문 옷가게 일을 그만두었다. 요새 들어, 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엄마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17은 이른바 독박육아에 힘들어한다. 남편은 경제력 없는 자신을 무시하고 엄마로서 자신의 헌신을 당연시한다. 18은 스무 살에 결혼하여 엄마가 되었다. 결혼 당시부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부재한 상태였다. 주변에 육아문제로 의지할 사람이나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엄마의 역할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만했다. 19의 남편은 목회자다. 해외선교와 목회로 육아는 순전히 19의 몫이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고 다니던 회사를 나가고 싶었으나 이어지는 어린이집 관련 좋지 못한 뉴스들이 재취업의 의지를 꺾었다.

14. 세 달 전에 육아휴직 종료된 상태에서 퇴사했어요. 당시 제가 받던 연봉이 남편보다 많아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됐었죠. 상한선을 바라보면 직장 그만두는 것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추억을 아이에게 많이 만들어주자는 마음이 커서 10년 다닌 회사를 과감히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5. 저는 행정사 관련된 일을 했는데 25살부터 10년 정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어요. 중간에 큰 애 낳고 2년 쉬고, 작은애 낳고 3개월 딱 쉬었거든요. 2년 쉬고 나서 출근을 해보니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서너 달 걸렸어요. 회사는 내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해놓고 그 사람은 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눈치밥을 서너 달 먹으며 제 자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죠. 혹시 잘리지 않나 그런 불안감도 들고... 그 경험 때문에 둘째 낳고나서는 3개월만 쉬고 출근을 했어요. 결국 일을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거절했어요. 서울에 살았을 땐 친정엄마가 옆집에 사셔서 도와주셨는데 지금 여기(경기도)로 이사 오고 주말부부이다 보니까 나 혼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취업 기회를 놓쳤죠.
16. 다시 일하고 싶어요. 일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니까 점점 클수록 엄마의 위치가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 존재감이 좀 작아지는 걸 느껴요.
17. 육아활동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할까... 남편이 육아는 잘 못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뭐 어디서 연습해보고 왔냐고 따지면 그래도 자기는 못한다고, 애들이 나를 더 따른다고 변명으로 일관하죠. 경제적으로 남편이 외벌이 하다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항상 상의를 해야되고 아이들에게 지출하는 것도 혼자 고민하다 이야기 꺼내면 남편이 눈치를 주고요.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면 자기가 살림을 할 테니 나만큼 벌여 오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반복이에요. 내가 일한다고하면 나만큼 벌여오라고 그런 대화가 반복되는 거예요.
18. 제가 엄마가 없어서 그리고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일찍 해서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정보나 의지할 때도 없었죠. 그때그때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죠. 우울증도 걸렸고요. 주말 부부라서 평소 혼자 육아전담을 하다 보니 힘들고요.
19. 아이가 현재 16개월인데 엄마 품을 떠나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퇴사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평소에 아이가 잔병치레가 잦아 굳이 일 때문에 서둘러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 않았고요. 특히 요즘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같은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나이가 어려 자기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이유가 더 분명해 졌어요.

19. 신랑 직장문제 때문에 잦은 부재로 인하여 아이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것, 말 그대로 독박육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물론이고 사실상 밤에도 모유수유 등으로 돌봄의 역할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 B.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주위 반응

피면접자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바쁘게 살다 어느 날 엄마가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육아휴직으로 잠시 그만두었을 때나 퇴사를 결심했을 때 남편, 부모님, 그리고 직장 동료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14. 솔직히 경력단절이라는 게 좀 신경이 쓰였고 이 직장에서 만 10년을 장기근속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재취업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어요. 제 아버지가 퇴사를 만류하셨어요. 부모님 세대는 강제육아였잖아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당연히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많은 여직원들이 어떻게 취업당해왔는지 지금까지 많이 봐오셨잖아요. “아이로 회사 그만두면 여자는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은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 애 엄마는 받아주지 않는다”라며 설득을 하셨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남편에게 무시 받는다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만류를 더 많이 하셨어요.
19. 육아휴직은 동료들이 같은 여자인데 더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삼삼오오 만나서 그때까지 10년 전이니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 여자들이 뒷담화를 하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14.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아직 육아휴직을 쓰는 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장 쓰는 게 처음 6개월 냈어요. 인사를 도는데 “너 6개월 낸다며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라며 이런 무심코 하는 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치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복귀를 하고 얼마 안 되어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전후사정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반감을 보이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 입장이었으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이가 안 아프더라도 마음 편히 주어진 육아 휴직의 권리를 맘 편히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16. 애기를 좀 키워놓고 대학교 서점에서 점원으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유치원에 아이를 6시까지 맡길 수 있어서 그 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점심 무렵에 학교에서 집에 오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서점엔 직원이 저 혼자라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어요. 저 아니면 무조건 사람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내가 그만두어야하는 분위기였죠.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 C. 딜레마 : 일이나 가정이나

피면접자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은지 물었다. 상당수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직장을 다시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자존감, 존재감 등 심리적인 면에서도 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다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종일 서서 일하느라 아픈 다리를 두드리며 일하는 계산원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육아와 직장생활 모두 원만히 할 수 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따른다고 말한다.

15. 제가 일을 안 하니 저희 요즘 생활이 100을 벌면 150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50을 아껴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먹는 거 줄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축보다 빚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
16. 우선 자녀교육이 제일 걱정이고 자녀교육 시키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고, 제가 일을 해서 학원을 돌리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고 아이들 봐두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16. 다시 일하고 싶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위축되어가는 제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너무 늦게만 아니면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일반 직장은 6시에 일 끝나면 보통 7시 넘어서 집에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18. 저도 일하고 싶어요. 한국이 워낙 자본주의가 심하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 줍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젊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능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보면 집안일은 해요. 단지 (전업주부인) 저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요.
14. 주위 친구들이 하루라도 젊을 때 다시 일을 하라며 농담반 진담반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다니던 회사는 재취업이 어려워 결국 마트에서 캐시어해야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 들면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마트에 갔는데 나이가 좀 있는 여성 직원이 다리가 아파 손으로 다리를 두드리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19. 아이를 돌보면서 전일제로 근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이가 세 살 이후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전문분야를 살려서 시간제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14. 아이가 만 세 살 될 때까지는 제가 돌볼 생각인데 그 후로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잖아요. 남편이 지금부터 그때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회사원인 남편도 회사원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커피숍이든 자영업을 해볼 계획도 막연히 세우기도 했어요.
17. 아이를 키우다보니 원래 직장으로 다시 취업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시간상 집에서 부업도 해보고 단기일바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집에서 하는 부업은 해본 사람들이 몸만 힘들고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16. 아이를 봐야하는 현실에서 일반 사무직 외에 대부분 식당 서빙 같은 일자리도 그렇고 대부분 주말에 나와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돌봄 기관에 맡 놓고 아이들을 맡겨만 놓기도 불안하고요. 엄마들이 잠깐잠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 D. 돌봄·가사·육아형 그룹의 정책관련 희망사항

피면접자들에게 정부의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앞서 살펴 본대로 대다수의 피면접자들이 겪었던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당사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며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직장인들에게 3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14. 육아휴직 기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공무원처럼 모든 직장도 3년 정도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래 없어지니까 회사도 백업을 찾겠죠. 지금은 1년이니까 어지간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입장에서도 기간을 여유롭게 두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살핀 인터뷰내용에서도 드러났듯이, 허술한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 기관이 부족한 현실이 피면접자들을 직업전선에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엄마로서 자신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인 돌봄 기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FGI에 참여한 피면접자들은 모두 공감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돌봄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8. 돌봄 서비스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돌봄 기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압박감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15. 어린이집은 “6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7시 반에 아이를 맡기러 가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8시 넘어 선생님 나오면 저는 눈치 보며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7시 넘어서 아이들 데리러 가면 선생님들이 짜증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16.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가 눈치를 너무 주는 거고 구립은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아예 저녁시간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요. 모든 구립 말고는 대부분 눈치를 주는 거죠.
15. 구립이라는 데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기를 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를 걸어놓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앞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으로 계속 순번이 계속 밀려서 결국 구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9.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한 없이 가정에서만 아이를 끼고 있을 수 없는데... 작은 가정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은 꺼려지는 요소가 아무래도 많이 있고, 인증되고 여건이 괜찮아 보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한없이 길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계획이 조금은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한참 대기가 걸려 아무 곳이나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밖에 보다 구조적인 측면의 제도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지원의 대상자 확대, 지원 자격 대상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방식과 절차의 개선, 생색내기용 소액지원보다 각자의 여건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9. 청년 지원 정책을 언뜻 살펴봐도 대부분은 20대 후반, 대학생, 대학졸업 이후 취업을 못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30대 중반까지라 하여도 사실 아이가 있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할 만한 내용과 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 각 계층에 맞는 특성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시기의 엄마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17. 쓸데없는 지원은 줄이고, 아동수당 그런 거 안줘도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만원씩 가정에 지원한다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 5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전에 지원했었는데 등본상에 삼촌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가족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은 자가인데 옆집은 부모명의로라서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받는 거죠.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거죠.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서류문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라에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개인에게 소액지원하는거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나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 3. 청년 니트 진입 및 탈출요인<sup>9)</sup>

이 절에서는 청년 니트 진입과 탈출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도시 거주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 2,000가구를 추가해 전국 확대 후 현재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

9) 이 절은 성재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상황을 조사한 19차 조사자료까지 일반공개되어 있으며, 이 조사는 우리나라 개인 경제활동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경제활동 판별설문을 통해 비교적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전 기간 자료를 이용해 청년 니트 진입 및 탈출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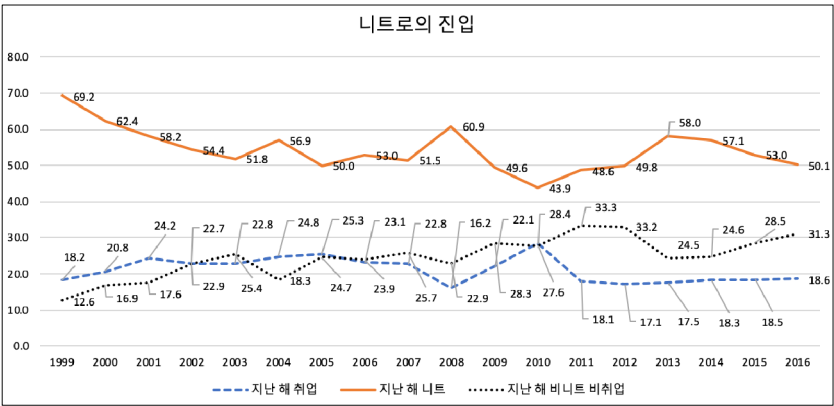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니트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 재학중이거나 진학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학원 통학,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관 및 학원이 비공식(직업훈련)기관이더라도 모두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니트-비취업으로 분류하였다. 취업자인 경우 취업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니트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만 니트로 분류하였다. 청년 기준은 15-29세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니트를 정의하면 별다른 학원 통학 없이 취업준비만 하는 최종학교 졸업자는 니트가 되며, 결혼한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있다면 니트로 분류된다. 실업자도 별다른 학원이나 훈련기관 통학 없이 구직활동만 하고 있다면 니트로 분류된다. 가족 돌봄 때문에 무업상태에 있어도 니트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니트에 대한 정의는 OECD에서 이용한 니트 정의보다는 다소 좁은 것이다. OECD에서는 진학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공식 학제가 아닌 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수강을 한 경우도 니트로 분류된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차교육 졸업 이후 직업 목적 교육기관이 활성화되어 있어 공식 학제 안에서 직업전담교육이 소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니트의 정의에 한국적 현실을 반영해 통학은 공식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일괄 비니트-비취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III-24는 올해 니트인 사람들이 지난해에는 어떤 경제활동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2016년에 니트인 청년 중 50.1%는 지난해에도 니트였고, 31.3%는 지난해 비니트-비취업, 즉 학교 재학중이거나 훈련을 받았으며, 18.6%는

지난해에는 취업상태에 있었다. 표본수가 얼마 되지 않아 경기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긴 어렵다. 대체로 2011년경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 비니트-비취업에서의 니트로의 진입은 증가했고, 취업으로부터 니트로의 진입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졸업 후 취업한 다음 사직해 니트에 이르는 경로는 다소 줄고 졸업 후 바로 니트로 진입하는 비중은 증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니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니트-니트 이행은 50% 대에 이르고 있어 니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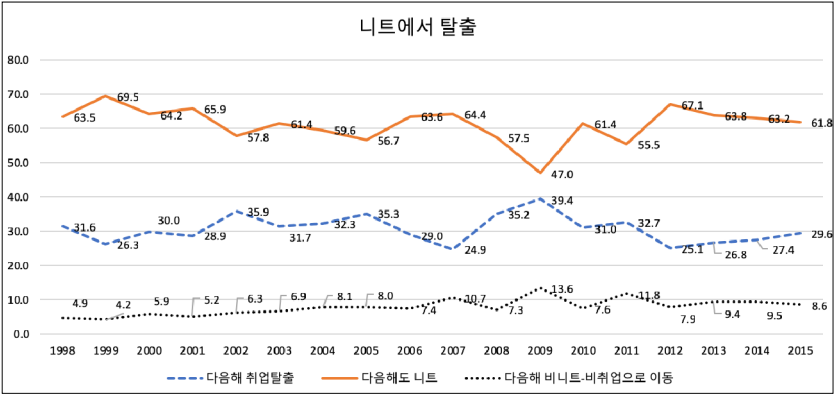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III-24 청년 니트로의 진입(%)

다음으로 니트로부터의 탈출을 보면, 2015년에 니트였던 청년은 다음해에도 61.8%가 니트였으며, 29.6%는 취업에 성공했고, 8.6%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비니트-비취업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 추이로 보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다음해에도 탈출 못하고 니트로 남아있는 경우가 60%대이며, 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는 20%대 후반을, 니트도 취업도 아닌 경우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니트도 취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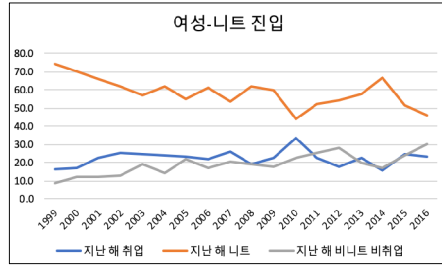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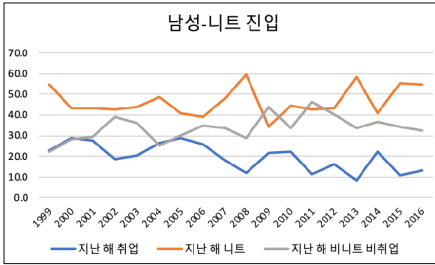
아닌 경우로의 이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니트 유지율은 다소 하락하고 취업으로의 탈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 기간 청년 노동시장 개선은 주로 고졸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고, 여성의 취업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니트의 구직활동 활성화와 직업훈련 강화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다.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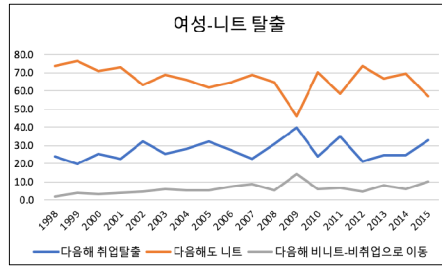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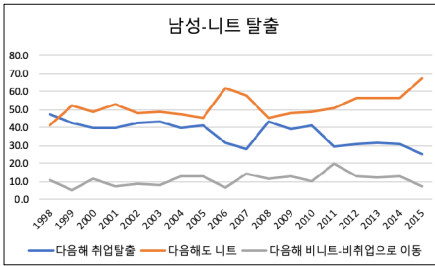
그림 Ⅲ-25 청년 니트로부터의 탈출(%)

성별로 나누어 니트의 진입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으로부터 볼 때 남성은 올해 니트의 절반 정도는 지난 해에도 니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은 해마다 진폭이 크긴 하지만, 몇 년을 통산해서 평균추세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지난해에도 니트였던 사람들의 진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니트 집입률은 2007년 이전과 2012년 이후가 뚜렷이 구별되는데, 2007년 이전 시기는 대략 40% 초중반 정도, 2012년 이후는 50% 정도에 형성되었다.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Ⅲ-26 성별로 본 니트 진입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Ⅲ-27 성별로 본 니트 탈출

반대로 여성은 2000년대 초반이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낮아지는 모습이다. 2011-2014년에 올해 니트 중 전년도 니트였던 사람들의 비중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후로는 하락해 2016년에는 2010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은 취업으로부터의 진입이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여성은 비니트-비취업으로부터의 진입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니트로부터의 탈출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니트 유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취업으로의 탈출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니트 유지율에서 상승추세는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으로의 탈출률도 하락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니트 유지율은 2012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가, 취업탈출률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2012년 이래 니트 유지율 하락 추세가, 취업탈출률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남성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래 전체 추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가 남성보다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비니트-비취업으로의 이동은 금융위기 이래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니트 이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력별 니트 비중을 확인해 보았다. 니트로의 분류자체가 되지 않는 재(휴)학자는 제외하고 각급학교 졸업생만 대상으로 니트 비중을 계산하였다. 15-29세 전체로 보면 고졸의 니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위기 이후에 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35.9%→40.3%). 대졸의 니트 비중은 27% 수준으로 금융위기 전후 차이는 없었다. 취업자 비중은 전문대졸>대졸>고졸 순으로 나타난다.

15-29세의 학력별 니트 비중이 취업이 본격화되는 연령대인 25-29세에서도 유지되는지 보기 위해 학력별로 남녀를 구분해 보면, 니트의 비중은 떨어지나 고졸 니트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성은 니트의 비중이 고졸 학력대에서 현격히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대신 여성 고졸의 니트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전문대졸 니트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용률이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9 교육수준별 청년 연령대별 니트 비중

(단위 : %)

|       |         | 15-29세 |          |      |      | 25-29세 남성 |          |      |      | 25-29세 여성 |          |      |      |
|-------|---------|--------|----------|------|------|-----------|----------|------|------|-----------|----------|------|------|
|       |         | 고졸     | 전문<br>대졸 | 대졸   | 계    | 고졸        | 전문<br>대졸 | 대졸   | 계    | 고졸        | 전문<br>대졸 | 대졸   | 계    |
| 01-08 | 취업      | 56.1   | 71.0     | 65.8 | 63.5 | 74.8      | 76.6     | 67.2 | 72.6 | 50.8      | 66.1     | 66.1 | 61.5 |
|       | 니트      | 35.9   | 25.3     | 27.0 | 30.1 | 22.7      | 20.0     | 23.5 | 22.2 | 47.3      | 31.3     | 29.0 | 35.2 |
|       | 비니트-비취업 | 8.0    | 3.7      | 7.1  | 6.4  | 2.6       | 3.4      | 9.3  | 5.2  | 1.9       | 2.6      | 4.8  | 3.3  |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09-16 | 취업      | 49.0   | 73.0     | 66.3 | 63.9 | 71.4      | 79.0     | 66.3 | 71.7 | 60.2      | 72.8     | 69.6 | 69.3 |
|       | 니트      | 40.3   | 24.6     | 27.3 | 29.9 | 27.9      | 18.5     | 23.2 | 22.5 | 38.0      | 26.0     | 28.6 | 29.1 |
|       | 비니트-비취업 | 10.8   | 2.4      | 6.4  | 6.2  | 0.7       | 2.5      | 10.6 | 5.8  | 1.8       | 1.2      | 1.8  | 1.6  |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남성의 경우 니트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고졸이 대졸에 비해 높지만, 대졸의 경우 고용률이 높아서 니트 비중이 고졸보다 낮은 것은 아니며, 비니트-비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이 고졸보다 현격히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대졸의 경우 구직활동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위한 학원 통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구직활동이 나타나는 패턴이 고졸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학력별로 니트로의 진입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1년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평균 하고, 금융위기 이후 시기인 2010-2016년까지를 평균하여 비교하였다. 올해 니트 중에서 지난해에도 니트였던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에 고졸에 이어 전문대졸, 대졸 순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대졸과 전문대졸이 바뀌었다. 어느 경우나 니트 중 지난 해 니트였던 비중은 고졸이 가장 높은 셈이다. 전년도에 취업이었던 경우는 금융위기 전후 모두 동일하게 전문대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졸, 고졸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대졸은 취업에서 니트로의 이행이, 고졸은 니트를 유지하는 경우가 높은 셈이다.

표 III-20 학력별 기간별 니트로의 진입

(단위: %)

|      |               | 지난 해 취업 | 지난 해 니트 | 지난 해<br>비니트 비취업 |
|------|---------------|---------|---------|-----------------|
| 고졸   | 2001-2007년 평균 | 25.8    | 68.0    | 6.2             |
|      | 2010-2016년 평균 | 15.8    | 77.4    | 6.8             |
| 전문대졸 | 2001-2007년 평균 | 32.0    | 63.4    | 4.6             |
|      | 2010-2016년 평균 | 37.5    | 58.3    | 4.2             |
| 대졸   | 2001-2007년 평균 | 28.7    | 60.5    | 10.8            |
|      | 2010-2016년 평균 | 25.4    | 65.9    | 8.7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비니트-비취업으로부터의 진입은 대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이었다. 졸업이나 학원통학 후 니트화되는 비중이 대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이렇게 상태 간 이동을 보면 전문대졸은 취업-니트 이동이 활발하고, 고졸은 니트-니트 유지가 더 심하며, 대졸자는 전문대졸과 고졸의 중간 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의 경우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통학, 졸업 후 니트 진입도 다른 학력대에 비해 활발한 특징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전문대졸 니트 유지는 줄어든 반면, 대졸과 고졸의 니트 유지는 증가해 전문대졸보다 대졸의 니트 유지가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표 III-21 학력별 기간별 니트로부터 탈출

(단위: %)

|      |               | 다음해<br>취업탈출 | 다음해도<br>니트 | 다음해 비니트-<br>비취업으로 이동 |
|------|---------------|-------------|------------|----------------------|
| 고졸   | 2001-2007년 평균 | 27.5        | 64.5       | 8.0                  |
|      | 2010-2016년 평균 | 19.4        | 67.7       | 13.0                 |
| 전문대졸 | 2001-2007년 평균 | 36.7        | 58.9       | 4.4                  |
|      | 2010-2016년 평균 | 39.6        | 56.2       | 4.1                  |
| 대졸   | 2001-2007년 평균 | 37.4        | 54.1       | 8.5                  |
|      | 2010-2016년 평균 | 36.0        | 53.3       | 10.7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학력별로 니트로부터의 탈출도 분석해 보았다. 취업으로의 탈출은 대졸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 37.4%, 36%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전문대졸은 금융위기 전 36.7%에서 39.6%로 다소 상승, 고졸은 금융위기 전 27.5%에서 금융위기 이후 19.4%로 다소 하락했다. 대졸과 전문대졸은 취업탈출에 있어서 고졸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비중도 고졸이 가장 높고, 대졸은 전문대졸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전문대졸과 비교해 니트도, 취업도 아닌 경우로의 이행이 많이 이루어져 니트를 유지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비니트-비취업은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전문대졸에 비해 고졸과 대졸 니트의 교육 및 훈련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같은 교육, 훈련 참여는 고졸과 대졸에게서 금융위기 이후 좀 더 활발해진 양상도 관찰된다.

#### 1) 회귀분석 방법 설명<sup>10)</sup>

이하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위에서 관찰한 니트로의 탈출과 유지에 대해 좀 더 엄밀히 분석한다. 기본 회귀 모형은 아래와 같다. 식(1)은 과거의 니트 경험( $N_{it-1}$ )이 현재의 니트 여부( $N_{it}$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모형화한 것이다. 개인의 학력, 연령 등 인적 자본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며, 개인의 미관찰 특성  $\alpha_L$ 이 함께 통제된다. 개인의 미관찰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거의 니트경험이 설명변수로 들어오는 모형은 개인의 미관찰 특성이 고려된 상태의존(state-dependence) 존재 여부 검정모형으로 불린다.

$$\text{식 (1)} : N_{it} = \beta_0 + \delta_1 N_{it-1} + x\beta + \alpha_L + \epsilon$$

10) 이하 회귀분석 방법 설명은 필자의 저서인 성재민, 안정화(2016 : 76-80)의 내용을 재정리 한 것임.

상태의존이란 과거에 니트 상태에 빠진 것 때문에 계속 니트를 탈출할 수 없는 함정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개인의 관찰된, 미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태의존이 있는지를  $\delta_1$ 의 통계적 유의도와 부호로 검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무관한 상태의존, 즉 순수하게 니트에 한번이라도 빠진 것이 니트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함정효과를 검정할 수 있게 된다.

종속변수가 0=취업, 1=니트인 이항변수이며, 패널자료이면서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동태적 모형이므로 여기서는 이항 확률효과 동태적 프라빗(dynamic probit 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한다.

이 모형을 적용할 경우 초기조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이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곧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 $\alpha_L$ )과 이전에 니트 경험 여부( $N_{it-1}$ )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 $\delta_1$ )에 편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개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기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성재인, 안정화(2016)가 사용한 접근법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이전 연도의 니트 여부( $N_{i0}$ )를 설명변수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우도 함수 추정방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동시에 비선형 모형에서 미관측 특성( $\alpha_L$ )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개인의 미관찰된 능력은 더 많이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설명변수와 잔차(개인의 미관찰 특성은 명시적으로 변수화되지 못해 잔차의 일부가 되므로) 간 상관관계로 이어져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들은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식 (2)는 이와 같이 작용하는 미관찰 특성과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표시한 것으로 이전 연도의 니트 여부( $N_{i0}$ )와 설명변수들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추정과정에서 원래 투입되는 설명변수에 더해 설명변수의 개인별

평균치를 추가로 통제함으로 설명변수와 미관찰 특성 간의 관계가 통제되게 된다.  
 이하 추정모형에서 이와 같이 통제되는 변수는 직업훈련과 연령이다.

$$\text{식 (2)} : \alpha_L = \psi + \eta_0 N_{i0} + x\zeta + a_i, \quad a_i \sim \text{Normal}(0, \sigma_a^2)$$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은 니트의 유지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한발 더 나아가 니트와 일자리의 취약성이 니트↔저임금 간 반복 함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려면 니트와 취약 취업이 동시에 추정모형화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취약한 일자리=저임금으로 정의하였으며, 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추정을 위해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이항 편의효과 프로빗 모형(bivariate random effect probit model)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 니트 여부를 결정하는 식 (1-1)과 저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식 (3)을 동시에 추정하는데, 이 방정식의 잔차(  $\alpha_L + \epsilon_{it}$ ,  $\alpha_u + e_{it}$  ) 사이에는 식 (4)처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text{식 (1-1)} : N_{it} = \beta_0 + \delta_1 N_{it-1} + \gamma_1 L_{it-1} + x\beta + \alpha_N + \epsilon$$

$$\text{식 (3)} : L_{it} = \beta_0 + \gamma_2 L_{it-1} + \delta_2 N_{it-1} + x\beta + \alpha_L + e$$

$$\text{식 (4)} : \text{corr}(\alpha_N + \epsilon, \alpha_L + e_{it}) = \rho \sigma_{\alpha_N} \sigma_{\alpha_L}$$

식 (4)는 식 (1-1)과 식 (3) 잔차 사이의 상관관계가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alpha_N$ 과  $\alpha_L$ )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특성들이 니트상태와 저임금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는 현상과 관련되지를 보여준다. 곧 저임금이 반복되는 경우와 니트 상태 경험 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양(+)의 효과를, 없다면 음(-)의 효과를 보여주게 된다.

니트 결정식 (1-1)과 식 (1)의 차이는 이전 저임금 여부( $L_{it-1}$ )가 추가로 통제된다는 점이다. 식 (3)은 저임금여부 결정식인데, 역시 이전 니트 여부와 이전 저임금여부가 통제된다. 이는 각각의 상태의존 여부를 보여주며 이 모형에서 상태의존성을 검증하는 파라미터는  $\gamma_1$ ,  $\gamma_2$ ,  $\delta_1$ ,  $\delta_2$  등이다. 예를 들어  $\gamma_1$ 은 이전 저임금 상태가 현재 니트 상태 가능성(니트-저임금의 뒀)을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계수 값이다.

$\alpha_N$ ,  $\alpha_L$  및  $\alpha_N$ ,  $\alpha_L$  간 상관관계가 개인특성에 따른 니트와 저임금의 뒀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준다면, 상태의존성을 검증하는 계수는 개인 특성들과 무관하게 과거의 니트 또는 저임금 경험이 개인의 경력발전을 저해하는 함정 효과를 발생 시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라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후자라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니트 상태나 저임금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 2)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들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들은 교육수준, 결혼 여부, 성별, 연령, 직업훈련 경험과 아버지의 교육, 조사연도가 사용되었다. 지역도 포함되었는데 이항 모형의 경우에는 추정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투입한 직업훈련 경험은 현재의 직업훈련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조사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는 직업훈련의 효과가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체로 가구의 소득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제하였다.

표 III-22는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 15-29세인 사람들을 2016년까지 추적해 데이터를 구축한 코호트 표본이다. 상태 의존 여부를 보여주는 전기 니트여부 변수는 (+)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해 과거에

니트였던 경험이 현재 니트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니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전문대졸의 니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남성은 기혼일 경우 니트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낮아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 유배우 무업 여성을 니트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남성은 혼인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여성은 아직도 혼인 후 경력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령은 나이가 들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떨어져 노동시장 정착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보여줬으며, 특히 남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니트가 될 가능성을 낮추고 취업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특히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2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여부 결정요인 추정 결과

|                     | 전 체                  | 남 성                  | 여 성                 |
|---------------------|----------------------|----------------------|---------------------|
| 전기 니트여부             | 0.962***<br>(0.0978) | 0.639***<br>(0.190)  | 1.050***<br>(0.116) |
| 고졸(기준: 고졸미만)        | -0.114<br>(0.126)    | 0.228<br>(0.267)     | -0.256*<br>(0.142)  |
| 전문대졸                | 0.446***<br>(0.140)  | 0.987***<br>(0.280)  | 0.220<br>(0.163)    |
| 대졸이상                | -0.566<br>(0.438)    | 0.119<br>(0.722)     | -1.050<br>(0.641)   |
| 기혼 유배우(기준: 미혼, 무배우) | -1.008***<br>(0.158) | -1.429**<br>(0.583)  | 1.174***<br>(0.176) |
| 성별(남성=1)            | -0.351***<br>(0.102) | -                    | -                   |
| 연령                  | -0.108**<br>(0.0476) | -0.205**<br>(0.0927) | -0.0907<br>(0.0572) |
| 직업훈련                | -0.800**<br>(0.400)  | -1.344<br>(1.088)    | -0.760*<br>(0.440)  |

|                        | 전 체                 | 남 성                 | 여 성                 |
|------------------------|---------------------|---------------------|---------------------|
| 아버지 학력 - 고졸(기준: 고졸 미만) | 0.0765<br>(0.114)   | -0.0217<br>(0.231)  | 0.110<br>(0.130)    |
| 아버지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0322<br>(0.146)  | 0.00804<br>(0.297)  | -0.0440<br>(0.166)  |
| 니트(초기)                 | 0.564***<br>(0.153) | 0.655**<br>(0.303)  | 0.537***<br>(0.179) |
| 부산(기준: 서울)             | 0.00941<br>(0.169)  | 0.0786<br>(0.336)   | -0.0286<br>(0.188)  |
| 대구                     | 0.136<br>(0.247)    | 0.153<br>(0.532)    | 0.154<br>(0.266)    |
| 대전                     | -0.141<br>(0.331)   | -0.433<br>(0.695)   | -0.0998<br>(0.368)  |
| 인천                     | 0.0563<br>(0.213)   | -0.0369<br>(0.440)  | 0.161<br>(0.232)    |
| 광주                     | -0.811**<br>(0.403) | -2.168**<br>(0.856) | -0.170<br>(0.487)   |
| 울산                     | 0.0176<br>(0.246)   | -0.110<br>(0.501)   | 0.0733<br>(0.276)   |
| 경기                     | -0.102<br>(0.136)   | -0.191<br>(0.285)   | -0.0921<br>(0.150)  |
| 강원                     | 0.638*<br>(0.339)   | 0.742<br>(0.810)    | 0.556<br>(0.353)    |
| 충북                     | 0.105<br>(0.276)    | 0.619<br>(0.595)    | -0.156<br>(0.299)   |
| 충남                     | 0.0834<br>(0.251)   | 0.759<br>(0.514)    | -0.00317<br>(0.290) |
| 전북                     | -0.0301<br>(0.275)  | -0.0910<br>(0.519)  | 0.0191<br>(0.324)   |
| 전남                     | -0.290<br>(0.317)   | -1.634**<br>(0.773) | 0.308<br>(0.359)    |
| 경북                     | -0.266<br>(0.284)   | -0.637<br>(0.520)   | -0.0577<br>(0.344)  |
| 경남                     | -0.155<br>(0.189)   | -0.438<br>(0.413)   | -0.101<br>(0.203)   |
| 상수항                    | 5.013***<br>(0.650) | 7.947***<br>(1.363) | 3.501***<br>(0.741) |
| 총 관측치수                 | 2,349               | 825                 | 1,524               |
| 패널 개인 표본수              | 994                 | 400                 | 594                 |

괄호는 표준오차

\*\*\*  $p < 0.01$ , \*\*  $p < 0.05$ , \*  $p < 0.1$

표 III-23은 니트 결정식과 저임금 결정식을 연립해 추정한 dynamic bivariate random effect probit 추정 결과이다. 이 모형에서도 과거의 니트를 경험한 경우에 현재의 니트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상태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전기 저임금 경험은 현재 니트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취업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니트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대 결과는 성립하지 않았다. 과거의 니트 경험은 현재 저임금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놓고 볼 때 저임금상태와 니트 상태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함정 가능성은 낮지만, 니트 상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 내에 저임금 취업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니트에 대한 학력의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뚜렷해진다.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니트 가능성이 낮으나, 전문대졸은 높고, 대졸 이상은 다시 니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 유배우이면 니트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별로 나누어 추정은 안했지만, 앞서의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마도 여성의 영향이 주도한 결과일 것이다. 직업훈련은 이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니트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rho\_alpha$ 가 니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저임금일 가능성도 높은지 개인 미관찰 특성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개인 특성 측면에서는 니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임금으로 취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청년들 사이에서 니트 상태와 저임금 상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태의존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개인 특성의 결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과 같이 개인의 취약한 특성을 보완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8년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추정해 보았는데, 결과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3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bivariate RE Probit

|                        | (1)<br>현재 니트결정식       | (2)<br>현재 저임금 결정식    |
|------------------------|-----------------------|----------------------|
| 전기 니트여부                | 0.864***<br>(0.0995)  | 0.464***<br>(0.161)  |
| 전기 저임금여부               | -0.587***<br>(0.130)  | 0.558***<br>(0.138)  |
| 고졸(기준: 고졸미만)           | -0.203*<br>(0.120)    | -0.540***<br>(0.165) |
| 전문대졸                   | 0.325**<br>(0.138)    | -0.896***<br>(0.212) |
| 대졸이상                   | -0.718*<br>(0.425)    | -7.827<br>(800.8)    |
| 기혼 유배우(기준: 미혼, 무배우)    | 0.931***<br>(0.153)   | -0.148<br>(0.234)    |
| 성별(남성=1)               | -0.260***<br>(0.0978) | 0.318**<br>(0.150)   |
| 연령                     | -0.0996**<br>(0.0462) | -0.128*<br>(0.0679)  |
| 직업훈련                   | -0.779**<br>(0.388)   | -0.187<br>(0.407)    |
| 아버지 학력 - 고졸(기준: 고졸 미만) | 0.0445<br>(0.108)     | -0.416***<br>(0.150) |
| 아버지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0657<br>(0.138)    | -0.348*<br>(0.192)   |
| 저임금(초기)                | 0.0222<br>(0.168)     | 1.019***<br>(0.220)  |
| 니트(초기)                 | 0.573***<br>(0.152)   | 0.688***<br>(0.215)  |
| 상수항                    | 4.830***<br>(0.619)   | 5.191***<br>(1.076)  |
| alpha_N                | 0.625***<br>(0.156)   |                      |
| alpha_L                |                       | 0.899***<br>(0.262)  |
| rho_alpha              | 0.500***<br>(0.169)   |                      |
| 총관측치수                  | 2,356                 | 2,356                |

괄호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니트의 함정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문대졸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혼 유배우의 남녀간 상반된 효과는 2000년대 중반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직업훈련은 전체로는 유의하나, 계수 절대값은 금융위기 이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약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Ⅲ-24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여부 결정요인 추정 결과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전기 니트여부                | 1.135***<br>(0.0886)  | 0.668***<br>(0.195)  | 1.233***<br>(0.105) |
| 고졸(기준: 고졸미만)           | -0.190*<br>(0.104)    | -0.230<br>(0.262)    | -0.151<br>(0.124)   |
| 전문대졸                   | 0.135<br>(0.115)      | 0.387<br>(0.307)     | 0.145<br>(0.136)    |
| 대졸이상                   | 0.312<br>(0.319)      | -0.110<br>(0.703)    | 0.548<br>(0.416)    |
| 기혼 유배우(기준: 미혼, 무배우)    | 0.808***<br>(0.112)   | -1.396***<br>(0.435) | 1.084***<br>(0.140) |
| 성별(남성=1)               | 0.0259<br>(0.0904)    | -                    | -                   |
| 연령                     | -0.158***<br>(0.0550) | -0.226*<br>(0.122)   | -0.130*<br>(0.0686) |
| 직업훈련                   | -0.386*<br>(0.222)    | -0.336<br>(0.634)    | -0.394<br>(0.244)   |
| 아버지 학력 - 고졸(기준: 고졸 미만) | -0.0592<br>(0.0897)   | -0.0744<br>(0.226)   | -0.0236<br>(0.106)  |
| 아버지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0447<br>(0.135)     | -0.0857<br>(0.377)   | 0.181<br>(0.156)    |
| 니트(초기)                 | 0.619***<br>(0.120)   | 0.817***<br>(0.286)  | 0.445***<br>(0.142)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부산(기준: 서울) | -0.00342<br>(0.139) | -0.263<br>(0.336)   | 0.163<br>(0.163)   |
| 대구         | 0.339<br>(0.211)    | 1.396**<br>(0.658)  | 0.246<br>(0.233)   |
| 대전         | 0.315<br>(0.208)    | 0.635<br>(0.578)    | 0.335<br>(0.233)   |
| 인천         | 0.135<br>(0.183)    | -0.274<br>(0.442)   | 0.339<br>(0.218)   |
| 광주         | 0.335<br>(0.244)    | 1.631**<br>(0.637)  | -0.0329<br>(0.290) |
| 울산         | 0.124<br>(0.208)    | -0.145<br>(0.539)   | 0.343<br>(0.246)   |
| 경기         | 0.153<br>(0.131)    | 0.452<br>(0.332)    | 0.142<br>(0.153)   |
| 강원         | 0.236<br>(0.289)    | 0.916<br>(0.644)    | -0.115<br>(0.378)  |
| 충북         | 0.177<br>(0.246)    | -0.683<br>(0.697)   | 0.430<br>(0.285)   |
| 충남         | 0.364<br>(0.239)    | 0.511<br>(0.548)    | 0.539*<br>(0.306)  |
| 전북         | 0.104<br>(0.213)    | 0.464<br>(0.555)    | -0.0135<br>(0.248) |
| 전남         | -0.473<br>(0.303)   | -                   | -0.363<br>(0.323)  |
| 경북         | 0.278<br>(0.235)    | 0.300<br>(0.873)    | 0.349<br>(0.253)   |
| 경남         | 0.253<br>(0.156)    | 0.477<br>(0.382)    | 0.425**<br>(0.189) |
| 상수항        | 1.020*<br>(0.565)   | 4.964***<br>(1.419) | 0.0803<br>(0.673)  |
| 총 관측치수     | 2,677               | 758                 | 1,909              |
| 패널 개인 표본수  | 1,046               | 347                 | 692                |

괄호는 표준오차

\*\*\*  $p < 0.01$ , \*\*  $p < 0.05$ , \*  $p < 0.1$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해 니트와 저임금 결정식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이 역시 금융위기 이후 추정식 결과와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함정성은 여전히 발견되나, 전기 저임금 경험→ 현재 니트 가능성 강화 방향의 함정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도 과거 니트 경험→ 현재 저임금 가능성 강화 방향의 상태의존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에 낮은 임금을 경험한 것이 현재의 낮은 임금 가능성을 높이는 상태의존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니트 ↔ 저임금 상태의존 가능성은 낮으나 과거의 니트 경험이 저임금 일자리 반복으로 이어지는 방식의 상태의존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rho\_alph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니트-저임금 반복현상이 개인의 특성에 기인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I-25 2003-2008년 자료를 이용한 bivariate RE Probit

|                      | (1)<br>현재 니트결정식       | (2)<br>현재 저임금 결정식     |
|----------------------|-----------------------|-----------------------|
| 전기 니트여부              | 1.028***<br>(0.0966)  | 0.627***<br>(0.145)   |
| 전기 저임금여부             | -0.316***<br>(0.117)  | 0.559***<br>(0.135)   |
| 고졸(기준 : 고졸미만)        | -0.191*<br>(0.102)    | -0.393***<br>(0.133)  |
| 전문대졸                 | 0.0634<br>(0.117)     | -0.826***<br>(0.175)  |
| 대졸이상                 | 0.164<br>(0.317)      | -7.234<br>(851.7)     |
| 기혼 유배우(기준 : 미혼, 무배우) | 0.798***<br>(0.108)   | -0.0115<br>(0.168)    |
| 성별(여성=1)             | 0.0329<br>(0.0895)    | 0.247*<br>(0.128)     |
| 연령                   | -0.143***<br>(0.0540) | -0.272***<br>(0.0766) |

|                        | (1)      | (2)        |
|------------------------|----------|------------|
|                        | 현재 니트결정식 | 현재 저임금 결정식 |
| 직업훈련                   | -0.365*  | -0.259     |
|                        | (0.219)  | (0.288)    |
| 아버지 학력 - 고졸(기준: 고졸 미만) | -0.0788  | -0.249**   |
|                        | (0.0874) | (0.121)    |
| 아버지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00500  | -0.445**   |
|                        | (0.130)  | (0.204)    |
| 저임금(초기)                | -0.0713  | 0.322**    |
|                        | (0.123)  | (0.152)    |
| 니트(초기)                 | 0.623*** | 0.684***   |
|                        | (0.124)  | (0.184)    |
| 상수항                    | 1.197**  | 2.658***   |
|                        | (0.560)  | (0.850)    |
| alpha_N                | 0.481*** |            |
|                        | (0.128)  |            |
| alpha_L                |          | 0.792***   |
|                        |          | (0.253)    |
| rho_alpha              | 0.686*** |            |
|                        | (0.181)  |            |
| 총관측치수                  | 2,677    | 2,677      |

괄호는 표준오차

\*\*\*  $p < 0.01$ , \*\*  $p < 0.05$ , \*  $p < 0.1$

마지막으로,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해 니트와 비니트-비임금 결정식을 동시에 추정해 보았다. 이 모형에서는 각급학교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취업이다. 니트와 비니트-비취업은 상태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은 대졸에 관련한 반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니트일 가능성이 낮으나,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높을 가능성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은 니트 가능

성이 높으나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만 대상으로 하므로, 비니트-비취업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 시험준비 등을 위한 학원통학이 포함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높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다. 비니트-비취업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니트 가능성과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추후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나, 이 모형이 연령과 잔차의 상관관계를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면 니트 상태에 처한 개인이 연령이 높아진다고 니트 상태를 빠져나올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책 개입 필요성을 보여준다. 직업훈련 경험은 니트,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니트 가능성은 낮추고,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미관측 특성 측면에서 보면 니트일 가능성이 높은 개인은 비니트-비취업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졸, 아버지 교육수준, 개인 미관측 특성 세 가지 결과를 보면 니트는 좀 더 비대졸, 아버지 교육수준 낮음, 비니트-비취업은 좀 더 대졸, 아버지 교육수준 높음에서 관찰되며 미관측 특성에서 봐도 이 두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상태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I-26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한 현재 니트 및 비니트-비취업 간 bivariate RE Probit

|               | (1)                   | (2)                 |
|---------------|-----------------------|---------------------|
|               | 현재 니트결정식              | 현재 비니트-비취업 결정식      |
| 전기 니트여부       | 1.600***<br>(0.0793)  | 1.056***<br>(0.188) |
| 전기 비니트-비취업 여부 | 1.254***<br>(0.0925)  | 1.353***<br>(0.189) |
| 고졸(기준: 고졸미만)  | -0.278***<br>(0.0846) | -0.148<br>(0.203)   |

|                        | (1)                  | (2)                  |
|------------------------|----------------------|----------------------|
|                        | 현재 니트결정식             | 현재 비니트-비취업 결정식       |
| 전문대졸                   | -0.146<br>(0.0996)   | -0.0352<br>(0.251)   |
| 대졸이상                   | -1.107***<br>(0.360) | 0.226<br>(0.511)     |
| 성별(여성=1)               | 0.0743<br>(0.0673)   | -0.330**<br>(0.156)  |
| 연령                     | 0.0680*<br>(0.0390)  | 0.235***<br>(0.0863) |
| 직업훈련                   | -0.685**<br>(0.325)  | -1.089**<br>(0.509)  |
| 아버지 학력 - 고졸(기준: 고졸 미만) | -0.0104<br>(0.0748)  | 0.303<br>(0.197)     |
| 아버지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203**<br>(0.0966) | 0.452**<br>(0.230)   |
| 니트(초기)                 | 0.334***<br>(0.112)  | 0.0564<br>(0.315)    |
| 비니트-비취업(초기)            | 0.114<br>(0.108)     | 0.222<br>(0.246)     |
| 상수항                    | -0.840*<br>(0.485)   | 1.339<br>(1.148)     |
| alpha_N                | -1.804*<br>(0.963)   |                      |
| alpha_L                |                      | -0.703*<br>(0.421)   |
| rho_alpha              | -0.892<br>(2.181)    |                      |
| 총관측치수                  | 2,541                | 2,541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비니트-비취업은 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 통학 같은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개인 특성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이 두 상태는 일단 빠지면 탈출하기 어렵고 두 상태를 서로 오가게 만드는 방향의 상태의존이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니트 진입과 탈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니트 진입의 측면에서 보면 2016년 니트 청년은 지난해에도 절반정도는 니트였고, 1/3 정도는 지난해 비니트-비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1/5 정도는 취업상태에 있었다. 장기 시계열로 봐도 니트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년도 니트 상태에서 현재 니트 상태로의 이행은 50% 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니트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니트 상태 탈출의 측면에서 보면 2015년에 니트였던 청년은 다음해에도 60% 내외가 니트를 탈출하지 못했으며, 취업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비중은 약 30%, 나머지 10% 정도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비니트-비취업 비경활인구로 이동했다. 장기추이로 보더라도 60% 내외가 1년 내에는 니트를 탈출하지 못하며 취업탈출은 20% 후반~30% 내외 정도의 탈출률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금융위기 이후 니트 유지율이 다소 증가하며, 여성은 최근들어 낮은 모습이다. 남성은 청년노동시장의 어려움과 고시 등 시험준비 위주 취업준비 패턴 반영 등으로, 여성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강화되는 추세가 워낙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각급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청년 중 니트의 비중은 고졸 중에 제일 높고, 대졸과 전문대졸은 크게 차이하지 않는 정도를 보인다. 다만, 남성에 한정해 보면 금융위기 이후 고졸보다 대졸의 니트 비중이 낮은 이유는 대졸의 취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졸 중 비니트-비취업 비중이 높아진 나타난 현상으로, 대졸의 경우 구직활동에서 대기업 스펙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위한 학원 통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은 고졸>전문대졸≒대졸

순으로 니트 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과 전문대졸의 수준이 비슷한 것은 대졸은 비니트-비취업 경유형 니트 진출입이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활발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전 연도의 니트 경험이 현재의 니트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함정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다른 경우보다 전문대졸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졸 중 남성의 니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나이가 들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아져 노동시장 정착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취업률이 올라가는 현실을 반영했다. 직업훈련은 니트가 될 가능성을 낮추고 취업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효과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정배경 중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여성의 니트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은 보여주었고 이 역시 유의한 통계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형과 시기에 관계없이 대체로 관찰되었다. 다만, 모형 내에 저임금 취업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니트에 대한 학력의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뚜렷해지는 차이가 있다.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니트 가능성이 낮으나, 전문대졸은 높고, 대졸 이상은 다시 니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낮은 임금을 고려하여 니트 상태와 저임금 상태 간 상태의존성을 추정하면, 전기 저임금 경험은 현재 니트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취업상태에 들어오면 니트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반대 결과는 성립하지 않았다. 과거의 니트 상태 경험은 현재의 낮은 임금 상태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태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고려할 때 저임금 상태와 니트 상태의 반복 함정 가능성은



낮으나, 니트 상태의 경험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 이행 가능성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저임금일 가능성도 높은지 개인 미관찰 특성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개인 특성 측면에서는 니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임금으로 취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니트 상태와 저임금 상태 간의 반복경험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상태의존성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적인 특성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직업훈련과 같이 개인의 취약한 특성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니트나 저임금의 반복 경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니트와 비니트-비취업을 동태적 모형을 통해 동시추정하면 개인 특성 측면에서는 본인 고학력, 부모 고학력일 경우 비니트-비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니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미관찰 특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상태에 빠지는 개인 특성이 반대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상태의존 측면에서는 니트와 비니트-비취업 경험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가 있었다. 일단 둘 중 한 상태에 빠지면 취업 보다는 두 상태를 오갈 가능성이 높아지나, 개인 특성 면에서는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집단의 구직활동 경로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모형에서는 다른 모형에서와 달리 연령이 높아져도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도 있었다. 이 모형의 어떤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는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하나, 청년 시기를 벗어나면 니트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한편, 니트 규모가 큰 우리나라 특성상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이 광범하게 집행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대책은 대체로 실업 청년을 일단 일자리로 밀어 넣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과거의 니트 경험이 현재의 니트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니트 함정성을 끊어주는 대책으로 적절성을 가지는 한편, 과거의 니트 경험이 저임금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저임금 취업 경험은 저임금 일자리를 맴도는 저임금 함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 방향이다. 향후의 대책은 니트 경험이 저임금 취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저임금 일자리들에 갇힐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취업 후 경력관리로도 정부의 지원정책 시야가 넓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속 조건부였던 과거와 달리 일회에 한해 이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경력관리란 측면에서 보면 더 잘 매치된 일자리로 이직하도록 돕는 것은 좋은 정책 방향이지 나쁜 정책방향이 아니란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정책도 니트 경험이 긴 청년구직자에게는 6개월을 넘어서 취업 이후에도 경력관리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실제 니트 경험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를 맴돌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일 것으로 보인다.

#### 4. 요약 및 시사점<sup>11)</sup>

이 장에서는 청년 니트의 실태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청년 니트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2018년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았다. 이어서 청년 니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2차 분석을 통해 청년 니트의 진입 및 탈출 요인을 분석하였다.

청년 니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중이

---

11)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에 비해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청년 니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대졸 니트를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처럼 교육과 훈련 경험이 부족한 고교 졸업자나 중퇴자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업 니트보다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많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시행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니트를 줄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 보다 치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청년 니트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어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유형별로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대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니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년 니트의 유형별 이질성은 취업준비형 니트와 자발적선택형 니트, 그리고 가사·돌봄·육아형 니트, 구직회피·휴식형 니트별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1년 이상의 장기 니트가 많다는 것 역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1대 1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적인 취업연계 이전에 이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사업 종료이후에도 사후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 유형별로 실태와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자발적 선택형은 니트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꿈을 추구하는 경우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유형에 포함된 경우라도 하나의 정책 집단으로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개별 대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구직회피·휴식형은 포기와 회피가 시작된 시점이 학생 신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진로선택 때문으로 학교에 다닐 때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취업·진학준비형은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접근하되 지원은 공정하게 적용은 엄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가사·육아형은 육아와 같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재취업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현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 니트에 대한 진입 및 탈출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대신 취업을 한 후 청년 니트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의 경우 청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 중 니트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취업도 아닌 상태로도 이동하지 않은 경우(비니트 비취업 유형)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별로 볼 때 여성에 비해 남성 니트가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할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서 고졸자들이 청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신규 졸업자 니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청년 니트 추진에 있어서 학교 졸업 이전에 취업이나 진학,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두 번째로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은 청년 니트 진입 자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세 번째로 성별로 청년 니트 문제는 여성의 불이익보다는

양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니트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고졸 니트가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은 양적으로 대졸 니트가 많지만 고졸 니트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 니트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정책제언을 다룬 장에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제4장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 실태와 문제점

- 1.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2.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문제점
- 3.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문제점
- 4. 요약 및 시사점



## 1.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sup>12)</sup>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 정책에 대한 실태를 법률, 국정전략과 과제, 정책사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절에서는 청년 니트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 국회에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당 간에 심사와 공청회, 의결을 거쳐 2018년 5월에 청년기본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 니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8조의 4에 제시하고 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의 범위에 청년 니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취업애로청년을 ① 고졸 이하 실업자,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 청소년,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상 훈련대상(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취업대상자나 여성가장,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등), ④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⑤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하고 있지 않은 취업애로 청년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12)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3조<br>(국가 및 지방자치<br>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8조의4<br>(취업에 어려움을<br>겪는 청년에 대한<br>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p>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 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b>대통령령</b>으로 정한다. <b>(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b>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p>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여기에서 ⑤는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의미하는 청년 니트와 정의 상 동일한 대상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청년 니트는 취업애로청년 중 하나로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약계층 지원 대상 중 니트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니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직업훈련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 대상인 니트족은 수혜자가 100명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데 이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니트족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니트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만 대상자로 삼고 있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에 직업훈련 지원 대상으로 제시한 특별지원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특별지원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10대를 청소년으로 생각하지만 이 법률의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20대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15세부터 18세가 중복되는 연령이다.

특별지원 청소년은 동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특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을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다(국가법령정보시스템, 2018).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지칭하며 지원의 내용은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생활이나, 학업, 의료, 활동지원 등 삶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형태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기청소년이어야 하며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르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자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청년 니트는 가정이나 학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률의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표 IV-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2조<br>(정의)                           |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 제9조<br>(지역사회 청소년<br>통합지원체계의<br>구축·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제13조<br>(상담 및 교육)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4조<br>(위기청소년<br>특별지원)               |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p> <p>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b>대통령령</b>으로 정한다.</p> <p><b>(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b></p> <p>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li> <l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li> <li>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12. 30.))</p> |

| 조항                      | 내용                                                                                                                                                                                                                                                                                                                                                                                                                                                                                                                                                                                                                                                                                                                                                                            |
|-------------------------|-------------------------------------------------------------------------------------------------------------------------------------------------------------------------------------------------------------------------------------------------------------------------------------------------------------------------------------------------------------------------------------------------------------------------------------------------------------------------------------------------------------------------------------------------------------------------------------------------------------------------------------------------------------------------------------------------------------------------------------------------------------------------------|
| 제14조<br>(위기청소년<br>특별지원) | <p><b>(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 가족부고시 제2015-77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li> </ul> </li> <li>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3. 재검토 기한</li> <li>○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li> </ul> </li> </ol>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표 IV-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2조<br>(정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이란 <b>「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b>을 말한다.</li> <li>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li> <li>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li> <li>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li> </ol> </li> </ol> <p><b>(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li> </ol> |

| 조항                          | 내용                                                                                                                                                                                                                            |
|-----------------------------|-------------------------------------------------------------------------------------------------------------------------------------------------------------------------------------------------------------------------------|
| 제3조<br>(국가와 지방자치<br>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8조<br>(상담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 제9조<br>(교육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br>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br>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br>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
| 제10조<br>(직업체험 및<br>취업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br>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br>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br>3. 직업소개 및 관리<br>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 제11조<br>(자립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직업훈련에 국한되어 있으나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범위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고용문제에 국한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처럼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24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법률의 성격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이므로 지원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곧, 학교를 졸업한 24세 이하 청소년 혹은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중 대부분은 고졸 미진학자들이다. 이 법률 역시 대상 중심 법률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은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4 아동복지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3조<br>(정의)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제37조<br>(취약계층<br>아동에 대한<br>통합서비스<br>지원)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p> <p><b>(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b></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li> <li>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li> </ol> |
| 제38조<br>(자립지원)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li> <li>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li> <li>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li> <li>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li> </ol>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표 IV-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12조<br>(실업자등에<br>대한 직업능력<br>개발훈련<br>지원 등)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업자</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삭제&lt;2010. 5. 31.&gt;</li> <li>4. 삭제&lt;2010. 5. 31.&gt;</li> <li>5. 삭제&lt;2010. 5. 31.&gt;</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p><b>(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b></p> <p>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li> <li>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li> <li>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li> </ol> </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li> <li>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li> <li>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li> <li>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li> </ol> </li> <li>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li> </ol> |
|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범위를 다룰 때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아동복지법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식과는 달리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청소년 관련법과 마찬가지로 15세에서 18세 미만이 중복된다. 이 법률에서 취약계층은 소득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자녀이거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인 경우나 각종 위탁보호와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시설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사한 인접 연령대인 아동, 청소년, 청년이 중복되어 법률상 용어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어떤 형태로든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률에서는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성가장,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청소년 등이다. 직업안정법 역시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 신규 취업자, 신체 및 정신장애자, 취업을 위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표 IV-6 직업안정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3조<br>(정부의 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br>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br>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br>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br>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br>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br>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br>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



| 조항             | 내용                                                                                                                                                                                                                                               |
|----------------|--------------------------------------------------------------------------------------------------------------------------------------------------------------------------------------------------------------------------------------------------|
| 제14조<br>(직업지도)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 지도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li> <li>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li> <li>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li> </ol>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표 IV-7 진로교육법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

| 조항                         | 내용                                                                                                                                                                                                                                                                                       |
|----------------------------|------------------------------------------------------------------------------------------------------------------------------------------------------------------------------------------------------------------------------------------------------------------------------------------|
| 제1조<br>(목적)                |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진로교육법 역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 니트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학생에게만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법의 조항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V-8 청년기본법안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6)

| 법안            | 의안번호                   | 조항                                                                                                                                                                                                                                                                                                      |
|---------------|------------------------|---------------------------------------------------------------------------------------------------------------------------------------------------------------------------------------------------------------------------------------------------------------------------------------------------------|
| 신보라의원<br>대표발의 | 2000024<br>(2016.5.30) | 제19조(고용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외·부적응·무직자 청년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4조(심리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부적응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박홍근의원<br>대표발의 | 2001620<br>(2016.8.17) | 제17조(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소외·부적응자 및 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청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복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18조(고용촉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등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2조(청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수당(이하 “청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 이원욱의원<br>대표발의 | 2001778<br>(2016.8.24) | 제18조(능력개발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진학 청년, 취업준비생,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청년 등의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br>제19조(고용촉진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소외·부적응자, 재소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소외 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청년 등”이라 한다) 등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4조(복지증진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김해영의원<br>대표발의 | 2004070<br>(2016.12.2) | 제14조(고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제15조(능력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을 개발하고 체력·인성·지성·사물에 대한 비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표 IV-9 청년기본법안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7)

| 법안            | 의안번호                   | 조항                                                                                                                                                                                                                                                                                                                                                                                                                                                                     |
|---------------|------------------------|------------------------------------------------------------------------------------------------------------------------------------------------------------------------------------------------------------------------------------------------------------------------------------------------------------------------------------------------------------------------------------------------------------------------------------------------------------------------|
| 박주민의원<br>대표발의 | 2006739<br>(2017.4.13) | 제19조(능력개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미취업자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제20조(복지증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재소자, 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에 대한 복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1조(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의 촉진을 위해 청년미취업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7조(청년지원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강창일의원<br>대표발의 | 2007738<br>(2017.6.30) | 제15조(고용촉진) ③ 저소득·저학력자, 소외·부적응자,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장애를 가진 자, 재소자, 장기 미취업자, 1년 미만의 취업경력자 등 취약·소외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계층 청년”이라 한다)의 우선적인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16조(능력개발 및 교육·연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제17조(복지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하여 주거의 안정, 생활의 안정, 생활환경의 개선 및 주거수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에게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현재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청년기본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법률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청년에 대해 다른 대상중심 정책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가 2016년

개원한 이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정당 간의 협의로 마련된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까지 총 8개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청년 니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8개 법안 중에서 청년 니트를 특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다. 다만, 정책 지원 내용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큰 틀에서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년 고용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에 취약 혹은 위험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비롯하여 박홍근 의원과 이원욱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 법안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에 이른다. 특히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을 “저소득·저학력자, 소외·부적응자,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장애를 가진 자, 재소자, 장기 미취업자, 1년 미만의 취업경력자” 등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8). 그런데 정당 간에 협의안인 국회 청년미래특위 법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년고용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에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두 번째로 청년 복지 정책을 다룬 조항들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17조에는 “저소득, 저학력, 소외·부적응자 및 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 방안 마련을 의무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8). 이처럼 청년 복지 정책에 취약, 위험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외에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이다. 정당 간 협의안인 국회 청년미래특위 법안에서도 청년 복지증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청년 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능력개발, 심리상담 등에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일부 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청년 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국회 청년미래특위 법안에서는 청년 교육격차 해소라는 맥락에서 관련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표 IV-10 청년기본법안의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조항(2018)

| 법안                               | 의안번호                   | 조항                                                                                                                                                                                                                                                                                                                                                                                                             |
|----------------------------------|------------------------|----------------------------------------------------------------------------------------------------------------------------------------------------------------------------------------------------------------------------------------------------------------------------------------------------------------------------------------------------------------------------------------------------------------|
| 채이배의원<br>대표발의                    | 2011990<br>(2018.2.19) | 제16조(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환경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상시 점검 및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br>제18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에게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이명수의원<br>대표발의<br>(국회 청년<br>미래특위) | 2013684<br>(2018.5.21)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r>제21조(청년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환경 마련 등의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8월 16일 인출.

청년기본법안과 관련하여 청년 니트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른 법률처럼 법안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에 대상의 범위를 위임하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청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 현황과 문제점<sup>13)</sup>

청년 니트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에서 등장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이나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오민홍, 김대환, 박가열, 2013).

청년 니트는 취업성공패키지 I 과 II 중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I 에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특정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II는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청년 지원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청년 고용 대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명시적으로 청년 니트를 다룬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다만, 2017년판 고용노동부에서 OECD 통계 제출과 관련하여 청년 니트 통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7b).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은 출발 단계에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와 3.15 청년 일자리대책 등을 통해 향후 추진해 나갈 예정인 청년 니트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청년 관련 사업 현황 중에 청년 니트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았다. 청년 니트 대상 특화 정책은 없지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전에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으로 청년 니트 지원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니트를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다른 정책 과제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제의 정책 사업 중 하나인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

13)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1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 내 청년사업 현황

| 목표                 | 전략                             | 과제                                      | 주요내용                                                                                                                                                            | 주관<br>부처          |
|--------------------|--------------------------------|-----------------------------------------|-----------------------------------------------------------------------------------------------------------------------------------------------------------------|-------------------|
| 더불어<br>잘 사는<br>경제  | 소득 주도<br>성장을 위한<br>일자리 경제      | 성별·연령별<br>맞춤형 일자리<br>지원 강화              | <input type="checkbox"/> 청년고용의무제 확대<br><input type="checkbox"/> 추가고용장려금 신설<br><input type="checkbox"/> <b>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b><br>-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구직<br>촉진수당신설·지급     | 고용<br>노동부         |
|                    | 과학기술<br>발전이<br>선도하는<br>4차 산업혁명 | 청년 과학자와<br>기초연구 지원으로<br>과학기술 미래역량<br>확충 | <input type="checkbox"/> 연구 환경 개선<br><input type="checkbox"/>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 과학기술<br>정보<br>통신부 |
| 내 삶을<br>책임지는<br>국가 | 모두가<br>누리는<br>포용적<br>복지국가      | 청년과 신혼부부<br>주거 부담 경감                    |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br><input type="checkbox"/> 주거비용 지원 강화<br><input type="checkbox"/>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 국토<br>교통부         |
|                    | 국가가<br>책임지는<br>보육과 교육          | 미래세대 투자를<br>통한 저출산 극복                   | <input type="checkbox"/>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보건<br>복지부         |
|                    |                                | 유아에서 대학까지<br>교육의 공공성 강화                 | <input type="checkbox"/> 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 교육부               |
| 평화와<br>번영의<br>한반도  | 강한<br>안보와<br>책임국방              | 장병 인권 보장<br>및 복무 여건의<br>획기적 개선          | <input type="checkbox"/> <b>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b><br>- 공무원(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br>단계적 확대<br>- 고졸채용 공공기관·민간기업 유도<br><input type="checkbox"/>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 교육부               |
|                    |                                |                                         | <input type="checkbox"/> 병 봉급 인상<br><input type="checkbox"/>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br><input type="checkbox"/>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br><input type="checkbox"/> 인권 보호 강화 | 국방부               |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청년관련 과제 현황(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48에서 재인용).

\* 주: 굵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청년 니트 관련 정책과제임.

이어서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청년고용대책(이하 3.15 대책)에서 청년 니트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합동, 일자리위원회, 2018). 이 대책은 총 4대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② 창업 활성화, ③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④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이다.

|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                                                                              |                                                                                                 |
|---------------------------------------------------------------------------------------|------------------------------------------------------------------------------|-------------------------------------------------------------------------------------------------|
| ↑                                                                                     | ↑                                                                            | ↑                                                                                               |
| 「청년 구직자 일자리안전망」 구축                                                                    |                                                                              |                                                                                                 |
|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 청년 취업준비 지원                                                                   |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
|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br>② 고용증대세제<br>③ 청년내일채움공제<br>④ 취업청년 소득형성<br>근로소득세 면제<br>EITC<br>주거비 저리 융자 | ① 공정한 출발 지원<br>청년구직활동지원금<br>청년센터<br>투명채용 확산<br>② 취업역량강화 지원<br>직업능력개발<br>진로지원 | ① 취업연계 인프라 개선<br>취업성공패키지<br>워크넷<br>② 청년일자리사업 개선<br>③ 직장문화 개선<br>근로시간 단축<br>직장내 괴롭힘 근절<br>성희롱 근절 |
|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 일자리 대책.                                              |                                                                              |                                                                                                 |

그림 IV-1 청년 구직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

4대 분야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가 청년 니트와 연관성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소득이나 자산형성,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니트처럼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 이는 이번 대책이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재정투자와 세제 감면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청년 일자리대책보다는 같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방안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방안이다. 기업 및 청년 인센티브 패키지는 3.15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청년 취업준비 지원 강화 부분은 청년 니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명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센터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같지, 아니면 일본의 서포트 스테이션처럼 청년 니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센터로 같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허브기관을 구축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온라인청년센터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가 구축될지는 미지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2018년 9월 2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회의에서 3.15청년일자리대책 추진 현황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은 만18세에서 34세로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의 연령 정의를 그대로 따랐다. 이 연령대의 청년 중에서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로 생애에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 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 취업한 곳에 3개월 근속 시에 취업성공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제공하며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선정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인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하여 아쉬운 대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15세부터 청년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은 18세로 지원연령을

높여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이다. 15세에서 18세 미만은 주로 학업중단, 가출, 비행 등으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대상 연령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만15세에서 18세 미만의 정책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정책대상을 15세부터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방안(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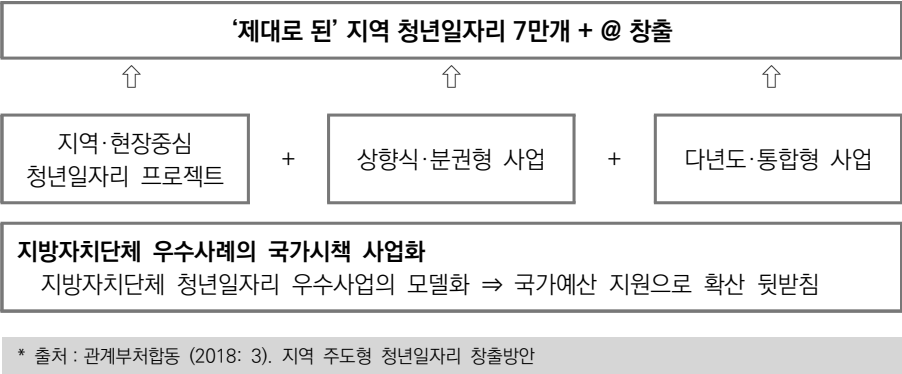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만 18~34세 졸업·종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br>(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 |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br>지원 중 취업 시 중단⇒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 지원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br>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 전달체계 | 지원금 지급 관리가 핵심 업무인 바, 고용센터에서 집행                                 |
| 지원절차 | 구직활동계획서 확인 후 선정<br>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원                     |
| 예산   | 19년 2,019억원(일반회계), 10만명 대상(취성패 3단계 수당 폐지)                      |

\* 출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18). 3.15 청년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청년TF 자료(내부자료). p4 재구성.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방안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안과 예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업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마치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각 회원국들의 청년 고용사업들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이다(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유럽연합(EU)에서는 청년보장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 지원사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 사업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안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안을 심의해 각 회원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안을 요청해 받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안 중에는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 사업의 모델이 된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시비 140억 원을 투입해 청년 니트를 포함한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취업자들이 급여를 지원받으면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의 일 경험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립 드림사업 등과 금융복지드림, 주거도와드림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V-2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방안**

이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총 1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표 IV-13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1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 원)

| 연번            | 유형    | 세부사업                     | 금액        |
|---------------|-------|--------------------------|-----------|
| 1             | 직접일자리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2,811     |
| 2             | 고용장려금 | 고용 창출 장려금                | 193,000   |
| 3             |       |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 27,087    |
| 4             |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 7,382     |
| 5             |       | 해외취업지원                   | 42,437    |
| 6             |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184,820   |
| 7             | 직업훈련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 365,255   |
| 8             |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지원         | 286,540   |
| 9             |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 70,003    |
| 10            |       |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 11,509    |
| 11            |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 131,674   |
| 12            |       | 인문특화 청년 취업아카데미           | 24,579    |
| 13            | 고용서비스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31,886    |
| 14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 패키지2(청년) | 179,614   |
| 15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 구직촉진수당   | 172,799   |
| 16            |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 19,185    |
| 고용노동부 총계(16개) |       |                          | 1,921,221 |

\* 출처: 고용노동부 (2018: 11-12). 청년일자리 업무 현황.

\* 주: 굵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청년 니트 관련 정책과제임.

이어서 산업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 5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로 창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니트와 연관성을 갖는 사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개 사업에 대해 6백 4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개 사업에 대해 8백 2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산업이나 지역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IV-14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2 산업 관련 부처

(단위 : 백만 원)

| 연번               | 유형    | 세부사업              | 금액      |
|------------------|-------|-------------------|---------|
| 1                | 직업훈련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 3,790   |
| 2                |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R&D) | 4,289   |
| 3                |       | 연수사업              | 18,598  |
| 4                | 고용서비스 |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1,644   |
| 5                | 창업지원  | 창업사업화지원           | 153,468 |
| 6                |       | 창업기업자금(융자)        | 130,000 |
| 7                |       | 창업선도대학            | 89,540  |
| 8                |       | 창업인프라지원           | 49,036  |
| 9                |       | 창업저변확대            | 56,223  |
| 10               |       | 창업성공패키지           | 54,000  |
| 중소벤처기업부 총계(10개)  |       |                   | 560,588 |
| 1                | 직접일자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5,709   |
| 2                | 직업훈련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 20,344  |
| 3                |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4,126   |
| 4                |       |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R&D)  | 7,552   |
| 5                |       |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 26,6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계(5개) |       |                   | 64,357  |
| 1                | 직업훈련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2,633   |
| 2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 80,110  |
| 산업통상자원부 총계(2개)   |       |                   | 82,743  |

\*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12). 청년일자리 업무 현황.

고용노동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11개 사업에 대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화와 스포츠 관련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청년 니트와 같은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는 3개 사업에 5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처들의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해외봉사단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등 일자리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IV-15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3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단위 : 백만 원)

| 연번              | 유형    | 세부사업                        | 금액      |
|-----------------|-------|-----------------------------|---------|
| 1               | 직접일자리 | 국민문화향유권확대                   | 31,472  |
| 2               |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99,530  |
| 3               |       | 박물관진흥지원                     | 3,357   |
| 4               |       |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35,336  |
| 5               |       | 예술인력육성2                     | 4,169   |
| 6               |       |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 7,734   |
| 7               |       | 초등학교스포츠클ubs배치지원             | 11,817  |
| 8               | 직업훈련  | MICE산업육성지원                  | 395     |
| 9               |       |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br>(관광전문인력육성) | 1,028   |
| 10              |       | 콘텐츠사업생태계조성<br>(구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 6,100   |
| 11              | 창업지원  |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 2,090   |
| 문화체육관광부 총계(11개) |       |                             | 203,028 |
| 1               | 직접일자리 |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12,251  |
| 2               | 고용장려금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28,601  |
| 3               | 창업지원  | 대학창업펀드                      | 15,000  |
| 교육부 총계(3개)      |       |                             | 55,852  |

\*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12). 청년일자리 업무 현황.

현재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 니트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정도이다.

표 IV-16 2018년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4 기타 부처

(단위 : 백만 원)

| 연번           | 유형    | 세부사업                    | 금액      |
|--------------|-------|-------------------------|---------|
| 1            | 직접일자리 |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 104,955 |
| 외교부 총계(1개)   |       |                         | 104,955 |
| 1            | 직접일자리 | 항공전문 인력양성               | 430     |
| 2            |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2,792   |
| 국토교통부 총계(2개) |       |                         | 3,222   |
| 1            | 직접일자리 |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해외인턴십지원     | 410     |
| 2            |       |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취업지원    | 930     |
| 농림축산식품부(2개)  |       |                         | 1,340   |
| 1            | 직접일자리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 1,806   |
| 농촌진흥청(1개)    |       |                         | 1,806   |
| 1            | 직업훈련  | 취업지원                    | 168     |
| 2            | 고용서비스 | 취업지원                    | 1,847   |
| 국가보훈처(2개)    |       |                         | 2,015   |
| 1            | 직접일자리 | 국제산림협력                  | 191     |
| 산림청(1개)      |       |                         | 191     |
| 1            | 직업훈련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3,357   |
| 여성가족부(1개)    |       |                         | 3,357   |
| 1            | 직접일자리 |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 5,792   |
| 행정안전부(1개)    |       |                         | 5,792   |
| 1            | 직업훈련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 1,281   |
| 2            |       |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인프라 구축(물산업)  | 810     |
| 환경부 총계(2개)   |       |                         | 2,081   |

\*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12). 청년일자리 업무 현황.

\* 주: 굵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청년 니트 관련 정책과제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하 취성패)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2010년이였다. 2011년 별도로 이루어지던 뉴스타트 사업이 취성패로 통합되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II 유형이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뉴스타트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4가지 유형을 통합하기도 했으며 2013년에 취성패 I과 취성패 II로 나누어져 2015년까지 운영되었다. 청년 니트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성패 II에 포함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취성패 I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2016년도에는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청년 취성패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취성패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전면 도입하기 이전에 청년 취성패의 3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 IV-17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발전 과정(2009~2013)

| 연도   | 정책대상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
| 2009 | 저소득층(차차상위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시범사업          | 저소득 대상의 시범사업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                               |
| 2010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 3단계 고용서비스     | 진로·경로 설정단계, 의욕·능력 증진 단계, 집중 취업알선 단계의 3단계로 관리                          |
| 2011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이 대상                            | I 유형          |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 고령층 뉴스타트 사업, 디딤돌 사업 흡수·통합                                |
|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등을 취성패로 통합                | II 유형         |                                                                       |
|      |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상태의 50세 이상 실업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구직자를 통합                 | III 유형        |                                                                       |
|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포함                                         | IV 유형         |                                                                       |
| 2012 | 기존 대상에서 장애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을 추가         | 단일 프로그램       | 청년과 장년층이 대상이던 II, III유형을 내일희망찾기사업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네 가지 유형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
| 2013 | 기존 대상에서 청장년층이 다시 포함되었고,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맞춤형기병,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를 추가 | 취성패 I (저소득층)  | 분리되었던 청장년층 대상 사업을 취성패로 다시 흡수,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 실시(9월)                  |
|      |                                                               | 취성패 II (청장년층) |                                                                       |

\* 출처 : 양지윤, 백광호, 최석현, 고희원 (2016: 12-15,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78-81에서 재인용)  
이병희, 김현중, 김혜원, 박혁 (2014: 7-9, 채창균, 최영섭 외, 2017: 78-81에서 재인용)



표 IV-18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발전 과정(2014~2018)

| 연도                | 정책대상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
| 2014              | -                       | 취성패 I  | 취성패 II를 취업중심형 프로세스로 개편                                                                                                                                                   |
|                   |                         | 취성패 II |                                                                                                                                                                          |
| 2015              | 기존 대상에 희망리본 프로젝트 대상자 추가 | 취성패 I  |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
|                   |                         | 취성패 II |                                                                                                                                                                          |
| 2016              | -                       | 취성패 I  | 청년고용문제의 흐름에 따라 청년층(취성패 II)을 따로 떼어내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 조건부 생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사전단계 의무화 적용 및 자활 경로 설정                                                                           |
|                   |                         | 취성패 II |                                                                                                                                                                          |
|                   |                         | 청년 취성패 |                                                                                                                                                                          |
| 2017<br>~<br>2018 | -                       | 취성패 I  | 미취업 청년층(18~34세, 소득무관)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 적용하고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br>1단계 : 진단·의욕제고<br>2단계 : 직업능력개발<br>3단계 : 취업알선<br>만 34세 이하 청년 취성패 3단계에 참여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 최대 3개월)을 지급 |
|                   |                         | 취성패 II |                                                                                                                                                                          |
|                   |                         | 청년 취성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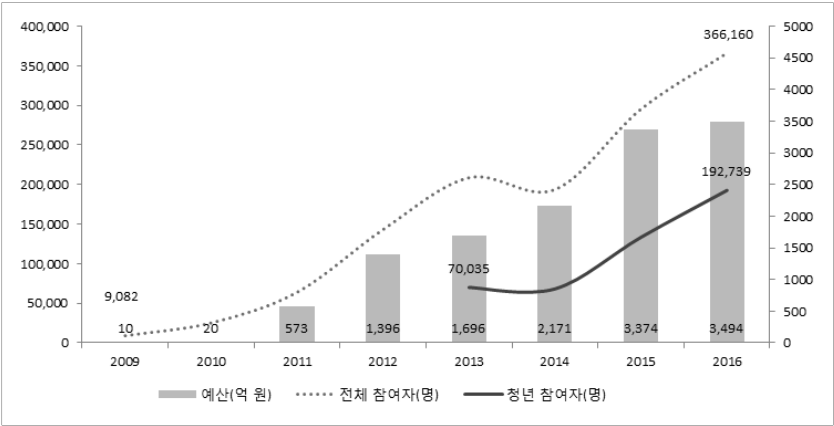
\* 출처 : 양지윤, 백광호 외 (2016: pp.12~15, 채창균, 최영섭 외, 2017: pp.78~81에서 재인용)  
이병희, 길현중 외 (2014: pp.7~9, 채창균, 최영섭 외, 2017: pp.78~81에서 재인용)  
고용노동부(2017b: pp.157~164)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진 취성패는 2016년부터 청년 취성패가 신설되면서 참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청년 참여 인원만 지난 4년 간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 사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변모하였다. II유형에 포함되는 청년 지원대상의 증가는 2014년 대졸 청년 지원 요건 완화(졸업 후 6개월 경과→졸업 직후)와 2015년 재학생(졸업 학년) 참여를 허용한 데 기인한다(이병희, 김혜원, 길현중, 오민홍, 2017: 51). 취성패 예산 역시 청년 고용 예산의 증액에 힘입어 지난 4년 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청년 니트의 참여 인원은 전체 청년 참여의 증가와는 달리 감소하였다. 청년 니트 참여자는 2014년 320명에서 2016년 81명으로 줄어들었다. 청년 니트가

전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받는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0.02%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니트가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온 데 따른 결과이자 니트 정의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한다.

청년 니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Ⅱ로 청년층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유형Ⅰ로 구분되어 왔다. 이처럼 청년이지만 청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주체가 고용센터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다시 민간위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바뀌면서 대상 발굴에 대한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쌓이지 않아 참여 인원이 감소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노동백서(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54에서 재인용).

그림 IV-3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참여 인원 및 예산 규모 추이(2009-2016)

다른 한편,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 자체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니트족은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간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사실상 장기 니트로 좁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자 적합도에 대한 문답표를 작성해 20점이 넘어야 니트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V-1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형에 따른 연도별 참여 인원

(단위: 명, %)

| 참여유형    |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Ⅰ<br>유형 | 기초수급자             |                    | 18,450  | 9.5  | 26,318  | 8.8  | 25,495  | 6.9  |
|         | 저소득층              |                    | 62,987  | 32.3 | 82,502  | 27.6 | 82,408  | 22.2 |
|         | 취업<br>취약계층        | 청년 니트족             | 320     | 0.16 | 180     | 0.06 | 81      | 0.02 |
|         |                   | 소계<br>(‘16년 니트 포함) | 28,218  | 14.5 | 28,353  | 9.5  | 29,896  | 8.1  |
|         | 실업급여 수급자 등        |                    | -       | -    | 3,777   | 1.1  | 11,343  | 3.1  |
|         | 소계                |                    | 109,655 | 56.2 | 140,550 | 47.1 | 149,142 | 40.2 |
| Ⅱ<br>유형 | 청년(‘14-15년 니트 포함) |                    | 67,389  | 34.5 | 133,562 | 44.7 | 193,351 | 52.2 |
|         | 중장년               |                    | 18,149  | 9.3  | 24,612  | 8.2  | 28,088  | 7.6  |
|         | 소계                |                    | 85,538  | 43.8 | 158,174 | 52.9 | 221,439 | 59.8 |
| 합계      |                   |                    | 195,193 | 100  | 298,724 | 100  | 370,581 | 100  |

\* 출처 : 이병희, 김혜원, 김현중, 오민홍(2017: 45)에서 인용, 청년 니트족 통계 결과는 양지윤, 백광호 외(2016: 71, 채창균, 최영섭 외, 2017: 87에서 재인용). 청년 니트족은 2010년부터 Ⅱ유형 청년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Ⅰ유형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됨.

현재 OECD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지난주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자를 제외한 청년으로 청년 니트를 정의해 볼 때 마치 다른 정책 대상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대졸 이상 미취업자나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청년 니트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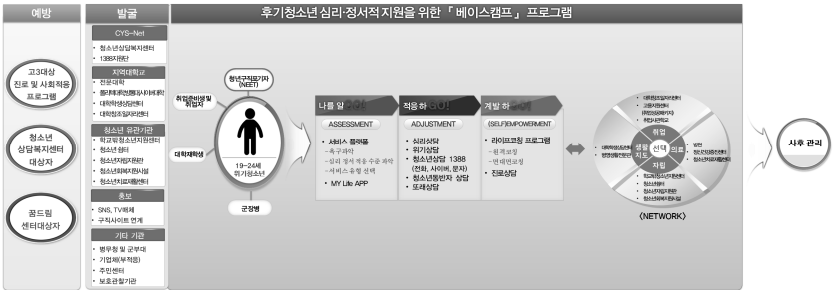
현재 중앙부처 중에서 명시적으로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인 또 다른 곳은 여성가족부이다. 국회 미래 청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여성가족부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모두 니트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청소년지원체계(CYS-Net)로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19세에서 24세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 하여 청년 니트나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이다.

표 IV-20 니트(NEET) 예방을 위한 후기 청소년 자립 지원(여성가족부)

| 구분                           | 사업 내용                                                                                                                                                                                             |
|------------------------------|---------------------------------------------------------------------------------------------------------------------------------------------------------------------------------------------------|
| 지역사회<br>청소년지원체계<br>(CYS-Net) | □ 지역 CYS-Net을 활용하여 무업(NEET) 및 은둔형 취약계층을 발굴, 청소년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강화<br>CYS-Net을 통해 지자체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활동 제공,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
| 청소년자립<br>지원관                 | □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후에도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통해 주거 지원<br>'18년 4개소 최초 국비지원,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자립지원의 플랫폼 으로 운영('18년 기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51.67억원, 청소년 자립 지원관 4.03억원                                        |
| 내일이룸<br>학교                   | □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 훈련 사업 내일이룸학교 운영<br>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훈련 과정' 운영, 훈련 수료 후 해당 기업으로 취업연계 지원<br>고용취약 계층(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대상특화형 과정 운영<br>훈련수료 청소년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취업 연계 지원(고용부 협업) |

\* 출처 : 여성가족부.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8: 5, 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51에서 재인용).



\* 출처 :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17: 53).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그림 IV-4 후기청소년 심리, 정서적 지원체계

후기 청소년 전담인력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17년에 제안(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17)한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해 이에 따라 19세에서 24세를 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따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후기청소년이라는 용어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고 24세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이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2018년부터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범단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훈련실적 현황

(단위 : 개소, 명, %)

|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계   |
|--------|-----|-----|-----|-----|-----|-----|-----|-----|-----|
| 훈련기관 수 | 3   | 4   | 5   | 5   | 6   | 8   | 9   | 16  | 56  |
| 모집인원   | 111 | 127 | 152 | 148 | 155 | 212 | 218 | -   | 905 |
| 수료인원   | 69  | 96  | 106 | 105 | 112 | 124 | 122 | -   | 734 |

\* 출처 : 여성가족부(2017: p.41).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방안 연구. 2017년과 2018년 결과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3/1/4/2>)에서 가져옴.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내일이룸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취업사관학교를 이관 받아 2017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출이나 비행, 범죄 등 위기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제공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업은 서비스제공시설이 20개에 미치지 못하며 지원대상이 200여 명으로 많지 않아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있는데다 위기청소년 전반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성과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훈련 수료 청소년을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                            |        | 인적자본투자     |                                         |       |
|----------------------------|--------|------------|-----------------------------------------|-------|
|                            |        | 없 음        | 약 함                                     | 강 함   |
| 시<br>장<br>친<br>화<br>고<br>용 | 약<br>함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직접 일자리 창출                               | 기본 교육 |
|                            | 강<br>함 | 근로 유인 재 강화 | 고용지원<br>· 취업 알선<br>· 구직프로그램<br>· 고용 보조금 | 직업 훈련 |

\* 출처 : 김준영, 정재현, 이상호, 김영용 (2015: p.18)에서 재인용.

그림 IV-5 노동시장정책 유형의 구분

현재 청년 니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들은 노동시장정책 유형 중에서 고용지원과 직업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년 니트라는 정책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원 규모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해외사례에서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청년 니트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0

### 3. 지방자치단체 청년 니트 정책 현황 및 문제점<sup>14)</sup>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취·창업 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015년 서울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이어졌으며, 2018년 2월에 인천이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마쳐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되었다(표 IV-22 참조). 각각의 청년기본조례들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기반 마련에 있다.

표 IV-22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청년 기본조례 목적

| 지역 | 조례 목적                                                                                           |
|----|-------------------------------------------------------------------------------------------------|
| 서울 |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부산 |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          |
| 대구 |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인천 |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광주 | 광주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 대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울산 | 울산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14) 이 절은 배상을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22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청년 기본조례 목적(계속)

| 지역 | 조례 목적                                                                                                 |
|----|-------------------------------------------------------------------------------------------------------|
| 세종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경기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강원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충북 |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충남 | 충청남도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 |
| 전북 |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전남 | 전라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경북 |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경남 |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제주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 중 서울과 광주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서울은 이와 함께 수도권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기본 조례를 2018년 3월에 추가로 제정하였다. 서울은 고용촉진과 함께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IV-23은 서울과 광주의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관련 기본조례의 주요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23 서울 및 광주의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관련 기본조례와 목적

| 지역 | 조례명            | 조례 목적                                                                                                                              |
|----|----------------|------------------------------------------------------------------------------------------------------------------------------------|
| 서울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                                         |
|    | 청년주거 기본 조례     |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함 |
| 광주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는 저마다 다양한 청년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 청년 과제의 실행 계획과 정책추진을 주 업무로 하는 전담 부서(예: 관, 과 등)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주 등 총 여덟 곳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24 청년 전담부서 설치한 8대 지방자치단체

| 지역 | 실·국 본부   | 과·관      |
|----|----------|----------|
| 서울 |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정책담당관  |
| 경기 | 보건복지국    | 청년복지정책과  |
| 대구 | 시민행복교육국  | 청년정책과    |
| 광주 | 자치행정국    | 청년정책과    |
| 대전 |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담당관  |
| 충북 | 행정국      | 청년지원과    |
| 전남 |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담당관  |
| 경북 | 일자리경제산업실 | 일자리청년정책관 |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lis.go.kr](http://www.elis.go.kr)에서 2018년 10월 15일 인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별개로 청년 고용 정책만을 전담하는 소관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경상남도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부서 내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 전담팀을 꾸려 지역의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현, 이윤주 외, 2017).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대부분은 청년실업에 대해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자 17명 중 자신의 5대 핵심공약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명시한 당선인은 총 4명이었다(표 IV-25 참조).

**표 IV-25 청년일자리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 지역 | 후보자/<br>소속정당   | 공약<br>순위 | 공약 내용                                                                                                                        |
|----|----------------|----------|------------------------------------------------------------------------------------------------------------------------------|
| 부산 | 오거돈/<br>더불어민주당 | 4순위      | 제목 : 청년 희망정책 프로젝트<br>- 부산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지원센터 설치<br>- 청년파란일자리 운영: 공공근로 예산 중 일부를 청년 혁신 일자리 기금으로 전환<br>-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확대 |
| 대구 | 권영진/<br>자유한국당  | 3순위      | 제목 : 청년희망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br>-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 일자리(청년수당, 청년희망적금), 주거(행복주택/기숙사), 문화(청년소셜벤처)<br>-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
| 강원 | 최문순/<br>더불어민주당 | 4순위      | 제목 :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br>- 청년 일자리 수당으로 청년 취업지원(수당 월60만원으로 두 배 확대)                                                         |
| 제주 | 원희룡/<br>무소속    | 3순위      |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br>-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립<br>- 단계별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38/38895.do?menuNo=200185>에서 9월29일 인출.

이밖에 청년주거문제를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대전과 충남 지자체 당선인을 포함하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 중 총 6명이 청년문제를 5대 핵심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핵심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선거 운동 당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당선자는 서울 박원순 시장, 인천 박남춘 시장, 광주 이용섭 시장, 경기 이재명 지사, 경남 김경수 지사 등이 있다(표 IV-26 참조).

표 IV-26 청년일자리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 지역 | 후보자/<br>소속정당   | 공약 내용                                                                                                                                                                                         |
|----|----------------|-----------------------------------------------------------------------------------------------------------------------------------------------------------------------------------------------|
| 서울 | 박원순/<br>더불어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미래기금조성</li> <li>- 서울시위원회 34세 미만 청년참여 15% 보장</li> <li>-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li> </ul>                                                           |
| 인천 | 박남춘/<br>더불어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인프라 확대</li> <li>- 중소기업 취업청년 위한 드림4 청년통장도입 : 연 2천명,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천만원 지원</li> <li>-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발행 :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li> </ul>                |
| 광주 | 이용섭/<br>더불어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참여</li> <li>- 청년벤처창업 지원확대</li> <li>- 구직채용 근속단계별 지원확대</li> <li>-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li> </ul>                                            |
| 경기 | 이재명/<br>더불어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생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하는 청년에게 1개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li> <li>- 주거 : 청년 주택우선 공급</li> </ul>                                                         |
| 경남 | 김경수/<br>더불어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무고용비율 5% 확대</li> <li>- 청년알바 임금체불 피해지원</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li> <li>- 경남청년 목돈마련 지원(내일채움공제 추가지원)</li> </ul>                            |
| 제주 | 원희룡/<br>무소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li> <li>-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 19-29세 청년 5,000명</li> <li>- 청년 2천명 취·창업훈련 기회 제공</li> <li>- 5배속 청년통장 확대 : 5년간 저축하면 5배 목돈 지원</li> </ul> |

\* 출처 : 청년유니온(2018)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정당별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대 주요 정당들은 모두 청년 관련 공약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 관련 공약을 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표 IV-27 참조).

표 IV-2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별 청년관련 공약

| 정당      | 공약 순위 | 공약 내용                                                                                                                                                                                                                                                                                                                                                                                                                                                                                                                                            |
|---------|-------|--------------------------------------------------------------------------------------------------------------------------------------------------------------------------------------------------------------------------------------------------------------------------------------------------------------------------------------------------------------------------------------------------------------------------------------------------------------------------------------------------------------------------------------------------|
| 더불어 민주당 | 1순위   | <b>제목 : 청년행복</b><br>1. 목표 :<br>①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br>②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 창출<br>2. 이행방법 :<br>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br>②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 자산형성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천만 원 자산형성) 신설<br>③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br>④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지원<br>⑤ 청년고용의 공정한 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2019년 6개월 50만원<br>⑥ 청년여성 '내일찾기센터(가칭)' 운영<br>⑦ 청년일자리 고용안정망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령별 차등화 폐지로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br>⑧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br>⑨ 고졸 인력 양성 및 고졸재직자의 선취업후진학 활성화<br>⑩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 공공쉐어하우스 및 공적임대주택 확대 |
| 자유한국당   | 9순위   | <b>제목 :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b><br>1. 목표: ① 정부차원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로 체계적 청년정책 마련 :<br>② 청년 주거·학비 안정 지원<br>③ 청년 취업·창업 지원<br>2. 이행방법 :<br>①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 모든 부처 및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br>② 청년 주거복지 확대 : 청년안심주택,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br>③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무이자 전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br>④ 청년 대상 국내탐방 지원 '꿈찾아발굴단' : 국내 관광 활성화                                                                                                                                                                                                                    |

| 정당        | 공약<br>순위 | 공약 내용                                                                                                                                                                                                                                                                                                                                                                                                                                                                                                                                                                                                       |
|-----------|----------|-------------------------------------------------------------------------------------------------------------------------------------------------------------------------------------------------------------------------------------------------------------------------------------------------------------------------------------------------------------------------------------------------------------------------------------------------------------------------------------------------------------------------------------------------------------------------------------------------------------|
| 정의당       | 1순위      | <p><b>제목 :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b></p> <p>1. 목표 : 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 보장; ②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br/>③ 청년 기본생활 보장</p> <p>2. 이행방법 :</p> <p>①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 만19세 청년 대상 배당금 200~500만원 지급, 소득상위10% 지급 없음.</p> <p>②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기획균형채용제 도입</p> <p>③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p> <p>④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 : 부당노동행위 대책반 구성; 지자체에서 '채불임금' 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p> <p>⑤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미수혜 청년 대상;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 대상자에게 월 60만원 지급되도록 동 금액과 청년구직수당 간 차액 광역시도가 지원</p> <p>⑥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p> <p>⑦ 청년 참정권 확대와 청년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 선거권 만 18세 하향; 피선거권 연령 하향(대통령 40→35세, 국회의원 25세→18세)</p> |
| 바른<br>미래당 | 4순위      | <p><b>제목 :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b></p> <p>1. 목표 : 비싼 전월세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기피,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주거복지 차원의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p> <p>2. 이행방법 :</p> <p>①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 5년 한시 제공</p> <p>②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p>                                                                                                                                                                                                                                                                                                                                                         |
| 민주<br>평화당 | 3순위      | <p><b>제목 : 청년이 미래다</b></p> <p>1. 목표 : ① 청년기본소득 년 1천만원씩 5년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br/>② 대학등록금 대출 무이자로 하여 사회초년생 부담 경감</p> <p>2. 이행방법 :</p> <p>① 소득과 재산 및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적 지급하는 절충형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공; 18~34세 청년들에게 5년 개인 생애 설계 필요에 따라 탄력적 지원</p> <p>②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이자화</p>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7697.do?menuNo=200035>에서 9월29일 인출.

다음은 청년 니트 정책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의 청년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핀 내용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는 청년보장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청년지원정책의 대표성이 큰 곳이며, 대구는 앞서 살핀 것처럼 청년보장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2019년부터 시행하는 대표적 후발 지자체이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장으로 재임당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이재명 지사가 2018년 6월 취임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 서울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개년 계획의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허브,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삼각운영 체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청년허브가 청년정책 관련 연구, 청년 혁신활동 지원 업무, 그리고 청년 대상 교육 및 교류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들 스스로 청년정책을 모색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과 일자리정책담당관이다.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① 서울형 청년보장의 전반적인 정책과 ②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며,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내 청년일자리팀에서는 ① 청년고용현황 관리, ② 일자리카페 운영 지원, ③ 취업날개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교육, 공간대관 지원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거주 300여명의 청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① 설자리(활동), ② 일자리(일), ③ 살자리(주거, 부채), ④ 놀자리(활동공간)로 구성된 4대 분야에 20가지 청년지원정책을 2020년까지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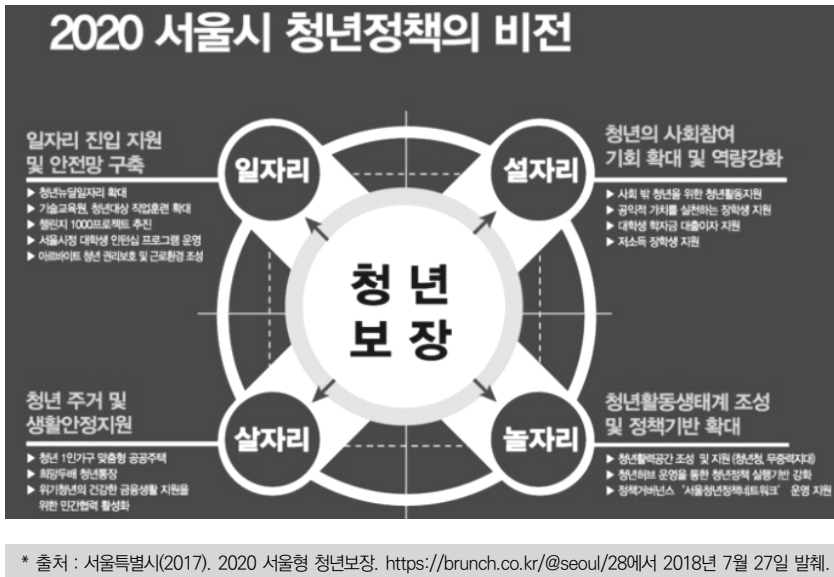


그림 IV-6 2020 서울시 청년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자리 영역으로는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년 니트 정책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영역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뉴딜일자리(일터기반학습),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등이 있다. 살자리는 청년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역세권청년임대주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하우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놀자리 영역의 사업으로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기반 강화를 목표로 청년허브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4대 영역에 걸쳐 총 20개의 청년정책 중

뉴딜일자리,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등 현재 5개의 핵심전략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개 청년 지원 사업들 중 청년 니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설자리 영역의 청년활동지원과 일자리 영역의 청년 뉴딜일자리이다.

| 청년정책 20 (핵심전략 사업 5개 / 일반사업 15개)                                                                           |                                                                                                                                                                                                                                          |                                                                                                                                                                                                                                                                     |                                                                                                    |
|-----------------------------------------------------------------------------------------------------------|------------------------------------------------------------------------------------------------------------------------------------------------------------------------------------------------------------------------------------------|---------------------------------------------------------------------------------------------------------------------------------------------------------------------------------------------------------------------------------------------------------------------|----------------------------------------------------------------------------------------------------|
| 설자리 4개 사업                                                                                                 | 일자리 9개 사업                                                                                                                                                                                                                                | 살자리 4개 사업                                                                                                                                                                                                                                                           | 놀자리 3개 사업                                                                                          |
| <b>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b><br><b>청년활동지원 (신규)</b><br>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br>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br>저소득 장학생 지원 | <b>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b><br><b>청년 뉴딜일자리 확대</b><br>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br>청년지 1000 프로젝트 (청년창업 지원)<br>서울시장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br>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br>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신규)<br>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br>신진 유망 예술가 지원<br>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 <b>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b><br><b>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신규)</b><br>세어형 가습사 모델 개발 및 공급<br>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br>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br>빈집 살리기 프로젝트<br>청년과 아르신 주거 공유 (연세평생재단, 서울종합청년센터)<br>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공급<br><b>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b><br>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신규)<br>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 | <b>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b><br><b>청년활동공간 조성 · 지원</b><br>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br>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

\* 출처 : 서울특별시(2017). 2020 서울형 청년보장. <https://brunch.co.kr/@seoul/28>에서 발췌.

그림 IV-7 2020 서울시 청년정책 20

### (1) 청년활동지원

소위 ‘청년수당’으로 일컬어지는 본 사업은 2017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1차 평가를 거쳐 청년지원자가 제시한 활동목표와 계획이 본 사업취지에 부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청년 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되어 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에 있으면 또 다시 수당 신청을 할 수 없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실업급여수급자,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150%이상(3인가구)인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2017년 5,000명에서 2018년 7,000명으로 늘어났으나 서울시 거주 청년들 중 청년수당의 수혜자가 여전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한 번의 지원 혜택 경험에 있으면 다시 구직을 위한 활동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대학교 재학생과는 달리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자격을 주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현재 서울시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비로 총 200억의 예산이 마련되었으나 제한된 서울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이중지원 등의 문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청년 뉴딜일자리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및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 경험 및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은 2018년 현재 문화·복지·환경·교육 등 250 종류의 일자리에 4,70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임시직이나 단순 노무직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뉴딜일자리란 공공부문 현장 등에서 일경험과 취업역량을 쌓은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경력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간은 최대 23개월이며 하루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참가자의 여건에 맞춰 근무가 가능토록 하였다.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9,220원을 적용하여 월 급여는 최대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부터는 (사)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 등 9개의 민간기업협회와 협력해 마케팅, ICT, 인적자원개발 등

11개 분야에 300여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맞춤형 새로운 뉴딜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사전에 기업협회 회원사들의 정규직 채용 수요를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 이들에게 약 2개월간의 모집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수료자와 회원사간의 인턴매칭행사를 통해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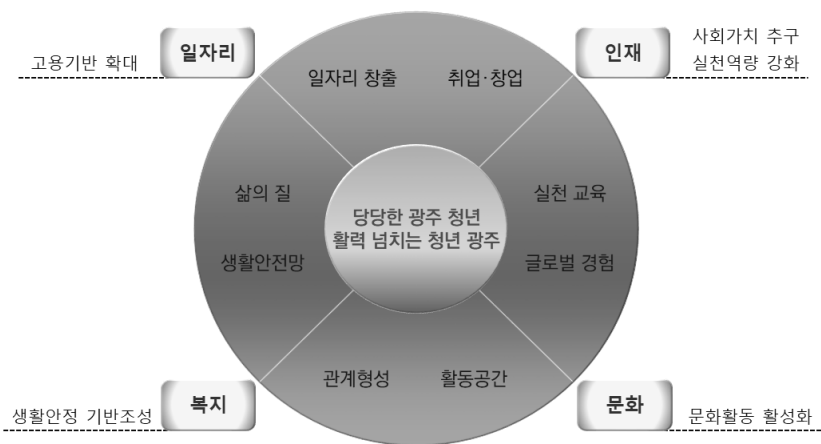
청년 뉴딜일자리의 성공여부는 청년 구직자가 민간일자리 취업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공공일자리를 통해 해당 분야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를 위하여 초기상담을 통한 청년 구직자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파악하고 공공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 퇴직한 경우, 청년 구직자 개인의 시간과 세금의 낭비이며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또 다른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터와 청년취업자 간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에도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100개의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① 개인학습 공간 대여, ② 면접용 정장대여, 메이크업 및 헤어서비스, 프로필 사진촬영, ③ 일자리알선, 면접코칭,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2) 광주

광주시는 수도권으로의 전출 등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낙후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광주 지역 청년 정책비전과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광주시는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의 4대 분야에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청년일자리: 청년 고용기반 확대, ② 지역인재: 사회적 가치 추구·실천 역량 강화, ③ 생활안정 기반 조성, ④ 청년문화: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청년 니트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청년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생태계 조성, ② 청년 인력의 양성, ③ 청년 창업의 활성화, ④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를 들 수 있다.



\* 출처 : 광주광역시 (2017).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p.138에서 인용.

그림 IV-8 광주 청년정책비전과 전략목표

광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핵심축은 광주시,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 등 행정 집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청년센터가 청년활동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갖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는 광주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문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7년부터 2021까지의 광주시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다음의 3단계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1단계 : 청년정책 우선 과제 추진 및 기반 조성, ② 2단계 : 청년정책 실행 및 관리 체계구축, ③ 3단계 : 청년정책의 확장 및 청년도시 운영 체계 확립.

광주광역시가 현재 시행중인 청년정책 관련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차·에너지밸리 일자리 창출 : 특성화고와 대졸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광주의 미래산업인 친환경자동차산업(빛그린산업공단)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취·창업 촉진
- ② 청년창업 금융, 판로, 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자금 지원, 청년 소자본 창업 컨설팅지원사업 통합운영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동체창업기금(클라우드펀딩) 조성
- ③ 경과형 공동체 일자리 발굴 및 교육 :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와 유사한 정책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경과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 강화
- ④ 청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 광주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⑤ 청년여성 특화 돌봄사회서비스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돌봄, 복지, 교육, 문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여성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신설과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광주광역시는 서울형 청년보장과 유사한 광주청년드림(dream)을 추진 중으로 ① 일-자리 드림, ② 금융복지 드림, ③ 주거서비스 드림의 총 세 개 영역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청년 니트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자리 드림의 대표적 사업으로 ① 일경험드림과 ② 청년드림수당을 들 수 있다.

일경험드림은 등본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018년 3월 기준 3기 드림청년 250명(당초 계획은 3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등 여섯 개

드림터 유형의 일 경험을 제공하며 생활임금인 시간당 8,840원의 급여가 제공된다. 주 25시간 4개월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청년 구직자는 일대일현장상담면접을 통해 관심 있는 드림터에 대한 정보와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원서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드림터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지역청년들에게 구직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광주광역시 거주자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학교졸업 후 미취업청년들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한한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재학생이나 휴학생뿐만 아니라 서울과 달리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5월 기준 모집 인원은 500명이다. 이들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이 지급되는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광주는

# 청년드림

일-자리 드림 / 금융복지 드림 / 주거서비스 드림

**WOLK**

**일-자리 드림**

청년드림 사업  
주 25시간 직무현장 일경험 생활임금 지원

청년드림 수당  
매월 40만원 씩 6개월 지원

청년교통 수당  
매월 6만원 씩 5개월 지원

**금융복지 드림**

채무조정 · 연체해소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청년비상금 통장  
청년드림은행 운영

**주거서비스 드림**

집 소개부터 수리까지, 청년주거 동행서비스,  
광주청년 셰어하우스

\* 출처 : 광주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 <https://gj3dreams.modoo.at/?link=b4y9vxey>에서 2018년 7월 24일 발췌.

그림 IV-9 광주 청년드림(dream) 홍보물

청년일경험드림과 청년드림수당은 현재 사업 차수별 500명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청년실업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 발굴과 청년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청년교통수당드림은 대학졸업반 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에 한 해 최대 5개월간 매월 6만원의 교통비를 모바일쿠폰으로 지급하는데 현재 지원대상자인 대학졸업반 학생들 이외에 청년드림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교졸업 후 미취업청년들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청년일경험드림수당의 경우 청년들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클린카드발급을 통한 수당지급 방식보다 구직활동이 아닌 유흥이나 취미 활동에 수당으로 받은 현금이 지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구직활동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에 수당지급이 중단되지만 애초에 클린카드를 지급하여 구직활동에 수당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대구

대구시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는 2017년 청년전담부서로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비롯하여 청년센터, 청년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위시한 대구지역 청년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삼각축 중 하나인 청년위원회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구지역 청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 관련 시정 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청년센터는 ① 청년정책기반 조성, ② 청년활동 발굴 및 지원, ③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센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① 청년정책 연구플랫폼 ‘청년ON’과 ② 대구청년학교 ‘딴길’을 들 수 있다. ‘청년ON’은 취·창업,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관련 문제들을 100여명의 지역 청년들이 청년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활동 모임으로, 정책제안 분과 활동과 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는 등 2016년부터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딴길’은 청년에게 다양한 인생설계와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수별로 10여개의 학과를 구성하여 학과별 10~15명 이내 지역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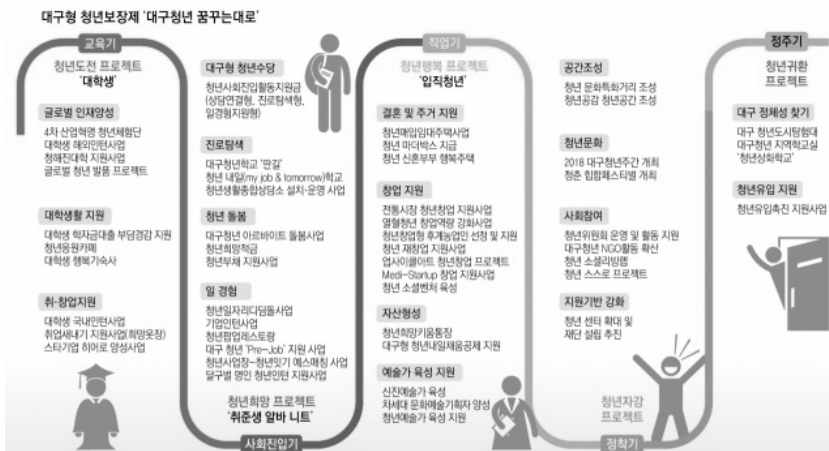
대구는 2019년부터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민선7기 시장에 취임한 권영진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통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예산 2,3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에 포괄적·입체적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특징은 단순한 일자리나 수당 제공의 정책을 벗어나 청년의 생애이행과정별(① 교육기, ② 사회진입기, ③ 직업기, ④ 정착기, ⑤ 정주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정홍보관, 2018; 매일신문, 2018).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통해 대학생(교육기→사회진입기), 취준생·알바·니트(사회진입기→직업기), 취업·창업 청년(직업기→안정기) 등 대상별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취업준비생, 알바, 니트족들을 위한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졸업생이 구직포기자 등 니트족으로 전락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수당, 진로탐색, 일경험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다(그림 IV-10과 IV-11 참조).

|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           | 프로젝트         | 지원방향                                                                        | 지원정책 (프로그램)                                                                                              |
|------------------------|--------------|-----------------------------------------------------------------------------|----------------------------------------------------------------------------------------------------------|
| 대학생<br>교육기→사회진입기       | 청년도전<br>프로젝트 | 대학생활 지원, 취업준비, 국내외 교류활동<br>지원으로 대학생의 사회진입역량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인재양성</li> <li>취/창업지원</li> <li>대학생활지원</li> </ul>                |
| 취준생·알바·니트<br>사회진입기→직업기 | 청년희망<br>프로젝트 | 졸업생이 구직포기자 등<br>장기니트(NET)화 되지 않도록<br>사회진입활동 집중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형 청년수당</li> <li>일경험</li> <li>진로탐색</li> <li>청년돌봄</li> </ul>      |
| 취업·창업 청년<br>직업기→안정기    | 청년행복<br>프로젝트 |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창직 등<br>다양한 사회진입경로 지원과<br>결혼, 주거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선형성</li> <li>결혼 및 주거</li> <li>창업 및 창직</li> <li>예술가 육성</li> </ul> |
| 지역활동청년<br>전주기          | 청년자강<br>프로젝트 |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대구라는 도시와<br>사회를 무대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조성</li> <li>지원기반강화</li> <li>사회참여</li> <li>청년문화</li> </ul>       |
| 출향청년<br>전주기            | 청년귀환<br>프로젝트 | 학술과 현장체험으로 대구청년들의<br>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고,<br>출향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br>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청년 정체성 찾기</li> <li>청년유입지원</li> </ul>                            |

\* 출처 : 대구시청홍보관(2018)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36064>) 에서 2018년 9월 28일 발췌.

그림 IV-10 대구형 청년보장제 : 대상별 지원방향



\* 출처 : 매일신문(2018. 09. 12). <http://news.imaeil.com/Economy/2018091216553267103>에서 2018년 09월 28일 발췌.

그림 IV-11 대구형 청년보장제 : 주기별 지원정책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핵심 대상은 사회진입기에서 직업기로 전환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청년, 청년 니트 집단이다. 이들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으로 ① 대구형 청년수당(사회진입활동지원금), ② 진로탐색지원, ③ 일경험, ④ 청년돌봄(청년희망적금) 등이 있다. 이 중 ‘대구형 청년수당’은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핵심 사업이다. 타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청년수당 정책들이 구직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수당위주 정책에 머물러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아래, ‘대구형 청년수당’은 교육, 진로탐색,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하고자 각종 활동비 및 수당, 그리고 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2019년과 2020년까지 만 34세 미만 대구거주 청년 총 1만명에게 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진입기에서 직업기로 도약하려는 취업준비생 및 니트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형 청년수당’은 대학생이라도 졸업예정자와 휴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상담연결형은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교통비 지급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번 30만원어치의 교통카드를 1천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진로탐색 지원형은 상술한 대구청년학교 ‘판길’의 진로교육 및 자율적 갭이어(gap year) 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 400명의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지원형은 청년사업장과 청년구직자의 매칭을 주목적으로 하며, 인턴을 거쳐 정식 취업이 이루어지는 청년에게 ‘사회 첫출발 지원금’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진로탐색 지원형과 일경험지원형 지원금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시의 또다른 청년니트 관련 핵심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비정규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3개월 기본에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4년 간 2천여 명의 비정규직 지역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9월에 이 같은 야심찬 계획들을 담은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구지역 일각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째로, 혜택을 보는 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예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대상자의 세전 소득을 월 16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 제출이 청년들의 지원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한정된 대상자와 사업비의 부족에 따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비 1,119억 원, 국비 303억 원, 기타 954억 원 등 총 2,37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총 4년간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날로 증가하는 대구지역 청년 실업률은 2018년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 4) 경기

경기도는 지난 6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청년 정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선 모양새다. 우선 청년 과제의 실행 계획과 정책추진을 주 업무로 전담하는 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가 최근 신설되었다. 보건복지국 소속 청년복지정책과는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과 함께 경기도가 새로이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일자리팀으로 구성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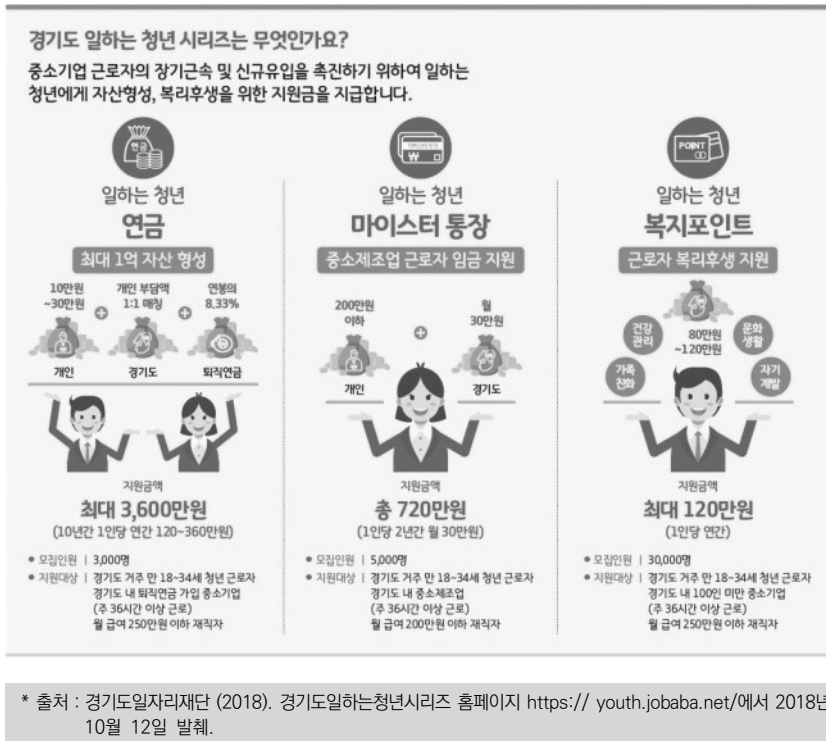


그림 IV-12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들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해소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마련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민선7기 출범 초기까지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일각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청년연금’ 제도의 사업이 현재 철회된 상태이다(그림 IV-12 참조).

‘복지포인트’의 경우,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상공인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일사업장 근속 기간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까지는 연 80만 원,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연 100만 원, 24개월 이상은 연 120만 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일괄지급이 아닌 3개월마다 나누어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연간 총 60,000명이며, 경기도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www.jobaba.net](http://www.jobaba.net))를 통해 경기청년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제조 근로장려지원금인 ‘청년마이스터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들 중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며 월 급여로 25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자들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2018년 기준 1차 5,000명, 2차 7,500명이며,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선발된 청년들은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2년에 걸쳐 매월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청년의 근로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목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약 1,000만 원을 적립시켜주는 제도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2018년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7,930명이 지원하여 7.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하반기 대상 청년 3,000명 선발에 1만3,860명이 지원하여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격을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적립금은 청년 본인의 의지대로 대출상환, 결혼자금, 취미생활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3종 세트 중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년연금’은 현재 철회된 상태이다. ‘청년연금’은 청년 근로자가 10년 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가 1:1로 납입한 금액에 퇴직연금을 플러스로 주는 제도이다. 만 18세~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들 중 사업장 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분야 근로자들을 우선 선발하며 급여가 낮을수록 선발에 유리하다. 근로자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경기도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을 하여 10년 후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면서 2018년 7월 2차 최종 모집 합격자 1,500여명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청바G : 청년이 바라던 G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40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지원자가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한 취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유학준비, 상급학교진학활동, 단순저축, 대출상환, 취미·여가활동, 유흥업 사용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교통비, 통신비(10만 원 이하, 단말기 값 제외), 학원비, 시험비, 도서 구입, 스터디 모임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구직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에 지원금이 소비된 경우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한하여 영수증을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시 업로드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도내 10대부터 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각종 청년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삼분의 일 가량(31.6%)이 ‘정책설계 실패’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산업구조 변화’와 ‘개인의지 부족’이 각각 21.8%, 17.0%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원 정책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44.2%에 달했다. 가장 적합한 청년지원 방식으로는 ‘직업훈련 교육’이 37.4%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금전지급(29.2%), 상담 및 컨설팅(17.0%)이 2위와 3위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청년정책을 하나도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이 1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설문조사결과는 현재 시행되는 청년 관련 정책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4. 요약 및 시사점<sup>15)</sup>

이 장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의 청년 니트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년 니트에 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현행 법률에서 청년 니트를 명시적으로 다룬 법률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정의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고용센터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청년 니트를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단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년 니트는 니트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한정해 지원 대상자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넓게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중퇴한 경우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고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의 경우 목적에 학생에 한 해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경우에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 중 청년 미래특별위에서 정당 간 합의로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니트는 물론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빠졌다.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서 청년 취약계층을 정의한 경우가 있어 이를 참고해 청년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

15)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있으며 이 중에서 청년 니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 다른 영역에서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 니트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조정기구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어서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어서 다른 국가들은 청년 니트를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청년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과 청년은 사전적, 예방적 접근과 사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볼 때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연령 정의상 청소년과 청년 연령이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와는 달리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재정 투입과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재정 투입이 시도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재정투입이나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구축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행안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정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제5장 정책제언

- 1. 청년 니트 정책 수립 절차
- 2. 청년 니트 정책 방향
- 3. 청년 니트 정책 과제





## 1. 청년 니트 정책 수립 절차<sup>16)</sup>

이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청년 니트 실태 분석, 그리고 청년 니트 정책 분석을 토대로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 니트에 대한 실태 분석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과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청년 니트 정책 분석은 법률 분석에서 출발해 중앙과 지자체를 구분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협동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청년 니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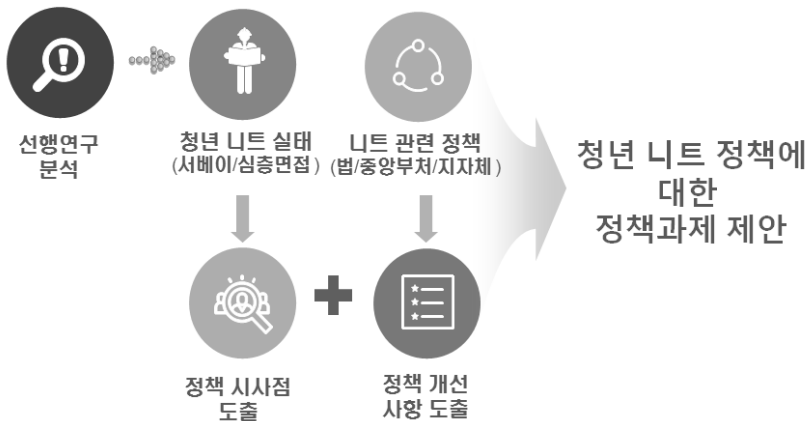


그림 V-1 청년 니트 정책과제 제안 절차

16) 이 절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과 배상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각 단계별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정책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 연령을 정의 하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청년 니트 내부에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V-2 청년 니트 선행연구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정책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년 니트에 대한 쟁점과 정책 시사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청년 니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청년 니트의 높은 비중은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처럼 청년 니트화와 니트 탈출을 돕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고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비경제활동인구 니트가 많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정책 대상인 실업자와는 달리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와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V-3 청년 니트 국제비교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성은 청년 니트가 유형별로 이질성이 크다는 점과 1년 이상 장기 니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청년 니트의 유형별 이질성은 정책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며 1년 이상의 장기 니트가 많다는 것은 바로 취업연계를 하기 보다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V-4 청년 니트 실태조사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청년 니트 유형별로 실태와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자발적 선택형은 니트 상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꿈을 추구하는 경우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유형에 포함된 경우라도 하나의 정책 집단으로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며 개별 대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구직회피·휴식형은 포기과 회피가 시작된 이유가 학생 때의 잘못된 진로선택 때문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이 중요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취업·진학준비형은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접근하되 지원은 공정하게 적용은 엄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가사·육아형은 육아와 같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재취업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현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V-5 청년 니트 심층면접 결과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청년 니트에 대한 진입과 탈출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니트의 특성은 취업 후 니트가 되기보다 졸업 후 니트가 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이였다. 청년 대졸 니트의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의 니트들이 니트 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

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니트 중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며 니트 상태에 진입한 이후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 못지않게 예방적으로 졸업 이전에 니트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6 청년 니트 진입·탈출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청년 니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니트 관련 법률 중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청년 니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애로계층 중 청년 니트에 대해 고용센터가 지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대상을 협소하게 정의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V-7 청년 니트 관련 법률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졸업자로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와 대학교 중퇴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진로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목적을 다룬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은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림 V-8 청년기본법안 법률 분석 쟁점 및 정책 시사점

이어서 중앙정부의 청년 니트 정책에 대한 쟁점과 정책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중앙 단위의 총괄조정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만이 아니라 청년 전반의 정책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은 일반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더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세밀함이 요구되는 정책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나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청년은 상호 연계되어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추진주체의 차이로 인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9 중앙정부 네트워크 정책 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청년 네트워크 정책을 살펴본 결과, 중앙과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구축해온 청년정책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비롯하여 청년수당과 같은 재정 지원과 청년기금과 같은 재원 확보에 대한 역할을 맡고, 지자체에서는 정책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맡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 네트워크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10 지자체 네트워크 정책 분석 쟁점 및 정책 개선 사항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복해소를 넘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 니트와 같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체계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시사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청년 니트의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청년 니트 정책 방향<sup>17)</sup>

이 절에서는 청년 니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 니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기본성격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대상과 관련하여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효과에 있어서 증거 기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 중심 접근은 대상 중심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대상 중심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7)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배상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이 절의 최종보고단계 초고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제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제6차 KLI청년고용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d, 2018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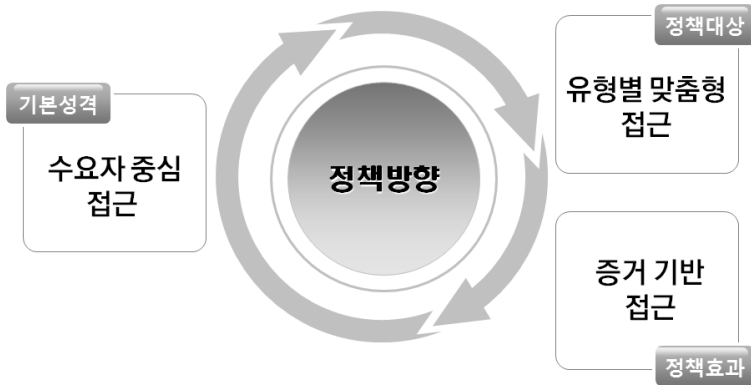


그림 V-11 청년 니트 정책의 방향(안)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대상 정의나 규모 추정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자 중심을 위한 출발점은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참여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청년 고용문제에 국한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의견을 수렴하는 청년허브단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 니트의 경우 정책 대상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니트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니트,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원 등을 준비하는 공시생, 고시생들과 다른 취업 준비자들 간에 이질성도 큰 상황이다. 이처럼 청년 니트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니트 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증거 기반 접근은 실태조사나 심층면접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년 니트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 사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3. 청년 니트 정책 과제<sup>18)</sup>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면접, 그리고 정책 진단과 해외 사례 결과를 토대로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안)은 청년 니트를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규모 추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과제(안)은 청년 니트 지원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과제(안)들은 예방적인 접근으로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졸업 후에 니트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취업이나 학업, 훈련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안)는 청년 니트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발굴할 수 있는 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18)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배상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이 절의 최종보고단계 초고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제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제6차 KLI청년고용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바 있음(김기현, 2018d, 2018e).

|    |                                                               |    |                                                      |
|----|---------------------------------------------------------------|----|------------------------------------------------------|
| 01 | 청년 니트 정책 대상 명확화<br>- 국가에서 공식통계로 청년 니트 규모 추정                   | 06 |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 정비<br>-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아름학교 등              |
| 02 | 청년 니트 지원 관련 법률 정비<br>-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개정안, 청년기본법안 수정안            | 07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br>-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청년 니트 발굴/지원 연계  |
| 03 | 초·중등교육/고등교육 학업 중단 예방 강화<br>- 대학 학업 중퇴 포괄 학업 중단 대책 마련          | 08 |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br>-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 04 |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졸업 예정자 니트화 방지<br>- 학교 졸업 예정자 취업/학업/훈련 연계 대책 마련    | 09 | 청년 취약계층 정책 전달체계 구축<br>- 온라인시스템/고용센터, 꿈드림센터 등 오프라인 정비 |
| 05 | 청년 니트 지원기관 연계 및 대상발굴시스템 마련<br>- 10대 학교 밖 청소년 중심 시스템 20대 포괄 개편 | 10 | 중앙과 지자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br>-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통한 정책 시너지 발휘   |

그림 V-12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정책과제(안)들은 이미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도입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청년 니트와 같은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종합적으로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한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정책과제(안)들은 정책 추진 인프라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10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청년 니트에 대한 10개의 정책과제(안)

### (1) 과제 1. 청년 니트 정책 대상 명확화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년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청년 니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규모를 추정하자는 것이다.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하려면 니트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문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발적 니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주된 활동이 여행, 문화예술 활동, 취미생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등)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난주 주로 한 활동보다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 질문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 니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경우 자발적 니트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존재하지만 취학 준비 등이 빠져 있어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청년 니트 기간에 관한 질문은 현재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니트의 경우 공시생 등 2년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질문들로 문항을 선별해 청년 니트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제된 문항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표 V-1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제활동상태 기준 비교

| 구분                    | 유럽 노동력조사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문항 개정(안)                                                                                                                                 |
|-----------------------|----------------------------------------------------------------------------------------------------------------------|-----------------------------------------------------------------------------------------------------------------------------------------------------------------------------------------------------------------------|--------------------------------------------------------------------------------------------------------------------------------------------|
| 구직여부                  | 4주간 구직활동여부                                                                                                           | 4주간 구직활동여부                                                                                                                                                                                                            | -                                                                                                                                          |
| 취업가능여부                | 2주 이내 취업가능여부                                                                                                         | 지난주 취업가능여부                                                                                                                                                                                                            | -                                                                                                                                          |
| 실업기간                  | ① 1년 이상 → 장기 실업 니트<br>② 1년 미만 → 단기 실업 니트                                                                             | ① 1년 이상<br>② 1년 미만                                                                                                                                                                                                    | -                                                                                                                                          |
|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 ① 직장 복귀 대기<br>② 교육·훈련 대기<br>③ 질병 또는 장애 → 질병·장애 니트<br>④ 이른 돌봄 → 돌봄 니트<br>⑤ 주변에 일할 곳이 없다고 믿음 → 의욕상실 니트<br>⑥ 기타 → 기타 니트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br>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br>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br>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br>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br>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br>⑦ 육아 ⑧ 가사 ⑨ 통학<br>⑩ 심신장애 ⑪ 기타 | [문항수정]<br>⑩ 심신장애 → ⑩ 질병 또는 장애<br><br>[문항추가]<br>- 돌봄 유형 추가<br>⑪ 가족 돌봄<br>- 자발적 니트 추가<br>⑫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br>⑬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등 |

| 구분                                       | 유럽 노동력조사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문항 개정(안)                                                                                                                                        |
|------------------------------------------|-------------------------------------------------------------------------------------------------------------------------------------------------------|----------------------------------------------------------------------------------------------------------------------|---------------------------------------------------------------------------------------------------------------------------------------------------|
| 취업이<br>가능하지<br>않은 이유<br>(지난주 주로<br>한 활동) | ① 교육 및 훈련<br>② 질병 또는 장애<br>→ <b>질병·장애 니트</b><br>③ 가족 돌봄, 출산<br>→ <b>돌봄 니트</b><br>④ 봉사활동 → <b>기타 니트</b><br>⑤ 무응답 → <b>기타 니트</b><br>⑥ 기타 → <b>기타 니트</b> | ① 육아 ② 가사<br>③ 정규교육기관 통학<br>④ 입시학원 통학<br>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br>⑥ 취업준비 ⑦ 진학준비<br>⑧ 연로 ⑨ 심신장애<br>⑩ 군입대 대기 ⑪ 쉬었음<br>⑫ 기타 | [문항수정]<br>⑨ 심신장애<br>→ ⑨ <b>질병 또는 장애</b><br>[문항추가]<br>- <b>교육훈련대기 추가</b><br>⑫ 교육 및 훈련 대기<br>[질문 변경]<br>지난 주 주로 한 활동에 대한<br>질문에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br>이유로 |
| 니트기간                                     | -                                                                                                                                                     | -                                                                                                                    | [질문 추가]<br>청년 니트 상태 기간에 관한 질문                                                                                                                     |

이처럼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청년 니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특정하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니트 중에서 핵심적인 정책 지원 대상은 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니트, ②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 준비가 힘들거나 고졸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청년 니트, ③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고시생, 공시생 등)를 해왔으나 이를 포기하려는 청년 니트, ④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 청년 니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2) 과제 2. 청년 니트 지원 관련 법률 정비

두 번째 정책 과제(안)은 청년 니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기존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진로교육법 등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 역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 부분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재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로 청년 고용문제가 한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일몰기간을 정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청년 고용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안 통과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법률 부칙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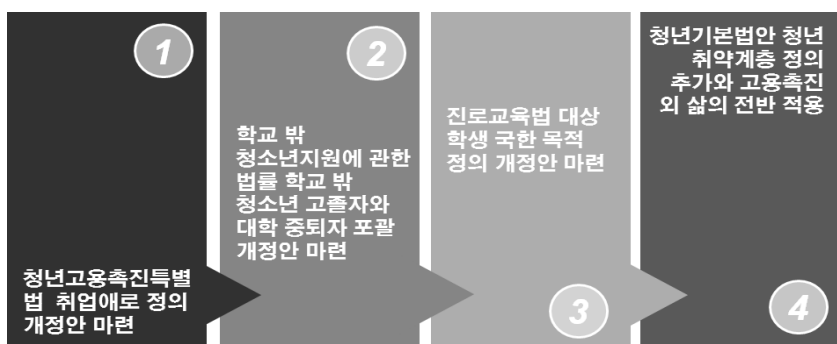


그림 V-13 청년 니트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과제(안)

표 V-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개정 사항

| 현행                                                                                                                                                                                                                                                                                                                                  | 개정(안)                                                                                                                                                                                                                                                                                                                               |
|-------------------------------------------------------------------------------------------------------------------------------------------------------------------------------------------------------------------------------------------------------------------------------------------------------------------------------------|-------------------------------------------------------------------------------------------------------------------------------------------------------------------------------------------------------------------------------------------------------------------------------------------------------------------------------------|
| <p>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li> <li>「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li> <li>「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li> <li>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li> </ol> | <p>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li> <li>「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li> <li>「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li> <li>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li> </ol> |

| 현행                                                                                                                                                                                                                                                          | 개정(안)                                                                                                                                                                                                                                                        |
|-------------------------------------------------------------------------------------------------------------------------------------------------------------------------------------------------------------------------------------------------------------|--------------------------------------------------------------------------------------------------------------------------------------------------------------------------------------------------------------------------------------------------------------|
| <p>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으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p> <p>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p> <p>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p> <p>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p> | <p>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p> <p>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p> <p>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p> <p>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p> <p>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p>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동시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의 취업으로 계층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시행령에 청년 니트에 관한 규정을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업자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 다른 대상 정의와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 니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 대상의 상태가 인정기관의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므로 부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취성패 지원 대상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 대상 중 하나인 청년 니트층에 대한 별도의 선별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을 너무 한정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청년 니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li> <li>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li> <li>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li> </o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li> <li>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li> <li>다.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의 <u>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u> 라. 「<u>고등교육법</u>」 제2조의 <u>대학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u></li> </ol> </li> </ol>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이를 취업으로 청년 대상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법률에서 24세 이하까지를 포괄하므로 청년 지원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에는 고교 이하에서 중퇴한 경우에 한 해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24세로 지원이 필요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진학했다가 중퇴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4세 이하로 학교 밖에 있고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을 다루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과도 불일치하는 것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 연령 규정이 중복되므로 청년도 명시해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V-4 진로교육법(제1조)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b>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b> 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b>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b> 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8년 8월 1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 미래특별 위원회에서 정당 간에 합의한 법안의 제17조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안 마련 조항이 빠져 있다. 20대 국회에서 제안한 법안 중 상당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V-5 청년기본법안 수정(안)

|                                         | 현행                                                                                                                                                                                                                                                                                                                 | 수정안                                                                                                                                                                                                                                                                                                                                                                     |
|-----------------------------------------|--------------------------------------------------------------------------------------------------------------------------------------------------------------------------------------------------------------------------------------------------------------------------------------------------------------------|-------------------------------------------------------------------------------------------------------------------------------------------------------------------------------------------------------------------------------------------------------------------------------------------------------------------------------------------------------------------------|
| 제17조<br>(청년 고용<br>촉진 및<br>일자리의<br>질 향상)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b>취약계층 청년의 우선적인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p> <p>④ <b>제3항에 따른 취업계층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p>                                                                                                                              |
| 제19조<br>(청년 능력<br>개발 지원)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여야 한다.</p>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여야 한다.</p> <p>⑤ <b>취약계층 청년의 우선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p> |
| 제20조<br>(청년 주거<br>지원)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청년 신혼가구 또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청년 신혼가구 또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b>취약계층 청년의 우선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p>                                                                                                                                                |

|                       | 현행                                                                                                                                | 수정안                                                                                                                                                                             |
|-----------------------|-----------------------------------------------------------------------------------------------------------------------------------|---------------------------------------------------------------------------------------------------------------------------------------------------------------------------------|
| 제21조<br>(청년 복지<br>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환경 마련 등의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환경 마련 등의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br>③ <b>취약계층 청년의 우선적인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b> |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조항과 이에 대한 정의는 다른 법률의 틀을 고려해 법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청년 니트 역시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취업으로 청년과 동일하게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안에서 고용촉진 이외에 능력개발, 복지지원 등 다른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들은 고용의 어려움 외에 교육이나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에 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 (3) 과제 3. 초·중등교육/고등교육 학업중단 예방 강화

세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나 실업자로의 진입을 줄이기 위한 과제이다. 이 과제(안)는 네 번째 과제안과 더불어 예방적인 접근을 다루는 과제로 볼 수 있다. 청년 니트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니트화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은 주로中等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高等教育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은 中等교육 이하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업중단 청소년에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중퇴자도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청년 니트까지 포함하는 전달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4) 과제 4. 초·中等교육/高等教育 졸업예정자 니트화 방지

네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니트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이나 학업, 훈련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특별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와 니트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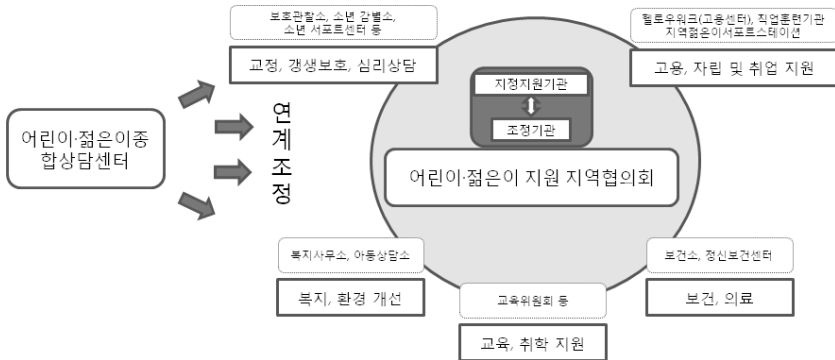
대상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교 졸업예정자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고교(1월 혹은 2월 초순경) 졸업예정자 중 진학자, 재수생, 군입대 예정자, 졸업 전 취업자 등을 제외하고 취업 희망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고용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취업지원사업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예정자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대학(2월 중순경) 졸업예정자 중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 등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경우 센터를 통해, 없는 경우 대학 행정부서 협조로 취업과 연계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선도지원단 등을 통해, 이러한 전달체계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 대학 행정부서의 협조로 각종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과제5. 청년 니트 지원기관 연계 및 대상발굴시스템 마련

다섯 번째 정책 과제(안)는 청년 니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연계하고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0세부터 30세 미만까지 아동부터 청년에 이르는 정책 대상자들을 위해 어린이·젊은이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정책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해 보호, 심리상담, 고용 및 자립, 취업지원, 복지 지원, 교육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복귀 희망자를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밖지원센터인 꿈드림 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 혹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연계하고,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내일이룸학교(전 취업사관학교)와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内閣府(2018: 29).「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김기현, 2018c: 4에서 재인용)

그림 V-14 일본의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 제대 예정자 역시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대 제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휴학자 등을 제외하고 취업 희망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체계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부처 간에 칸막이로 인해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년 니트를 비롯한 대상 중심 정책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 (6) 과제 6.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 정비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대상인 니트족은 2년 이상 장기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보다 6개월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을 통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 니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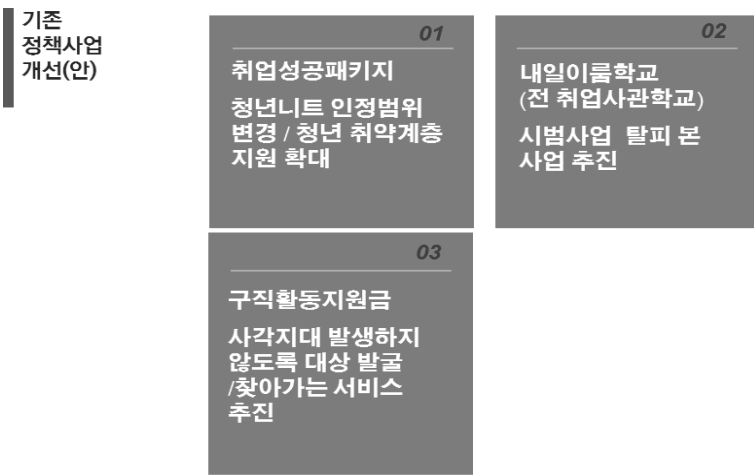


그림 V-15 기존 청년 니트 정책사업 개선(안)

취업사관학교가 내일이룸학교로 변경되었는데 취성패가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예산(2억 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취성패와는 달리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어 독일이나 일본의 지원 정책과 같은 확대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과제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곱 번째 정책 과제(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에서 청년 니트를 포함하여 청년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방문형태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청년 니트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18세부터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15세로 조정해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과제 8.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

여덟 번째 정책과제(안)은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청년 고용사업을 청년보장제로 일원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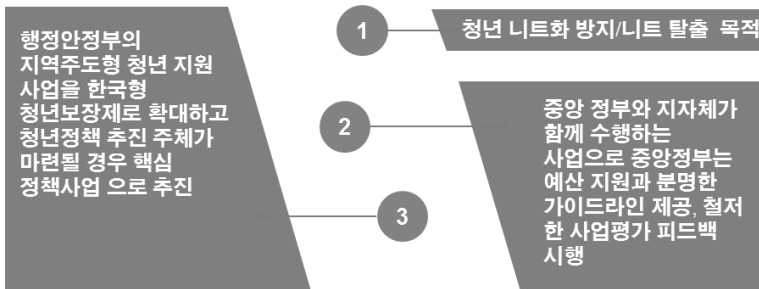


그림 V-16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안)

유럽연합(EU)은 개별 사업 추진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다양한 사업을 통합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한편,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체계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유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보장제와 같은 브랜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한국형 청년보장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청년 니트’로 정하고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엄격한 평가지표 제시를 통해 청년 니트의 비율을 낮추는 종합대책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해외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자인 청년 니트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는 민관 참여 모델로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을 넘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보장제 시행에 있어서 결과의 보장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표명한 것인 동시에 개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한국형 청년보장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 (9) 과제 9. 청년 취약계층 정책 전달체계 구축

다음으로 아홉 번째 정책과제(안)는 청년 취약계층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해외주요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현, 2018d).

프랑스의 미시옹 로컬(Mission Locale)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시옹 로컬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의 청년보장제(Garantie Jeunes)를 집행하는 곳이다. 미시옹 로컬은 NGO 등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으로 사례관리자들이 대상자 맞춤형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450여개가 있다.

일본은 지역젊은이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을 통해 2006년부터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상담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젊은이자립지원중앙센터가 있고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의 서포스테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16년 현재 약 2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포스테 센터 사업 중 집중훈련 프로그램은 6개월까지 장기간 참여를 통해 취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의 CIDJ, 미시옹 로컬(Mission Locale), 일본의 서포스테, 핀란드의 원스톱 센터 등은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으로 청년 니트를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복지, 자원봉사 및 해외교류와 같은 활동,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허브기관의 운영도 독립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 예산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합(예: 자치구의 Mission Locale의 예산은 EU 20%, 연방정부 20%, 주정부 30%, 시정부 30%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김기현, 2018a).

장기과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구축 중인 온라인청년 센터부터 취약계층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외에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상담원(case manager)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 과제 10.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중앙의 경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수당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과 청년기금과 같은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재정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고, 청년 니트와 같이 청년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에서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 로드맵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입시기 측면에서 보면, 정책과제 3과 4는 청년 니트가 되기 전에 사전적, 예방적 으로 접근하는 과제이다.

정책과제 5부터 8까지는 이미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들은 법률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과제들로 예방 대책과 사후대책을 포괄한다.

표 V-6 청년 니트 정책 과제(안) 로드맵

| 영역                            | 개입시기     |          | 추진기간            |                 |                 |
|-------------------------------|----------|----------|-----------------|-----------------|-----------------|
|                               | 예방<br>대책 | 사후<br>대책 | 단기<br>(’18~’19) | 중기<br>(’18~’21) | 장기<br>(’18~’23) |
| 1. 청년 니트 정책 대상 명확화            | ○        | ○        | ○               |                 |                 |
| 2. 청년 니트 지원 관련 법령 정비          | ○        | ○        | ○               |                 |                 |
| 3. 초중등교육/고등교육 학업 중단 예방 강화     | ○        |          |                 | ○               |                 |
| 4.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졸업예정자 니트화 방지    | ○        |          |                 | ○               |                 |
| 5. 청년 니트 지원기관 연계 및 대상발굴시스템 마련 | ○        | ○        |                 | ○               |                 |
| 6.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 정비           |          | ○        | ○               |                 |                 |
|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 ○        | ○               |                 |                 |
| 8. 한국형 청년보장제 시행               |          | ○        |                 | ○               |                 |
| 9. 청년 취약계층 정책 전달체계 구축         | ○        | ○        | ○<br>(온라인)      |                 | ○<br>(오프라인)     |
| 10. 중앙과 지자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 ○        | ○        | ○               |                 |                 |

단기과제는 2019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우선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률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을 정비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과제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2021년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기과제로는 청년 니트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청년 니트 발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이루어지는 장기과제로는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은 내부 이질성이 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행정부처에서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청년 니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이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 경기도일하는청년시리즈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서 2018년 10월 12일 발췌.
- 고용노동부 (2017a). **일자리 이슈북**. 내부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7b).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8). **청년일자리 업무 현황**.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3.15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점 5차 일자리 위원회.
- 광주광역시 (2017).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간등록번호 55-629000-000398-13).
- 광주청년드림 (2018). **광주 청년드림(Dream) 홍보자료**.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 <https://gj3dreams.modoo.at/?link=b4y9vxey>에서 2018년 7월 24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각 지자체 별 청년 기본조례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날짜별 인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8). **청년기본법안 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8년 8월 14일 인출.
-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닛트개념을 통한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 김기현 (2005).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 한일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15(3). 51-77.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한지형 (2016).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2016년 청년정책포럼** (연구보고 16-R6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한지형 (2017).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2017년 청년정책포럼** (연구보고 17-R3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워킹페이퍼**, 8(8).
- 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2018-11).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기현 (2018a). **해외 청년 현황과 정책시사점**. 고용노동부 2018년 제2차 청년 고용포럼(2018년 6월 29일 서울스퀘어 3층 소회의실) 발표문(내부자료).
- 김기현 (2018b). **청년 고용 및 니트(NEET) 현황과 정책시사점**. 교육부 2018년 사회정책협력망 복지 사회보장분과 오픈세미나(2018년 8월 16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019A 회의실) 발표문(내부자료).
- 김기현 (2018c).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발전포럼(2018년 9월 11일, 서울 메트로빌딩 10층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1003호실) 발표자료(내부자료).
- 김기현 (2018d). **청년 니트(NEET)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 제9차 회의(2018년 10월 25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 발표자료 (내부자료).
- 김기현 (2018e). **청년 니트의 실태와 정책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제6차 청년고용 포럼(2018년 12월 14일,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 발표자료(내부자료).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정책보고서 2015-47).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 연구. *the HRD review*, 18(1), 98-114.
-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0), 1-21.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2017(4), 91-110.
- 김준영, 정재현, 이상호, 김영용 (2015). OECD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변화와 변동요인(기본연구 2015-39).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2006(4), 22-33.
- 대구시정홍보관(2018). **대구형 청년보장 검색**. 대구시정홍보관 홈페이지 <http://info.daegu.go.kr> 에서 2018년 9월 28일 인출.
- 매일신문(2018. 09. 12). **더 많은 청년들이 대구에 뿌리내릴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보장제**. 매일신문 보도자료. <http://news.imaeil.com/Economy/> 2018091216553267103에서 2018년 9월 28일 발췌.
- 박진희, 양수경 (2016).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고용동향브리프*, 2016(6), 11-13.
- 박진희, 임희정 (2014). 최근 청년층의 취업 현황 및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2014(2), 2-15.
-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17).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2017 청소년상담연구 19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울특별시 (2017). **2020 서울형 청년보장**. <https://brunch.co.kr/@seoul/28> 에서 2018년 7월 27일 발췌.
- 성재민, 안정화 (201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6-04).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양지윤, 백광호, 최석현, 고희원 (2016).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기본연구 2016-10).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여성가족부 (2017).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청년여성 및 후기청소년 주요 업무 현황**.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오민홍, 김대환, 박가열 (201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익성분석 및 구조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위탁보고서. 부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정책연구 2018-35). 수원: 경기연구원.
-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연구보고서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규용, 금재호, 안주엽, 윤자영, 김기현, 이지은, 신선옥, 이해정, 김기홍 (2015).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데일리 (2018.02.09.). 기재부 “청년 실업·금리·통상, 한국경제 3대 리스크”. 이데일리 보도자료.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56566619108880&mediaCodeNo=257](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56566619108880&mediaCodeNo=257)에서 2018년 5월 15일 발췌.
- 이병희, 길현중, 김혜원, 박혁 (2014).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세종: 고용노동부.
- 이병희, 김혜원, 길현중, 오민홍 (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세종: 고용노동부.
- 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39).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이지은, 신선옥, 이해정, 김기홍 (2015). **제18차(2015)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8). **지방자치단체 청년 전담부서 현황 검색**.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lis.go.kr](http://www.elis.go.kr)에서 2018년 10월 15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10대 공약 및 17대 시도광역시 단체장 당선자 청년 관련 공약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http://www.nec.go.kr)에서 2018년 9월 29일 인출.

청년유니온(2018). 지방선거 주요 광역단위 당선자 청년정책/일자리노동정책 현황 (내부 자료).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현 (2008). *유휴청년 연구* (연구보고서; 2008-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기본연구 2017-04).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6월 22일 인출.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6월 20일 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지원: 내일이름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3/1/4/2>에서 9월 18일 인출.

Chamberlain, G. (1980). Analysis of Covariance with Qualitative Da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225-23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1-6.

EU (2015). *Census on Youths NEET: Report on Finding*. European Social Fund: MALTA 2007-2013.

Eurofound (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 Eurofound (2016). *Exploring the Diversity of NEETs*. Accessed on 15 May 2018. [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ef1602en.pdf](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ef1602en.pdf).
- Franzosi, C. (2015) *Being NEET: neither in education nor in employment*. ISFOL.
- Genda, Y. (2017). 일본의 무업청소년(NEET) 문제. 2017 국제심포지엄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자료집, 1-66.
- Mascherini, M., Ledermaier, S., Vacas-Soriano, C., & Jacobs, L. (2017). *Long-term unemployed youth: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sponses*. Accessed on 10 May 2018. [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ef1602en.pdf](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ef1602en.pdf).
- OECD (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Accessed on 16 May 2018. <https://www.oecd.org/els/emp/Youth-Action-Plan.pdf>.
- OECD (2014a). *Youth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NEETs)*. Accessed on 16 May 2018. [http://www.isw-linz.at/themen/dbdocs/OECD\\_Bericht\\_NEET.pdf](http://www.isw-linz.at/themen/dbdocs/OECD_Bericht_NEET.pdf).
- OECD (2014b). *The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Irish Youth Guarantee*. Accessed on 16 May 2018. <https://www.oecd.org/ireland/YouthActionPlan-IrishYouthGuarantee.pdf>.
- OECD (2014c).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4.pdf](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4.pdf).
-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5.htm>.
- OECD (2016a).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6.htm>.

- OECD (2016b). *Society at a Glance*. Accessed on 13 May 2018. <https://www.oecd.org/korea/sag2016-korea.pdf>.
- OECD (2017).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7.htm>.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Accessed on 11 May 2018.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 OECD (2018b).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11 May 2018). OECD Database(<http://data.oecd.org/>).
- Rees, G., Williamson, H., & Istance, D. (1996). 'Status Zero': a study of jobless school-leavers in South Wales.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11(2), 219-235.
-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ccessed on 15 May 2018. <http://dera.ioe.ac.uk/15119/2/bridging-the-gap.pdf>.
- UNESCO (2011).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ontreal, Canada.
- Wooldridge, J. M. (2005). Simple solutions to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with unobserved heterogeneit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 39-54.
- 内閣府 (2005).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調査. Accessed on 13 July 2018. <http://www8.cao.go.jp/youth/kenkyu/shurou/shurou.html>.
- 厚生労働省(2004). 平成16年版 労働経済白書.
- 社会経済生産性本部 (2007). ニートの状態にある若年者の実態及び支援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 — 부 록





# 부록

##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  |  |  |  |
|--|--|--|--|
|  |  |  |  |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5세~만18세(1999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S.V 검증          |  |
| 조사구 일련번호 |                                                                | 거처번호   |      | 가구번호            |  |
| 주소(구/동)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      |                 |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택 유형    |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용 것 :      ) |        |      |                 |  |

|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
| 총 가구원 수               |                                     |     |     |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     |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
| 마진행 가구원 사유 |  |
|------------|--|

## 동 의 서

###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 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교육·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1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13)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1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름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 구 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① | ②   |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문1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가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9)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추가, 영역(문20)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1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편견된 여러 업무 경험미 부재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1)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숙식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오

문23)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illegible]

문2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5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영역 문6으로 이동

문25) (문24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거      ② 취업 전까지 동거  
③ 결혼 전까지 동거      ④ 결혼 후에도 동거  
⑤ 출산 후에도 동거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0으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29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29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9로 이동

문29) (문28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 분                 | 예 | 아니오 |
|---------------------|---|-----|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문31)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32)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때때로<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하<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상<br>그렇다 | 대부분<br>그렇다 | 항상<br>그렇다 |
|----------------------------------|-----------------|------------|------------------------|------------------------|------------|-----------|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3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34로 이동

문3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34)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3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6)으로 이동

문3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5-2로 이동

문35-2) (문35-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6)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 항 목       | 선호 정도 |   |   |   |   |   |   | 항 목   |
|-----------|-------|---|---|---|---|---|---|-------|
| (1) 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여가 중시 |
| (2) 현실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이상 중시 |
| (3) 결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과정 중시 |
| (4) 개인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집단 중시 |

문37)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관계

⑩ 꿈·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3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

문4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인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가성세대<br>(40,50대) |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인<br>(70세 이상)   |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1)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항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보통이다 | 아마도 참여함 | 확실히 참여함 |
|---------------------------------------------|-------------|-------------|------|---------|---------|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항의 전화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Ⅷ.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5) 귀하는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매경문항 1)로 이동**

문45-1) 귀하의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문46)~문50)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46) 귀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일자리센터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4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문 항                                     | 문46) 서비스를 받은 경험 | 문46-1) 도움이 되는 정도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 ①      | ②     | ③   | ④      |
|                                         | ② 아니오           |                  |        |       |     | ⑤      |
|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 ①      | ②     | ③   | ④      |
|                                         | ② 아니오           |                  |        |       |     | ⑤      |
|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 ①      | ②     | ③   | ④      |
|                                         | ② 아니오           |                  |        |       |     | ⑤      |
|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① 예             | ■                | ①      | ②     | ③   | ④      |
|                                         | ② 아니오           |                  |        |       |     | ⑤      |

문47)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②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③ 면접 실습 등 취업준비 지원            ④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VI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구분     | 중학교 재학 |  |  |  | 고등학교 재학 |  |  |  |
|--------|--------|--|--|--|---------|--|--|--|
| (1) 본인 | ①      |  |  |  | ②       |  |  |  |

| 구분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
|---------|---------|---------|--------|---------|-------------|-----------|----------------|--------|
| (2)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  |  |  |  |
|--|--|--|--|
|  |  |  |  |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청년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9세~만39세(1978년 7월 1일~1999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                                                                |        |  |        |                 |
|----------|----------------------------------------------------------------|--------|--|--------|-----------------|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S.V 검증 |                 |
| 조사구 일련번호 |                                                                | 거처번호   |  | 가구번호   |                 |
| 주소(구/동)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  |        |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택 유형    |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작성 것 :      ) |        |  |        |                 |

|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
| 총 가구원 수               |                                     |     |     |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     |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
|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

## 동 의 서

###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 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 설문지 작성 요령

!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⑤ 가구의 소득 증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                    |                    |
|--------------------|--------------------|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⑥ 가구의 소득 증대        |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 (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5)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6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20으로 이동

※ 다음(문16~문19)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6)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8) (문16에 ① 또는 문17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19)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응답 후 문22로 이동

※ 다음(문20~문21)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0)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다음(문22~문24)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24)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이미 받고 있다



###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2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2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28)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9)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29-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3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0-1)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름 경우만 1), 2)에 '⑨ 모름'에 체크)

| 구 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① | ②   |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문3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5-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편향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44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44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7)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8) 귀하는 지난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8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9) (문38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40) (문39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
| (3) 1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문42)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다음 항목들이 귀하가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해당사항<br>없음 |
|-------------------------------------------|-----------------|-----------|------|-----|-----------|------------|
| (1) 업무 경험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 자신감의 결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 줄 수 없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43)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심리, 정신 건강 문제 | ② 신체 건강 문제         |
| ③ 가족 관계의 어려움   | ④ 결혼문제             |
| ⑤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⑥ 학업이나 진학문제        |
| ⑦ 취업 문제        | ⑧ 경제적인 어려움         |
|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 응답 후 (문48)로 이동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48)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49)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
-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0) 귀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
-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1) 귀하는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주거」 영역(문56)으로 이동

문52) (문51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주거」 영역(문56)으로 이동

문53) (문5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54) (문5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주거」 영역(문56)으로 이동
- ② 아니오

문5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5)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56)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57)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요

문58)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illegible]

문59)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동거)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음.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60) (문59에서 ②, 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illegible]

문60-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 (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학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2)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3)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5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4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4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4로 이동

문64) (문63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 분                 | 예 | 아니오 |
|---------------------|---|-----|
|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문66)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67)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때때로<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하<br>그렇다 | 2주의<br>절반<br>이상은<br>그렇다 | 대부분<br>그렇다 | 항상<br>그렇다 |
|----------------------------------|-----------------|------------|------------------------|-------------------------|------------|-----------|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68)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69로 이동**

문68-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69)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70)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문70-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0-2로 이동

문70-2) (문70-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1)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항 목       | 선호 정도 |   |   |   |   |   |   | 항 목   |
|-----------|-------|---|---|---|---|---|---|-------|
| (1) 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여가 중시 |
| (2) 현실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이상 중시 |
| (3) 결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과정 중시 |
| (4) 개인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집단 중시 |

문72)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관계

⑩ 꿈·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73)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4)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문75)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문 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기성 세대<br>(40,50대) |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인<br>(70세 이상)    |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6)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 항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 보통이다 | 아마도 참여함 | 확실히 참여함 |
|---------------------------------------------|-------------|-------------|------|---------|---------|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항의 전화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8)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문79)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80으로 이동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80으로 이동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80으로 이동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80으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79-1) (문79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79-2) (문79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80)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81)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VIII.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매경문항 1)로 이동**

문82-1) 귀하의 졸업연월 또는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졸업자 졸업연월 : 

|  |  |  |  |
|--|--|--|--|
|  |  |  |  |
|--|--|--|--|

 년 

|  |  |
|--|--|
|  |  |
|--|--|

 월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  |  |  |  |
|--|--|--|--|
|  |  |  |  |
|--|--|--|--|

 년 

|  |  |
|--|--|
|  |  |
|--|--|

 월

\* 신규졸업자는 2017년 2월~2018년 2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한 자,  
신규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83-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문84)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문85) 귀하는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 | 269

문86) 귀하는 졸업 후에 그동안 다녔던 대·고소재지(지역)를 떠날 예정이십니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고·교소재지(지역)를 떠날 예정인지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음

문8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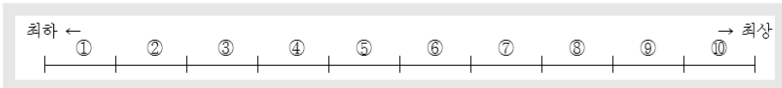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구분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
|---------|---------|---------|--------|---------|-------------|-----------|----------------|--------|
| (1) 본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2)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 문15에 ① 응답자만)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 학교소재지<br>(* 보기1 참조) | 전공계열<br>(* 보기2 참조) | 입학년월        | 졸업여부                         | 졸업년월<br>(졸업한 경우 응답) |
|---------------------|--------------------|-------------|------------------------------|---------------------|
|                     |                    | ____년 ____월 | ① 졸업<br>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 ____년 ____월         |

**\* 보기1(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배경문항 5) (※ 문36에 ①,② 응답자만)[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1)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
| (2) 고용형태                       | ① 정규직(상용근로자)<br>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③ 무급가족종사자 |
| (3) 근로시간 유형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                                               |
| (4) 직장유형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br>② 외국인회사<br>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br>④ (재단, 사단)법인단체<br>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br>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br>⑦ 기타 (                      )                                                                                                                                                                                                                                                                                             |                                               |
| (5) 종사자 수<br>(사업체 기준)          | ① 1-4인                      ② 5-9인<br>③ 10-29인                ④ 30-99인<br>⑤ 100-299인            ⑥ 300-499인<br>⑦ 500인 이상                                                                                                                                                                                                                                                                                                                            |                                               |
| (6) 근속년수<br>(현 직장을 기준으로<br>응답)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pan style="margin: 0 10px;">년</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pan style="margin: 0 10px;">개월</span> </div> |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지어부류표

| 구분   | 작품명/아이         | 구분         | 작품명/아이     | 구분            | 작품명/아이         | 구분             | 작품명/아이     | 구분          | 작품명/아이      |
|------|----------------|------------|------------|---------------|----------------|----------------|------------|-------------|-------------|
| 1학년  | 2225 나뭇잎의 신비   | 2482 향신초   | 2714 연꽃    | 2889 꽃길로 가는 길 | 4170 거대한 보물 창고 | 2226 김복희 반 친구들 | 2483 차가운 물 | 2715 영웅의 전설 | 2890 작은 물방울 |
| 2학년  | 2227 물과 불의 이야기 | 2484 차가운 물 | 2716 차가운 물 | 2891 작은 물방울   | 4171 거대한 보물 창고 | 2228 김복희 반 친구들 | 2485 차가운 물 | 2717 영웅의 전설 | 2892 작은 물방울 |
| 3학년  | 2229 물과 불의 이야기 | 2486 차가운 물 | 2718 차가운 물 | 2893 작은 물방울   | 4172 거대한 보물 창고 | 2230 김복희 반 친구들 | 2487 차가운 물 | 2719 영웅의 전설 | 2894 작은 물방울 |
| 4학년  | 2231 물과 불의 이야기 | 2488 차가운 물 | 2720 차가운 물 | 2895 작은 물방울   | 4173 거대한 보물 창고 | 2232 김복희 반 친구들 | 2489 차가운 물 | 2721 영웅의 전설 | 2896 작은 물방울 |
| 5학년  | 2233 물과 불의 이야기 | 2490 차가운 물 | 2722 차가운 물 | 2897 작은 물방울   | 4174 거대한 보물 창고 | 2234 김복희 반 친구들 | 2491 차가운 물 | 2723 영웅의 전설 | 2898 작은 물방울 |
| 6학년  | 2235 물과 불의 이야기 | 2492 차가운 물 | 2724 차가운 물 | 2899 작은 물방울   | 4175 거대한 보물 창고 | 2236 김복희 반 친구들 | 2493 차가운 물 | 2725 영웅의 전설 | 2899 작은 물방울 |
| 7학년  | 2237 물과 불의 이야기 | 2494 차가운 물 | 2726 차가운 물 | 2901 작은 물방울   | 4176 거대한 보물 창고 | 2238 김복희 반 친구들 | 2495 차가운 물 | 2727 영웅의 전설 | 2900 작은 물방울 |
| 8학년  | 2239 물과 불의 이야기 | 2496 차가운 물 | 2728 차가운 물 | 2903 작은 물방울   | 4177 거대한 보물 창고 | 2240 김복희 반 친구들 | 2497 차가운 물 | 2729 영웅의 전설 | 2902 작은 물방울 |
| 9학년  | 2241 물과 불의 이야기 | 2498 차가운 물 | 2730 차가운 물 | 2905 작은 물방울   | 4178 거대한 보물 창고 | 2242 김복희 반 친구들 | 2499 차가운 물 | 2731 영웅의 전설 | 2904 작은 물방울 |
| 10학년 | 2243 물과 불의 이야기 | 2499 차가운 물 | 2732 차가운 물 | 2907 작은 물방울   | 4179 거대한 보물 창고 | 2244 김복희 반 친구들 | 2501 차가운 물 | 2733 영웅의 전설 | 2906 작은 물방울 |
| 11학년 | 2245 물과 불의 이야기 | 2500 차가운 물 | 2734 차가운 물 | 2909 작은 물방울   | 4180 거대한 보물 창고 | 2246 김복희 반 친구들 | 2503 차가운 물 | 2735 영웅의 전설 | 2908 작은 물방울 |
| 12학년 | 2247 물과 불의 이야기 | 2502 차가운 물 | 2736 차가운 물 | 2911 작은 물방울   | 4181 거대한 보물 창고 | 2248 김복희 반 친구들 | 2505 차가운 물 | 2737 영웅의 전설 | 2910 작은 물방울 |
| 13학년 | 2249 물과 불의 이야기 | 2504 차가운 물 | 2738 차가운 물 | 2913 작은 물방울   | 4182 거대한 보물 창고 | 2250 김복희 반 친구들 | 2507 차가운 물 | 2739 영웅의 전설 | 2912 작은 물방울 |
| 14학년 | 2251 물과 불의 이야기 | 2506 차가운 물 | 2740 차가운 물 | 2915 작은 물방울   | 4183 거대한 보물 창고 | 2252 김복희 반 친구들 | 2509 차가운 물 | 2741 영웅의 전설 | 2914 작은 물방울 |
| 15학년 | 2253 물과 불의 이야기 | 2508 차가운 물 | 2742 차가운 물 | 2917 작은 물방울   | 4184 거대한 보물 창고 | 2254 김복희 반 친구들 | 2511 차가운 물 | 2743 영웅의 전설 | 2916 작은 물방울 |
| 16학년 | 2255 물과 불의 이야기 | 2510 차가운 물 | 2744 차가운 물 | 2919 작은 물방울   | 4185 거대한 보물 창고 | 2256 김복희 반 친구들 | 2513 차가운 물 | 2745 영웅의 전설 | 2918 작은 물방울 |
| 17학년 | 2257 물과 불의 이야기 | 2512 차가운 물 | 2746 차가운 물 | 2921 작은 물방울   | 4186 거대한 보물 창고 | 2258 김복희 반 친구들 | 2515 차가운 물 | 2747 영웅의 전설 | 2920 작은 물방울 |
| 18학년 | 2259 물과 불의 이야기 | 2514 차가운 물 | 2748 차가운 물 | 2923 작은 물방울   | 4187 거대한 보물 창고 | 2260 김복희 반 친구들 | 2517 차가운 물 | 2749 영웅의 전설 | 2922 작은 물방울 |
| 19학년 | 2261 물과 불의 이야기 | 2516 차가운 물 | 2750 차가운 물 | 2925 작은 물방울   | 4188 거대한 보물 창고 | 2262 김복희 반 친구들 | 2519 차가운 물 | 2751 영웅의 전설 | 2924 작은 물방울 |
| 20학년 | 2263 물과 불의 이야기 | 2518 차가운 물 | 2752 차가운 물 | 2927 작은 물방울   | 4189 거대한 보물 창고 | 2264 김복희 반 친구들 | 2521 차가운 물 | 2753 영웅의 전설 | 2926 작은 물방울 |
| 21학년 | 2265 물과 불의 이야기 | 2520 차가운 물 | 2754 차가운 물 | 2929 작은 물방울   | 4190 거대한 보물 창고 | 2266 김복희 반 친구들 | 2523 차가운 물 | 2755 영웅의 전설 | 2928 작은 물방울 |
| 22학년 | 2267 물과 불의 이야기 | 2522 차가운 물 | 2756 차가운 물 | 2931 작은 물방울   | 4191 거대한 보물 창고 | 2268 김복희 반 친구들 | 2525 차가운 물 | 2757 영웅의 전설 | 2930 작은 물방울 |
| 23학년 | 2269 물과 불의 이야기 | 2524 차가운 물 | 2758 차가운 물 | 2933 작은 물방울   | 4192 거대한 보물 창고 | 2270 김복희 반 친구들 | 2527 차가운 물 | 2759 영웅의 전설 | 2932 작은 물방울 |
| 24학년 | 2271 물과 불의 이야기 | 2526 차가운 물 | 2760 차가운 물 | 2935 작은 물방울   | 4193 거대한 보물 창고 | 2272 김복희 반 친구들 | 2529 차가운 물 | 2761 영웅의 전설 | 2934 작은 물방울 |
| 25학년 | 2273 물과 불의 이야기 | 2528 차가운 물 | 2762 차가운 물 | 2937 작은 물방울   | 4194 거대한 보물 창고 | 2274 김복희 반 친구들 | 2531 차가운 물 | 2763 영웅의 전설 | 2936 작은 물방울 |
| 26학년 | 2275 물과 불의 이야기 | 2530 차가운 물 | 2764 차가운 물 | 2939 작은 물방울   | 4195 거대한 보물 창고 | 2276 김복희 반 친구들 | 2533 차가운 물 | 2765 영웅의 전설 | 2938 작은 물방울 |
| 27학년 | 2277 물과 불의 이야기 | 2532 차가운 물 | 2766 차가운 물 | 2941 작은 물방울   | 4196 거대한 보물 창고 | 2278 김복희 반 친구들 | 2535 차가운 물 | 2767 영웅의 전설 | 2940 작은 물방울 |
| 28학년 | 2279 물과 불의 이야기 | 2534 차가운 물 | 2768 차가운 물 | 2943 작은 물방울   | 4197 거대한 보물 창고 | 2280 김복희 반 친구들 | 2537 차가운 물 | 2769 영웅의 전설 | 2942 작은 물방울 |
| 29학년 | 2281 물과 불의 이야기 | 2536 차가운 물 | 2770 차가운 물 | 2945 작은 물방울   | 4198 거대한 보물 창고 | 2282 김복희 반 친구들 | 2539 차가운 물 | 2771 영웅의 전설 | 2944 작은 물방울 |
| 30학년 | 2283 물과 불의 이야기 | 2538 차가운 물 | 2772 차가운 물 | 2947 작은 물방울   | 4199 거대한 보물 창고 | 2284 김복희 반 친구들 | 2541 차가운 물 | 2773 영웅의 전설 | 2946 작은 물방울 |
| 31학년 | 2285 물과 불의 이야기 | 2540 차가운 물 | 2774 차가운 물 | 2949 작은 물방울   | 4200 거대한 보물 창고 | 2286 김복희 반 친구들 | 2543 차가운 물 | 2775 영웅의 전설 | 2948 작은 물방울 |
| 32학년 | 2287 물과 불의 이야기 | 2542 차가운 물 | 2776 차가운 물 | 2951 작은 물방울   | 4201 거대한 보물 창고 | 2288 김복희 반 친구들 | 2545 차가운 물 | 2777 영웅의 전설 | 2950 작은 물방울 |
| 33학년 | 2289 물과 불의 이야기 | 2544 차가운 물 | 2778 차가운 물 | 2953 작은 물방울   | 4202 거대한 보물 창고 | 2290 김복희 반 친구들 | 2547 차가운 물 | 2779 영웅의 전설 | 2952 작은 물방울 |
| 34학년 | 2291 물과 불의 이야기 | 2546 차가운 물 | 2780 차가운 물 | 2955 작은 물방울   | 4203 거대한 보물 창고 | 2292 김복희 반 친구들 | 2549 차가운 물 | 2781 영웅의 전설 | 2954 작은 물방울 |
| 35학년 | 2293 물과 불의 이야기 | 2548 차가운 물 | 2782 차가운 물 | 2957 작은 물방울   | 4204 거대한 보물 창고 | 2294 김복희 반 친구들 | 2551 차가운 물 | 2783 영웅의 전설 | 2956 작은 물방울 |
| 36학년 | 2295 물과 불의 이야기 | 2550 차가운 물 | 2784 차가운 물 | 2959 작은 물방울   | 4205 거대한 보물 창고 | 2296 김복희 반 친구들 | 2553 차가운 물 | 2785 영웅의 전설 | 2958 작은 물방울 |
| 37학년 | 2297 물과 불의 이야기 | 2552 차가운 물 | 2786 차가운 물 | 2961 작은 물방울   | 4206 거대한 보물 창고 | 2298 김복희 반 친구들 | 2555 차가운 물 | 2787 영웅의 전설 | 2960 작은 물방울 |
| 38학년 | 2299 물과 불의 이야기 | 2554 차가운 물 | 2788 차가운 물 | 2963 작은 물방울   | 4207 거대한 보물 창고 | 2300 김복희 반 친구들 | 2557 차가운 물 | 2789 영웅의 전설 | 2962 작은 물방울 |
| 39학년 | 2301 물과 불의 이야기 | 2556 차가운 물 | 2790 차가운 물 | 2965 작은 물방울   | 4208 거대한 보물 창고 | 2302 김복희 반 친구들 | 2559 차가운 물 | 2791 영웅의 전설 | 2964 작은 물방울 |
| 40학년 | 2303 물과 불의 이야기 | 2558 차가운 물 | 2792 차가운 물 | 2967 작은 물방울   | 4209 거대한 보물 창고 | 2304 김복희 반 친구들 | 2561 차가운 물 | 2793 영웅의 전설 | 2966 작은 물방울 |
| 41학년 | 2305 물과 불의 이야기 | 2560 차가운 물 | 2794 차가운 물 | 2969 작은 물방울   | 4210 거대한 보물 창고 | 2306 김복희 반 친구들 | 2563 차가운 물 | 2795 영웅의 전설 | 2968 작은 물방울 |
| 42학년 | 2307 물과 불의 이야기 | 2562 차가운 물 | 2796 차가운 물 | 2971 작은 물방울   | 4211 거대한 보물 창고 | 2308 김복희 반 친구들 | 2565 차가운 물 | 2797 영웅의 전설 | 2970 작은 물방울 |
| 43학년 | 2309 물과 불의 이야기 | 2564 차가운 물 | 2798 차가운 물 | 2973 작은 물방울   | 4212 거대한 보물 창고 | 2310 김복희 반 친구들 | 2567 차가운 물 | 2799 영웅의 전설 | 2972 작은 물방울 |
| 44학년 | 2311 물과 불의 이야기 | 2566 차가운 물 | 2800 차가운 물 | 2975 작은 물방울   | 4213 거대한 보물 창고 | 2312 김복희 반 친구들 | 2569 차가운 물 | 2801 영웅의 전설 | 2974 작은 물방울 |
| 45학년 | 2313 물과 불의 이야기 | 2568 차가운 물 | 2802 차가운 물 | 2977 작은 물방울   | 4214 거대한 보물 창고 | 2314 김복희 반 친구들 | 2571 차가운 물 | 2803 영웅의 전설 | 2976 작은 물방울 |
| 46학년 | 2315 물과 불의 이야기 | 2570 차가운 물 | 2804 차가운 물 | 2979 작은 물방울   | 4215 거대한 보물 창고 | 2316 김복희 반 친구들 | 2573 차가운 물 | 2805 영웅의 전설 | 2978 작은 물방울 |
| 47학년 | 2317 물과 불의 이야기 | 2572 차가운 물 | 2806 차가운 물 | 2981 작은 물방울   | 4216 거대한 보물 창고 | 2318 김복희 반 친구들 | 2575 차가운 물 | 2807 영웅의 전설 | 2980 작은 물방울 |
| 48학년 | 2319 물과 불의 이야기 | 2574 차가운 물 | 2808 차가운 물 | 2983 작은 물방울   | 4217 거대한 보물 창고 | 2320 김복희 반 친구들 | 2577 차가운 물 | 2809 영웅의 전설 | 2982 작은 물방울 |
| 49학년 | 2321 물과 불의 이야기 | 2576 차가운 물 | 2810 차가운 물 | 2985 작은 물방울   | 4218 거대한 보물 창고 | 2322 김복희 반 친구들 | 2579 차가운 물 | 2811 영웅의 전설 | 2984 작은 물방울 |
| 50학년 | 2323 물과 불의 이야기 | 2578 차가운 물 | 2812 차가운 물 | 2987 작은 물방울   | 4219 거대한 보물 창고 | 2324 김복희 반 친구들 | 2581 차가운 물 | 2813 영웅의 전설 | 2986 작은 물방울 |
| 51학년 | 2325 물과 불의 이야기 | 2580 차가운 물 | 2814 차가운 물 | 2989 작은 물방울   | 4220 거대한 보물 창고 | 2326 김복희 반 친구들 | 2583 차가운 물 | 2815 영웅의 전설 | 2988 작은 물방울 |
| 52학년 | 2327 물과 불의 이야기 | 2582 차가운 물 | 2816 차가운 물 | 2991 작은 물방울   | 4221 거대한 보물 창고 | 2328 김복희 반 친구들 | 2585 차가운 물 | 2817 영웅의 전설 | 2990 작은 물방울 |
| 53학년 | 2329 물과 불의 이야기 | 2584 차가운 물 | 2818 차가운 물 | 2993 작은 물방울   | 4222 거대한 보물 창고 | 2330 김복희 반 친구들 | 2587 차가운 물 | 2819 영웅의 전설 | 2992 작은 물방울 |
| 54학년 | 2331 물과 불의 이야기 | 2586 차가운 물 | 2820 차가운 물 | 2995 작은 물방울   | 4223 거대한 보물 창고 | 2332 김복희 반 친구들 | 2589 차가운 물 | 2821 영웅의 전설 | 2994 작은 물방울 |
| 55학년 | 2333 물과 불의 이야기 | 2588 차가운 물 | 2822 차가운 물 | 2997 작은 물방울   | 4224 거대한 보물 창고 | 2334 김복희 반 친구들 | 2591 차가운 물 | 2823 영웅의 전설 | 2996 작은 물방울 |
| 56학년 | 2335 물과 불의 이야기 | 2590 차가운 물 | 2824 차가운 물 | 2999 작은 물방울   | 4225 거대한 보물 창고 | 2336 김복희 반 친구들 | 2593 차가운 물 | 2825 영웅의 전설 | 3000 작은 물방울 |
| 57학년 | 2337 물과 불의 이야기 | 2592 차가운 물 | 2826 차가운 물 | 3001 작은 물방울   | 4226 거대한 보물 창고 | 2338 김복희 반 친구들 | 2595 차가운 물 | 2827 영웅의 전설 | 3002 작은 물방울 |
| 58학년 | 2339 물과 불의 이야기 | 2594 차가운 물 | 2828 차가운 물 | 3003 작은 물방울   | 4227 거대한 보물 창고 | 2340 김복희 반 친구들 | 2597 차가운 물 | 2829 영웅의 전설 | 3004 작은 물방울 |
| 59학년 | 2341 물과 불의 이야기 | 2596 차가운 물 | 2830 차가운 물 | 3005 작은 물방울   | 4228 거대한 보물 창고 | 2342 김복희 반 친구들 | 2599 차가운 물 | 2831 영웅의 전설 | 3006 작은 물방울 |
| 60학년 | 2343 물과 불의 이야기 | 2598 차가운 물 | 2832 차가운 물 | 3007 작은 물방울   | 4229 거대한 보물 창고 | 2344 김복희 반 친구들 | 2601 차가운 물 | 2833 영웅의 전설 | 3008 작은 물방울 |
| 61학년 | 2345 물과 불의 이야기 | 2600 차가운 물 | 2834 차가운 물 | 3009 작은 물방울   | 4230 거대한 보물 창고 | 2346 김복희 반 친구들 | 2603 차가운 물 | 2835 영웅의 전설 | 3010 작은 물방울 |
| 62학년 | 2347 물과 불의 이야기 | 2602 차가운 물 | 2836 차가운 물 | 3011 작은 물방울   | 4231 거대한 보물 창고 | 2348 김복희 반 친구들 | 2605 차가운 물 | 2837 영웅의 전설 | 3012 작은 물방울 |
| 63학년 | 2349 물과 불의 이야기 | 2604 차가운 물 | 2838 차가운 물 | 3013 작은 물방울   | 4232 거대한 보물 창고 | 2350 김복희 반 친구들 | 2607 차가운 물 | 2839 영웅의 전설 | 3014 작은 물방울 |
| 64학년 | 2351 물과 불의 이야기 | 2606 차가운 물 | 2840 차가운 물 | 3015 작은 물방울   | 4233 거대한 보물 창고 | 2352 김복희 반 친구들 | 2609 차가운 물 | 2841 영웅의 전설 | 3016 작은 물방울 |
| 65학년 | 2353 물과 불의 이야기 | 2608 차가운 물 | 2842 차가운 물 | 3017 작은 물방울   | 4234 거대한 보물 창고 | 2354 김복희 반 친구들 | 2611 차가운 물 | 2843 영웅의 전설 | 3018 작은 물방울 |
| 66학년 | 2355 물과 불의 이야기 | 2610 차가운 물 | 2844 차가운 물 | 3019 작은 물방울   | 4235 거대한 보물 창고 | 2356 김복희 반 친구들 | 2613 차가운 물 | 2845 영웅의 전설 | 3020 작은 물방울 |
| 67학년 | 2357 물과 불의 이야기 | 2612 차가운 물 | 2846 차가운 물 | 3021 작은 물방울   | 4236 거대한 보물 창고 | 2358 김복희 반 친구들 | 2615 차가운 물 | 2847 영웅의 전설 | 3022 작은 물방울 |
| 68학년 | 2359 물과 불의 이야기 | 2614 차가운 물 | 2848 차가운 물 | 3023 작은 물방울   | 4237 거대한 보물 창고 | 2360 김복희 반 친구들 | 2617 차가운 물 | 2849 영웅의 전설 | 3024 작은 물방울 |
| 69학년 | 2361 물과 불의 이야기 | 2616 차가운 물 | 2850 차가운 물 | 3025 작은 물방울   | 4238 거대한 보물 창고 | 2362 김복희 반 친구들 | 2619 차가운 물 | 2851 영웅의 전설 | 3026 작은 물방울 |
| 70학년 | 2363 물과 불의 이야기 | 2618 차가운 물 | 2852 차가운 물 | 3027 작은 물방울   | 4239 거대한 보물 창고 | 2364 김복희 반 친구들 | 2621 차가운 물 | 2853 영웅의 전설 | 3028 작은 물방울 |
| 71학년 | 2365 물과 불의 이야기 | 2620 차가운 물 | 2854 차가운 물 | 3029 작은 물방울   | 4240 거대한 보물 창고 | 2366 김복희 반 친구들 | 2623 차가운 물 | 2855 영웅의 전설 | 3030 작은 물방울 |
| 72학년 | 2367 물과 불의 이야기 | 2622 차가운 물 | 2856 차가운 물 | 3031 작은 물방울   | 4241 거대한 보물 창고 | 2368 김복희 반 친구들 | 2625 차가운 물 | 2857 영웅의 전설 | 3032 작은 물방울 |
| 73학년 | 2369 물과 불의 이야기 | 2624 차가운 물 | 2858 차가운 물 | 3033 작은 물방울   | 4242 거대한 보물 창고 | 2370 김복희 반 친구들 | 2627 차가운 물 | 2859 영웅의 전설 | 3034 작은 물방울 |
| 74학년 | 2371 물과 불의 이야기 | 2626 차가운 물 | 2860 차가운 물 | 3035 작은 물방울   | 4243 거대한 보물 창고 | 2372 김복희 반 친구들 | 2629 차가운 물 | 2861 영웅의 전설 | 3036 작은 물방울 |
| 75학년 | 2373 물과 불의 이야기 | 2628 차가운 물 | 2862 차가운 물 | 3037 작은 물방울   | 4244 거대한 보물 창고 | 2374 김복희 반 친구들 | 2631 차가운 물 | 2863 영웅의 전설 | 3038 작은 물방울 |
| 76학년 | 2375 물과 불의 이야기 | 2630 차가운 물 | 2864 차가운 물 | 3039 작은 물방울   | 4245 거대한 보물 창고 | 2376 김복희 반 친구들 | 2633 차가운 물 | 2865 영웅의 전설 | 3040 작은 물방울 |
| 77학년 | 2377 물과 불의 이야기 | 2632 차가운 물 | 2866 차가운 물 | 3041 작은 물방울   | 4246 거대한 보물 창고 | 2378 김복희 반 친구들 | 2635 차가운 물 | 2867 영웅의 전설 | 3042 작은 물방울 |
| 78학년 | 2379 물과 불의 이야기 | 2634 차가운 물 | 2868 차가운 물 | 3043 작은 물방울   | 4247 거대한 보물 창고 | 2380 김복희 반 친구들 | 2637 차가운 물 | 2869 영웅의 전설 | 3044 작은 물방울 |
| 79학년 | 2381 물과 불의 이야기 | 2636 차가운 물 | 2870 차가운 물 | 3045 작은 물방울   | 4248 거대한 보물 창고 | 2382 김복희 반 친구들 | 2639 차가운 물 | 2871 영웅의 전설 | 3046 작은 물방울 |
| 80학년 | 2383 물과 불의 이야기 | 2638 차가운 물 | 2872 차가운 물 | 3047 작은 물방울   | 4249 거대한 보물 창고 | 2384 김복희 반 친구들 | 2641 차가운 물 | 2873 영웅의 전설 | 3048 작은 물방울 |
| 81학년 | 2385 물과 불의 이야기 | 2640 차가운 물 | 2874 차가운 물 | 3049 작은 물방울   | 4250 거대한 보물 창고 | 2386 김복희 반 친구들 | 2643 차가운 물 | 2875 영웅의 전설 | 3050 작은 물방울 |
| 82학년 | 2387 물과 불의 이야기 | 2642 차가운 물 | 2876 차가운 물 | 3051 작은 물방울   | 4251 거대한 보물 창고 | 2388 김복희 반 친구들 | 2645 차가운 물 | 2877 영웅의 전설 | 3052 작은 물방울 |
| 83학년 | 2389 물과 불의 이야기 | 2644 차가운 물 | 2878 차가운 물 | 3053 작은 물방울   | 4252 거대한 보물 창고 | 2390 김복희 반 친구들 | 2647 차가운 물 | 2879 영웅의 전설 | 3054 작은 물방울 |
| 84학년 | 2391 물과 불의 이야기 | 2646 차가운 물 | 2880 차가운 물 | 3055 작은 물방울   | 4253 거대한 보물 창고 | 2392 김복희 반 친구들 | 2649 차가운 물 | 2881 영웅의 전설 | 3056 작은 물방울 |
| 85학년 | 2393 물과 불의 이야기 | 2648 차가운 물 | 2882 차가운 물 | 3057 작은 물방울   | 4254 거대한 보물 창고 | 2394 김복희 반 친구들 | 2651 차가운 물 | 2883 영웅의 전설 | 3058 작은 물방울 |
| 86학년 | 2395 물과 불의 이야기 | 2650 차가운 물 | 2884 차가운 물 | 3059 작은 물방울   | 4255 거대한 보물 창고 | 2396 김복희 반 친구들 | 2653 차가운 물 | 2885 영웅의 전설 | 3060 작은 물방울 |
| 87학년 | 2397 물과 불의 이야기 | 2652 차가운 물 | 2886 차가운 물 | 3061 작은 물방울   | 4256 거대한 보물 창고 | 2398 김복희 반 친구들 | 2655 차가운 물 | 2887 영웅의 전설 | 3062 작은 물방울 |
| 88학년 | 2399 물과 불의 이야기 | 2654 차가운 물 | 2888 차가운 물 | 3063 작은 물방울   | 4257 거대한 보물 창고 | 2400 김복희 반 친구들 | 2657 차가운 물 | 2889 영웅의 전설 | 3064 작은 물방울 |
| 89학년 | 2401 물과 불의 이야기 | 2656 차가운 물 | 2890 차가운 물 | 3065 작은 물방울   | 4258 거대한 보물 창고 | 2402 김복희 반 친구들 | 2659 차가운 물 | 2891 영웅의 전설 | 3066 작은 물방울 |
| 90학년 | 2403 물과 불의 이야기 | 2658 차가운 물 | 2892 차가운 물 | 3067 작은 물방울   | 4259 거대한 보물 창고 | 2404 김복희 반 친구들 | 2661 차가운 물 | 2893 영웅의 전설 | 3068 작은 물방울 |
| 91학년 | 2405 물과 불의 이야기 | 2660 차가운 물 | 2894 차가운 물 | 3069 작은 물방울   | 4260 거대한 보물 창고 | 2406 김복희 반 친구들 | 2663 차가운 물 | 2895 영웅의 전설 | 3070 작은 물방울 |
| 92학년 | 2407           |            |            |               |                |                |            |             |             |

## 별첨, 지어보르표

| 구분 | 작품명/역    | 구분   | 작품명/역 | 구분   | 작품명/역 | 구분   | 작품명/역 | 구분   | 작품명/역 |
|----|----------|------|-------|------|-------|------|-------|------|-------|
| 0  | 남원시 승전총서 | 7401 | 남원시   | 7402 | 남원시   | 7403 | 남원시   | 7404 | 남원시   |
| 1  | 남원시 승전총서 | 7405 | 남원시   | 7406 | 남원시   | 7407 | 남원시   | 7408 | 남원시   |
| 2  | 남원시 승전총서 | 7409 | 남원시   | 7410 | 남원시   | 7411 | 남원시   | 7412 | 남원시   |
| 3  | 남원시 승전총서 | 7413 | 남원시   | 7414 | 남원시   | 7415 | 남원시   | 7416 | 남원시   |
| 4  | 남원시 승전총서 | 7417 | 남원시   | 7418 | 남원시   | 7419 | 남원시   | 7420 | 남원시   |
| 5  | 남원시 승전총서 | 7421 | 남원시   | 7422 | 남원시   | 7423 | 남원시   | 7424 | 남원시   |
| 6  | 남원시 승전총서 | 7425 | 남원시   | 7426 | 남원시   | 7427 | 남원시   | 7428 | 남원시   |
| 7  | 남원시 승전총서 | 7429 | 남원시   | 7430 | 남원시   | 7431 | 남원시   | 7432 | 남원시   |
| 8  | 남원시 승전총서 | 7433 | 남원시   | 7434 | 남원시   | 7435 | 남원시   | 7436 | 남원시   |
| 9  | 남원시 승전총서 | 7437 | 남원시   | 7438 | 남원시   | 7439 | 남원시   | 7440 | 남원시   |
| 10 | 남원시 승전총서 | 7441 | 남원시   | 7442 | 남원시   | 7443 | 남원시   | 7444 | 남원시   |
| 11 | 남원시 승전총서 | 7445 | 남원시   | 7446 | 남원시   | 7447 | 남원시   | 7448 | 남원시   |
| 12 | 남원시 승전총서 | 7449 | 남원시   | 7450 | 남원시   | 7451 | 남원시   | 7452 | 남원시   |
| 13 | 남원시 승전총서 | 7453 | 남원시   | 7454 | 남원시   | 7455 | 남원시   | 7456 | 남원시   |
| 14 | 남원시 승전총서 | 7457 | 남원시   | 7458 | 남원시   | 7459 | 남원시   | 7460 | 남원시   |
| 15 | 남원시 승전총서 | 7461 | 남원시   | 7462 | 남원시   | 7463 | 남원시   | 7464 | 남원시   |
| 16 | 남원시 승전총서 | 7465 | 남원시   | 7466 | 남원시   | 7467 | 남원시   | 7468 | 남원시   |
| 17 | 남원시 승전총서 | 7469 | 남원시   | 7470 | 남원시   | 7471 | 남원시   | 7472 | 남원시   |
| 18 | 남원시 승전총서 | 7473 | 남원시   | 7474 | 남원시   | 7475 | 남원시   | 7476 | 남원시   |
| 19 | 남원시 승전총서 | 7477 | 남원시   | 7478 | 남원시   | 7479 | 남원시   | 7480 | 남원시   |
| 20 | 남원시 승전총서 | 7481 | 남원시   | 7482 | 남원시   | 7483 | 남원시   | 7484 | 남원시   |
| 21 | 남원시 승전총서 | 7485 | 남원시   | 7486 | 남원시   | 7487 | 남원시   | 7488 | 남원시   |
| 22 | 남원시 승전총서 | 7489 | 남원시   | 7490 | 남원시   | 7491 | 남원시   | 7492 | 남원시   |
| 23 | 남원시 승전총서 | 7493 | 남원시   | 7494 | 남원시   | 7495 | 남원시   | 7496 | 남원시   |
| 24 | 남원시 승전총서 | 7497 | 남원시   | 7498 | 남원시   | 7499 | 남원시   | 7500 | 남원시   |
| 25 | 남원시 승전총서 | 7501 | 남원시   | 7502 | 남원시   | 7503 | 남원시   | 7504 | 남원시   |
| 26 | 남원시 승전총서 | 7505 | 남원시   | 7506 | 남원시   | 7507 | 남원시   | 7508 | 남원시   |
| 27 | 남원시 승전총서 | 7509 | 남원시   | 7510 | 남원시   | 7511 | 남원시   | 7512 | 남원시   |
| 28 | 남원시 승전총서 | 7513 | 남원시   | 7514 | 남원시   | 7515 | 남원시   | 7516 | 남원시   |
| 29 | 남원시 승전총서 | 7517 | 남원시   | 7518 | 남원시   | 7519 | 남원시   | 7520 | 남원시   |
| 30 | 남원시 승전총서 | 7521 | 남원시   | 7522 | 남원시   | 7523 | 남원시   | 7524 | 남원시   |
| 31 | 남원시 승전총서 | 7525 | 남원시   | 7526 | 남원시   | 7527 | 남원시   | 7528 | 남원시   |
| 32 | 남원시 승전총서 | 7529 | 남원시   | 7530 | 남원시   | 7531 | 남원시   | 7532 | 남원시   |
| 33 | 남원시 승전총서 | 7533 | 남원시   | 7534 | 남원시   | 7535 | 남원시   | 7536 | 남원시   |
| 34 | 남원시 승전총서 | 7537 | 남원시   | 7538 | 남원시   | 7539 | 남원시   | 7540 | 남원시   |
| 35 | 남원시 승전총서 | 7541 | 남원시   | 7542 | 남원시   | 7543 | 남원시   | 7544 | 남원시   |
| 36 | 남원시 승전총서 | 7545 | 남원시   | 7546 | 남원시   | 7547 | 남원시   | 7548 | 남원시   |
| 37 | 남원시 승전총서 | 7549 | 남원시   | 7550 | 남원시   | 7551 | 남원시   | 7552 | 남원시   |
| 38 | 남원시 승전총서 | 7553 | 남원시   | 7554 | 남원시   | 7555 | 남원시   | 7556 | 남원시   |
| 39 | 남원시 승전총서 | 7557 | 남원시   | 7558 | 남원시   | 7559 | 남원시   | 7560 | 남원시   |
| 40 | 남원시 승전총서 | 7561 | 남원시   | 7562 | 남원시   | 7563 | 남원시   | 7564 | 남원시   |
| 41 | 남원시 승전총서 | 7565 | 남원시   | 7566 | 남원시   | 7567 | 남원시   | 7568 | 남원시   |
| 42 | 남원시 승전총서 | 7569 | 남원시   | 7570 | 남원시   | 7571 | 남원시   | 7572 | 남원시   |

### 3. 청년 니트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질문지

#### 청년 니트 실태 관련 질문

1. 귀하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취업진학준비형)
  - 2-1. 고시·공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고시·공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2-3. 공무원 이외 다른 직업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돌봄가사육아형)
  - 2-1. 가사·돌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가사·돌봄 종사자로 생활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2-3. 기회가 된다면 취·창업이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기 원하시나요?(구직회피휴식형)
  - 2-1. 취업/구직을 포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취업/구직을 포기하고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2-3. 취업/구직을 포기하기에 이를 만큼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있었나요?(자발적 선택형)
  - 2-1. 귀하에게 취·창업 및 교육/훈련이 불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현재 상태(자발적 니트)로 생활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2-3. 언젠가는 취·창업이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귀하가 현재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4. 취·창업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하시거나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
  - 4-1. 희망 직종 및 진로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4-2. 관련정보는 어떻게 취득하시나요?
  - 4-3. 귀하가 계획하신 직업이나 진로계획이 성취되는 예상기간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4-4. 진로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없다)
  - 4-5. 그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주거비용,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 청년 니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질문

6. 귀하가 취·창업 및 진로를 계획/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정보 습득이나 지인들과의 정보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7. (하고 있다)
  - 7-1. 귀하가 ① 가족/지인/친구, ②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③ 단체/기업/학교)로부터 받는 관련 정보의 수준과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7-2. 귀하는 어떤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나요?/보시길 원하시나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 7-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각각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 향후 청년 니트 관련 정책의 방향 및 귀하가 희망하는 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Support Measures of the Key Youth Policies by Target I : NEET Youth**

This study aims to select the targets of key policies directed at young people, who are recently becoming the focus of social and political attention, analyze the actual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young people, and come up with policy support measure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pean Union (EU)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Japan have already selected key policy targets among young people and are implementing such policies for them. However, Korea has still failed to come up with customized measures for each key policy target.

This study will select key policy targets for 3 years until 2020 and establish policy support measures. The first-year study conducted this year selected those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vocational training, namely NEET, as the target, analyzed the actual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young people as well as related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presented policy direction and tasks.

The NEET youth in South Korea includes many young people among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at are college graduates - unlike other countries in which most are unemployed high-school

graduates. Moreover, they have state dependence in which they are not very likely to overcome their status once they fall into the NEET categ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Youth Social and Economic Survey 2018, there are marked differences among the young people who fall into the NEET category in South Korea: some are preparing for employment/school, some are engaged in care/housework/ childcare activities, some voluntarily choose to stay on as NEETs, and some are avoiding employment/ taking a break. Thus, without a customized approach, it is difficult to produce policy outcomes. At the same time, the ratio of long-term NEET turned out to be high, indicating those who become NEET stay in this predicament for a long time. To understand qualitative aspects related to this topic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with quantitative data,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9 NEET youths, through which it was verified that their desires vary greatly by type and that current youth policies fail to provide them with much help.

This study set three policy directions for NEET youth: consumer-centered approach, customized approach by type, and evidence-based approach. The policy tasks presented are to start by clearly defining NEET youth as a policy target, and proceed with modifying laws related to NEET youth, reducing interruptions to academic development in not only secondary but also higher educ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and establish a system that leads students to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before they graduate.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a way to improve the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currently implemented as a policy for NEET youth, as well as a plan to modify the support fund for young job seekers that will be in operation starting

next year so that the fund is properly delivered to NEET youth.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a brand project to prevent NEET in the form of the Korean Youth Guarantee, similar to the one operated by the EU, by improving the community-led youth employment project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a long-term task,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upport system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build a delivery system for disadvantaged youth including NEET youth and increase policy synergy.

Key note : youth, youth policy, NEET, youth guarantee, youth survey,  
KLIPS





##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 (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 (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 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9-01  
연구보고 18-R17

---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21-6 94330  
979-11-5654-220-9 (세트)







연구보고 18-R17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 :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http://www.nypi.re.kr)



ISBN 979-11-5654-221-6  
ISBN 979-11-5654-220-9 (세트)